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2008. 1.

여성가족부

연구보고 2008-02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2008. 1.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동연구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공동연구자 : 김유경 조애저 김성희 이진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배희 박소현 신연희 정춘숙 채규만 현혜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김은경 전영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 성 가 족 부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머 리 말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가족가치관에 변화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잔존함으로써 양성간의 갈등과 세대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세기 말에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족안정성이 상당히 약화됨으로써 가족 내 자원의 불충분성과 자원배분의 비합리성이 나타나고 이는 가족갈등과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고 최근에는 취약계층인 아동과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의 개념을 광의로 살펴보면,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방임 및 유기, 성학대 등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일반폭력의 속성에서 나타나듯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식 속 깊이 폭력이 내면화 되어 대대로 전승되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어떠한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가정폭력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순환성이나 전파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본 조사연구는 당 연구원의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인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총괄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며, 원내·외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에게 사의를 표한다. 보고서 집필을 위한 연구진의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구기획 및 총괄 (김승권)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김승권·김유경·조애저)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외 정책동향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성희)

제4장 전국 가정폭력실태의 조사개요 및 응답가구 특성 (김승권·이건우)

제5장 한국의 가정폭력실태 (김승권)

제6장 부부폭력실태 (김승권)

제7장 아동학대실태 (김유경)

제8장 미혼자학대실태 (김유경)

제9장 노인부부폭력실태 (조애저)

제10장 노인학대실태 (조애저)

제11장 장애인폭력실태 (김성희)

제12장 다문화가정폭력실태 (김승권)

제13장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결과 (신현희·곽배희·박소현·정춘숙)

제14장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 (김유경·조애저·전영실)

제15장 정책적 제언 (김승권·김유경·조애저·신현희)

제16장 결론 (김승권)

본 조사연구의 수행에 참여한 전문조사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시설 조사에 참여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관계자 및 상담원에게 지면을 빌어 심심한 사의를 드린다. 또한 표본추출 및 자료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한 손창균 부연구위원, 도세록 연구위원, 최성용 연구위원과 연구의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변용찬 선임연구위원, 오영희 부연구위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본 연구가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주관기관으로 믿고 맡겨주신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사의를 드린다.

2008년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요 약	45
-----------	----

[제 1부: 서론부]

제1장 서론	20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0
제3절 연구수행체계	218
제2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220
제1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220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227
제3절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의 시사점	245
제3장 가정폭력의 국내·외 정책동향	248
제1절 국내 정책동향	248
제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257
제3절 국내·외 정책동향의 시사점	282

[제 2부: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

제4장 전국 가정폭력실태의 조사개요 및 응답가구 특성	289
제1절 조사개요	289
제2절 응답가구의 제 특성	306
제5장 한국의 가정폭력실태	312
제1절 가정폭력의 조작적 정의	312
제2절 전국 및 지역별 가정폭력발생률	322

제3절	가구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324
제4절	가구주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327
제5절	기혼부부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330
제6절	가정폭력실태의 시사점	336
제6장	부부폭력 실태	338
제1절	응답부부의 특성	338
제2절	부부의 폭력인식 및 폭력관련 법인식 태도	347
제3절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실태	359
제4절	최근(1년 내) 부부폭력 발생실태	365
제5절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405
제6절	부부폭력의 대처방식	410
제7절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426
제8절	부부폭력실태의 시사점	430
제7장	아동학대 실태	434
제1절	아동 응답자 특성	434
제2절	아동학대 및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	443
제3절	아동학대발생실태	447
제4절	아동학대발생원인	473
제5절	가해자 특성	475
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478
제7절	서비스욕구	487
제8절	아동학대실태의 시사점	489
제8장	미혼자 학대실태	492
제1절	미혼응답자 특성	492
제2절	미혼자학대 및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	505
제3절	미혼자학대 발생률	510
제4절	미혼자학대 발생원인	525

제5절	가해자 특성	528
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532
제7절	서비스 욕구	541
제8절	미혼자학대실태의 시사점	544
제9장	노인부부 폭력실태	546
제1절	응답자 특성	546
제2절	노인부부폭력 인식	565
제3절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70
제4절	노인부부폭력 발생원인	589
제5절	노인부부폭력 학대행위자 특성	591
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593
제7절	서비스 욕구	597
제8절	노인부부 폭력실태의 시사점	599
제10장	노인학대 실태	602
제1절	노인 응답자 특성	602
제2절	노인학대 인식	617
제3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623
제4절	노인학대 발생원인	636
제5절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	639
제6절	노인학대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642
제7절	서비스 욕구	646
제8절	노인학대실태의 시사점	648
제11장	장애인 폭력실태	652
제1절	응답장애인의 특성	652
제2절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656
제3절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원인	662
제4절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 특성	665

제5절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667
제6절	장애인의 가정폭력 서비스 욕구	672
제7절	장애인 가정폭력실태의 시사점	676
제12장	다문화가정의 폭력실태	678
제1절	다문화가정 응답부부의 특성	678
제2절	부부의 폭력인식 및 폭력관련 법인식 태도	680
제3절	최근(1년 내) 가정폭력 및 부부폭력 발생실태	684
제4절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687
제5절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피해증상과 대처방식	689
제6절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691
제7절	다문화가정 부부폭력실태의 시사점	693

[제 3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

제13장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결과	697
제1절	조사개요	697
제2절	가정폭력 피해 실태	701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욕구	746
제4절	피해자조사 결과의 시사점	772
제14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	779
제1절	조사개요	779
제2절	가정폭력상담소 실태	780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	811
제4절	여성긴급전화 1366 실태	843
제5절	통합상담소 실태	867
제6절	모자일시보호시설 실태	893
제7절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의 시사점	925

[제 4부: 정책적 제언 및 결론]

제15장	정책적 제언	929
제1절	가정폭력예방 강화방안	929
제2절	가정폭력관련 제도개선 방안	932
제3절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936
제4절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941
제5절	가해자 처벌 및 치료에 관한 정책제언	944
제6절	폭력대상별 정책제언	946
제16장	결 론	960
참고문헌	962
부 록	967

표 목 차

〈표 1- 1〉 가정폭력 피해자조사의 문항	212
〈표 1- 2〉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조사표의 문항	212
〈표 1- 3〉 여성긴급전화 1366 조사표의 문항	213
〈표 1- 4〉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조사표의 문항	214
〈표 1- 5〉 모자일시보호시설 조사표의 문항	214
〈표 1- 6〉 가구조사 완료수	217
〈표 1- 7〉 가정폭력피해자 실태조사 결과(2007. 11. 5. 현재)	217
〈표 1- 8〉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조사결과	218
〈표 2- 1〉 가정폭력의 유형과 심각성	221
〈표 3- 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실적	253
〈표 3-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253
〈표 3- 3〉 주요 외국의 부부폭력발생률	258
〈표 4- 1〉 가구공통조사표의 문항	289
〈표 4- 2〉 응답자 및 응답자배우자 조사표의 문항	290
〈표 4- 3〉 중·고등학생 조사표의 문항	291
〈표 4- 4〉 미혼자조사표	292
〈표 4- 5〉 노인조사표의 문항	293
〈표 4- 6〉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주연령별 동부/읍·면부별 가구수	296
〈표 4- 7〉 지역별 조사구 분포주	297
〈표 4- 8〉 지역별 가구분포(90% 자료)	298
〈표 4- 9〉 지역별 표본조사구수	299
〈표 4- 10〉 응답가구의 유형 및 가구원수	307
〈표 4- 11〉 응답가구의 주택유형 및 소유형태	308
〈표 4- 12〉 응답가구의 경제상태	309

〈표 4-13〉	응답가구의 유형별 ‘소득-소비’ 평균격차	310
〈표 4-14〉	응답가구의 가정폭력실태조사 대상자수	311
〈표 5-1〉	부부폭력의 유형 및 개별행위	313
〈표 5-2〉	아동학대의 유형 및 개별행위	315
〈표 5-3〉	미혼자 학대의 유형 및 개별행위	317
〈표 5-4〉	노인 학대의 유형 및 개별행위	319
〈표 5-5〉	장애인 폭력의 유형 및 개별행위	321
〈표 5-6〉	폭력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323
〈표 5-7〉	지역별 가정폭력발생률	323
〈표 5-8〉	폭력유형별 과거 1년 이전 가정폭력발생률	324
〈표 5-9〉	가구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325
〈표 5-10〉	가구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325
〈표 5-11〉	가구원규모별 가정폭력발생률	326
〈표 5-12〉	가구주의 성별 가정폭력발생률	327
〈표 5-13〉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가정폭력발생률	329
〈표 5-14〉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정폭력발생률	329
〈표 5-15〉	부부의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경험여부별 가정폭력발생률	331
〈표 5-16〉	부부의 성장시 가족원간의 폭력 목격경험여부별 가정폭력발생률	331
〈표 5-17〉	부부의 성장시 피학대 경험과 폭력 목격경험별 가정폭력발생률 차이	332
〈표 5-18〉	부부의 음주빈도별 가정폭력발생률	333
〈표 5-19〉	부부의 1회 평균 음주량별 가정폭력발생률	333
〈표 5-20〉	부부의 폭력법 내용 및 인식여부별 가정폭력발생률	335
〈표 6-1〉	응답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38
〈표 6-2〉	응답부부의 성장과정의 특성	339
〈표 6-3〉	응답부부의 성장과정에서의 학대 가해자	340
〈표 6-4〉	응답부부의 음주행태	341
〈표 6-5〉	응답부부의 생활만족도	342

〈표 6- 6〉	응답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	343
〈표 6- 7〉	응답부부의 사회적 스트레스 경험률	343
〈표 6- 8〉	응답부부의 자기통제력	344
〈표 6- 9〉	응답부부의 부부권력	345
〈표 6- 10〉	응답부부의 갈등정도	346
〈표 6- 11〉	응답부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347
〈표 6- 12〉	부부폭력 인식	348
〈표 6- 13〉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49
〈표 6- 14〉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49
〈표 6- 15〉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0
〈표 6- 16〉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0
〈표 6- 17〉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1
〈표 6- 18〉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1
〈표 6- 19〉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2
〈표 6- 20〉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2
〈표 6- 21〉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3
〈표 6- 22〉	‘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	354
〈표 6- 23〉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4
〈표 6- 24〉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5
〈표 6- 25〉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	355
〈표 6- 26〉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6
〈표 6- 27〉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부부인식도	356
〈표 6- 28〉	응답부부의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357
〈표 6- 29〉	응답부부의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	358
〈표 6- 30〉	응답부부의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	359
〈표 6- 31〉	과거(1년 전) 부부폭력발생률	360
〈표 6- 32〉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361

〈표 6- 33〉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률: 신체적 폭력	362
〈표 6- 34〉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률: 경제적 폭력	363
〈표 6- 35〉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률: 방임	364
〈표 6- 36〉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률: 정서적 폭력	364
〈표 6- 37〉	폭력유형별 부부폭력발생률	366
〈표 6- 38〉	특성별 아내폭력발생률	368
〈표 6- 39〉	남편의 성장과정별 아내폭력발생률	369
〈표 6- 40〉	부부권력구조 유형별 아내폭력발생률	370
〈표 6- 41〉	남편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별 아내폭력발생률	371
〈표 6- 42〉	남편의 사회적 스트레스에 따른 아내폭력발생률	372
〈표 6- 43〉	남편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아내폭력발생률	372
〈표 6- 44〉	남편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아내폭력발생률	373
〈표 6- 45〉	남편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른 아내폭력발생률	373
〈표 6- 46〉	남편의 아내와의 갈등정도에 따른 아내폭력발생률	374
〈표 6- 47〉	남편의 음주정도별 아내폭력발생률	375
〈표 6- 48〉	부부의 교육수준별 지난 1년간 아내폭력발생률	376
〈표 6- 49〉	부부의 취업여부별 지난 1년간 아내폭력발생률	376
〈표 6- 50〉	‘남편이 아내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발생률	377
〈표 6- 51〉	‘남편이 아내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발생률	377
〈표 6- 52〉	‘남편이 아내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발생률	378
〈표 6- 53〉	‘남편이 아내의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발생률	379
〈표 6- 54〉	‘남편이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발생률	379
〈표 6- 55〉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발생률	380
〈표 6- 56〉	‘남편이 칼이나 흉기로 아내를 위협하는 행위’ 발생률	381
〈표 6- 57〉	‘남편이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발생률	381
〈표 6- 58〉	‘남편이 아내를 혁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발생률	381
〈표 6- 59〉	‘남편이 아내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발생률	382

〈표 6- 60〉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 발생률	383
〈표 6- 61〉	‘남편이 아내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발생률	383
〈표 6- 62〉	‘남편이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발생률	384
〈표 6- 63〉	‘남편이 아내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발생률	385
〈표 6- 64〉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남편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발생률	385
〈표 6- 65〉	‘아내가 원치 않음에도 남편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발생률	386
〈표 6- 66〉	‘남편이 아내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발생률	386
〈표 6- 67〉	특성별 남편폭력발생률	387
〈표 6- 68〉	아내의 성장과정별 남편폭력발생률	388
〈표 6- 69〉	부부권력구조 유형별 남편폭력발생률	389
〈표 6- 70〉	아내의 양성평등적 태도별 남편폭력발생률	389
〈표 6- 71〉	아내의 사회적 스트레스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	390
〈표 6- 72〉	아내의 자기통제력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	391
〈표 6- 73〉	아내의 생활만족도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	392
〈표 6- 74〉	아내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	392
〈표 6- 75〉	아내의 남편과의 갈등정도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	393
〈표 6- 76〉	아내의 음주정도별 남편폭력발생률	394
〈표 6- 77〉	부부의 교육수준별 남편폭력발생률	394
〈표 6- 78〉	부부의 취업여부별 남편폭력발생률	395
〈표 6- 79〉	‘아내가 남편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발생률	395
〈표 6- 80〉	‘아내가 남편을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발생률	396
〈표 6- 81〉	‘아내가 남편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발생률	397
〈표 6- 82〉	‘아내가 남편의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발생률	397
〈표 6- 83〉	‘아내가 손바닥으로 남편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발생률	398
〈표 6- 84〉	‘아내가 남편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발생률	398
〈표 6- 85〉	‘아내가 남편을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발생률	399
〈표 6- 86〉	‘아내가 남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발생률	400

〈표 6- 87〉	‘아내가 혁대, 몽둥이, 칼 등으로 남편을 때리는 행위’ 발생률	400
〈표 6- 88〉	‘아내가 남편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발생률	401
〈표 6- 89〉	‘아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발생률	401
〈표 6- 90〉	‘아내가 남편의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발생률	402
〈표 6- 91〉	‘아내가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발생률	402
〈표 6- 92〉	‘아내가 남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발생률	403
〈표 6- 93〉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아내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발생률	404
〈표 6- 94〉	‘남편이 원치 않음에도 아내가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발생률	404
〈표 6- 95〉	‘아내가 남편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발생률	405
〈표 6- 96〉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406
〈표 6- 97〉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생각하는 폭력 원인	407
〈표 6- 98〉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생각하는 폭력 원인	408
〈표 6- 99〉	아내에게 폭력행사 당시 가해자인 남편의 음주여부 및 음주상태	409
〈표 6-100〉	남편에게 폭력행사 당시 가해자인 아내의 음주여부 및 음주상태	409
〈표 6-101〉	폭력을 행사한 후의 태도	410
〈표 6-102〉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411
〈표 6-103〉	아내특성별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412
〈표 6-104〉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413
〈표 6-105〉	아내특성별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413
〈표 6-106〉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신체적 증상	414
〈표 6-107〉	남편특성별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415
〈표 6-108〉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415
〈표 6-109〉	남편특성별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416
〈표 6-110〉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가족생활의 변화	416
〈표 6-111〉	아내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가족생활의 변화	417
〈표 6-112〉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418
〈표 6-113〉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도움 요청 대상	419

〈표 6-114〉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피하는 장소	419
〈표 6-115〉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420
〈표 6-116〉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경찰신고율	420
〈표 6-117〉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신고 않은 이유	421
〈표 6-118〉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참는 이유	421
〈표 6-119〉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대처방식	422
〈표 6-120〉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도움 요청 대상	423
〈표 6-121〉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피하는 장소	423
〈표 6-122〉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 경험 여부	424
〈표 6-123〉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경찰신고율	424
〈표 6-124〉 아내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경찰신고 않은 이유	425
〈표 6-125〉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참는 이유	425
〈표 6-126〉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정책	427
〈표 6-127〉 가정폭력 해결 또는 예방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428
〈표 6-128〉 특성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사후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	429
〈표 6-129〉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을 시 보호시설 입소할 의향	430
〈표 6-130〉 과거와 최근의 부부폭력 발생률 비교	430
〈표 6-131〉 과거와 최근의 남편의 아내폭력 발생률 비교	431
〈표 6-132〉 과거와 최근의 아내의 남편폭력 발생률 비교	431
〈표 6-133〉 과거와 최근의 가정폭력행위별 인식을 및 발생률 비교	432
〈표 7- 1〉 아동응답자의 특성	434
〈표 7- 2〉 아동응답자 특성별 부모님 생존여부 및 동거가족	435
〈표 7- 3〉 아동응답자의 연령별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적 경험여부	436
〈표 7- 4〉 아동응답자의 연령별 성장시 학대자 및 학대목적 대상	436
〈표 7- 5〉 아동응답자의 연령별 음주빈도	437
〈표 7- 6〉 아동응답자의 연령별 음주량	437
〈표 7- 7〉 아동의 부모·친척 및 친구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에 관한 견해	438

〈표 7- 8〉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생각	439
〈표 7- 9〉 지난 1년간 아동의 가족, 개인 및 학교에서 경험한 일	440
〈표 7- 10〉 아동의 가부장적태도에 대한 생각	441
〈표 7- 11〉 아동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생각	442
〈표 7- 12〉 아동의 부모와의 갈등 경험 정도	443
〈표 7- 13〉 아동의 연령별 아동학대 인식률	444
〈표 7- 14〉 아동특성별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445
〈표 7- 15〉 아동특성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않는 이유	446
〈표 7- 16〉 아동특성별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않는 이유	447
〈표 7- 17〉 전국 아동학대발생률의 연도별 비교	448
〈표 7- 18〉 우리나라와 미국의 아동학대발생률 비교	448
〈표 7- 19〉 아동특성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49
〈표 7- 20〉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의 연도별 비교	450
〈표 7- 21〉 한국과 외국의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 비교	451
〈표 7- 22〉 아동특성 및 학대유형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2
〈표 7- 23〉 아동기 학대경험여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3
〈표 7- 24〉 아동의 음주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3
〈표 7- 25〉 아동의 양성평등적 태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4
〈표 7- 26〉 아동의 자기통제력 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5
〈표 7- 27〉 아동의 생활만족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6
〈표 7- 28〉 아동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7
〈표 7- 29〉 부모-자녀의 관계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8
〈표 7- 30〉 부모와의 갈등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59
〈표 7- 31〉 부모의 자녀양육방식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0
〈표 7- 32〉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여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1
〈표 7- 33〉 부모의 음주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2
〈표 7- 34〉 부모의 권력구조 유형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3

〈표 7- 35〉 부모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4
〈표 7- 36〉 부모의 자기통제력 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4
〈표 7- 37〉 부모의 생활만족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5
〈표 7- 38〉 부모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6
〈표 7- 39〉 부모의 교육수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7
〈표 7- 40〉 부모의 취업여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7
〈표 7- 41〉 부모의 소득수준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발생률	468
〈표 7- 42〉 지난 1년간 아동학대 경험횟수 분포	469
〈표 7- 43〉 아동특성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중복유형수 분포	470
〈표 7- 44〉 가해자특성별 지난 1년간 아동학대 중복유형수 분포	471
〈표 7- 45〉 지난 1년 이전 아동학대경험률	472
〈표 7- 46〉 아동특성별 아동학대 발생원인	473
〈표 7- 47〉 폭력주체별 아동학대 발생원인	474
〈표 7- 48〉 가해자의 가해당시 음주정도	475
〈표 7- 49〉 아동특성별 아동학대 가해자	475
〈표 7- 50〉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76
〈표 7- 51〉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공유하는 1일 평균시간 분포	478
〈표 7- 52〉 폭력주체별 신체적 폭력정도	478
〈표 7- 53〉 아동특성별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479
〈표 7- 54〉 아동특성별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480
〈표 7- 55〉 아동특성별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	480
〈표 7- 56〉 아동특성별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481
〈표 7- 57〉 아동특성별 학대 후 가족생활의 변화	482
〈표 7- 58〉 아동특성별 대처방식	483
〈표 7- 59〉 아동특성별 피하는 장소	484
〈표 7- 60〉 아동의 도움요청 대상	484
〈표 7- 61〉 아동특성별 참는 이유	486

〈표 7- 62〉	폭력주체별 아동학대 대처방식	485
〈표 7- 63〉	학대행위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486
〈표 7- 64〉	아동연령(학제)별 서비스욕구	487
〈표 7- 65〉	아동연령(학제)별 필요한 사후정책	488
〈표 7- 66〉	아동연령별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정책	489
〈표 8- 1〉	미혼응답자의 특성	492
〈표 8- 2〉	미혼응답자의 특성별 소득과 소비생활	493
〈표 8- 3〉	미혼응답자의 특성별 건강상태	494
〈표 8- 4〉	미혼응답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적 경험여부	495
〈표 8- 5〉	미혼응답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자 및 학대목적 대상	495
〈표 8- 6〉	미혼응답자의 성별 음주빈도	496
〈표 8- 7〉	미혼응답자의 성별 음주량	497
〈표 8- 8〉	미혼응답자의 부모·친척 및 친구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497
〈표 8- 9〉	미혼응답자의 자기통제력에 대한 생각	498
〈표 8- 10〉	지난 1년간 미혼응답자의 가족 및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499
〈표 8- 11〉	미혼응답자의 가부장적태도에 대한 생각	500
〈표 8- 12〉	미혼응답자의 성별 부모님 생존 및 동거여부	501
〈표 8- 13〉	미혼응답자의 형제자매수	502
〈표 8- 14〉	미혼응답자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	502
〈표 8- 15〉	미혼응답자의 성별 가족 및 친·인척과의 접촉빈도	503
〈표 8- 16〉	미혼응답자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유무 및 친구 수	504
〈표 8- 17〉	미혼응답자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유무 및 이웃 수	504
〈표 8- 18〉	미혼응답자의 성별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505
〈표 8- 19〉	미혼의 성별 미혼자학대 인식률	506
〈표 8- 20〉	미혼특성별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507
〈표 8- 21〉	미혼자특성별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508
〈표 8- 22〉	미혼자특성별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 않는 이유	509

〈표 8- 23〉 전국 미혼자학대발생률의 연도별 비교	510
〈표 8- 24〉 미혼특성 및 폭력유형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1
〈표 8- 25〉 가구특성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2
〈표 8- 26〉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513
〈표 8- 27〉 미혼특성 및 폭력유형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4
〈표 8- 28〉 미혼의 아동기폭력경험 여부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5
〈표 8- 29〉 미혼의 음주정도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5
〈표 8- 30〉 미혼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6
〈표 8- 31〉 미혼의 자기통제력정도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7
〈표 8- 32〉 미혼의 생활만족도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8
〈표 8- 33〉 미혼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8
〈표 8- 34〉 미혼의 건강상태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19
〈표 8- 35〉 미혼의 사회적지지 자원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20
〈표 8- 36〉 미혼의 사회적지지 자원의 접촉정도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발생률	520
〈표 8- 37〉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 경험횟수 분포	521
〈표 8- 38〉 미혼자특성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 경험횟수 분포	522
〈표 8- 39〉 가해자특성별 지난 1년간 미혼자학대 경험횟수 분포	523
〈표 8- 40〉 지난 1년 이전 미혼자학대경험률	524
〈표 8- 41〉 미혼특성별 미혼자학대 발생원인	526
〈표 8- 42〉 폭력주체별 미혼자학대 발생원인	526
〈표 8- 43〉 가해자의 아동기 폭력 경험	527
〈표 8- 44〉 가해자의 폭력 및 학대 목격 대상	527
〈표 8- 45〉 가해자의 음주정도	528
〈표 8- 46〉 미혼특성별 미혼자학대 가해자	529
〈표 8- 47〉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30
〈표 8- 48〉 가해자와의 동거여부	531
〈표 8- 49〉 폭력주체별 신체적 폭력정도	532

〈표 8- 50〉 미혼자특성별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	533
〈표 8- 51〉 미혼자특성별 신체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533
〈표 8- 52〉 미혼자특성별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	534
〈표 8- 53〉 미혼자특성별 정신적 증상의 의료처치 경험	535
〈표 8- 54〉 폭력주체별 학대 후 가해자 변화	535
〈표 8- 55〉 미혼자특성별 학대 후 가족생활의 변화	536
〈표 8- 56〉 미혼특성별 대처방식	537
〈표 8- 57〉 미혼의 피하는 장소	538
〈표 8- 58〉 미혼의 도움요청 대상	538
〈표 8- 59〉 미혼의 참는 이유	539
〈표 8- 60〉 폭력주체별 대처방식	539
〈표 8- 61〉 학대행위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540
〈표 8- 62〉 경찰의 조치유형	540
〈표 8- 63〉 경찰의 조치 후 가해자의 행동변화	541
〈표 8- 64〉 미혼특성별 서비스욕구	542
〈표 8- 65〉 미혼특성별 필요한 사후정책	543
〈표 8- 66〉 미혼특성별 가정폭력예방에 필요한 정책	544
〈표 9- 1〉 응답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547
〈표 9- 2〉 노인의 특성별 경제상태	548
〈표 9- 3〉 노인의 특성별 건강상태	550
〈표 9- 4〉 노인응답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 경험 및 학대목적 경험여부	551
〈표 9- 5〉 노인응답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자 및 학대목적 대상	551
〈표 9- 6〉 유배우 노인의 성별 음주빈도	552
〈표 9- 7〉 유배우 노인의 성별 음주량	552
〈표 9- 8〉 유배우 노인의 자녀 및 손자녀수 분포	553
〈표 9- 9〉 유배우 노인의 성별 평균 자녀 및 손자·손녀수	553
〈표 9- 10〉 유배우 노인의 성별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 많은 자녀	554

〈표 9- 11〉 유배우 노인의 성별 비동거 자녀 중 접촉 많은 자녀의 접촉빈도 …	554
〈표 9- 12〉 유배우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접촉 많은 자녀별 접촉빈도 ……	555
〈표 9- 13〉 유배우 노인의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도움 준 비율과 도움 받은 비율 …	555
〈표 9- 14〉 유배우 노인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친구 수 …	556
〈표 9- 15〉 유배우 노인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 유무 및 이웃 수 …	556
〈표 9- 16〉 유배우 노인의 성별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	557
〈표 9- 17〉 유배우 노인의 특성별 부모·친척과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 도 자기통제력 등에 관한 의견 ……	558
〈표 9- 18〉 유배우 노인의 특성별 가족유대감에 관한 의견 ……	561
〈표 9- 19〉 유배우 노인의 사회적 스트레스 경험률 ……	562
〈표 9- 20〉 유배우 노인의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 ……	562
〈표 9- 21〉 유배우 노인의 부부권력 ……	563
〈표 9- 22〉 유배우 노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의견 ……	564
〈표 9- 23〉 유배우 노인의 배우자와의 갈등 정도 ……	564
〈표 9- 24〉 노인의 특성별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 법에 관한 인식 ……	565
〈표 9- 25〉 유배우 노인의 성별 노인부부폭력 인식률 ……	567
〈표 9- 26〉 노인의 특성별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신고의향 ……	568
〈표 9- 27〉 노인의 특성별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미신고 이유 ……	569
〈표 9- 28〉 노인의 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0
〈표 9- 29〉 유배우 노인의 월평균 소득별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1
〈표 9- 30〉 주 소득원별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2
〈표 9- 31〉 노인의 건강상태별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3
〈표 9- 32〉 일상적 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여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3
〈표 9- 33〉 유배우 노인의 성장시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4
〈표 9- 34〉 유배우 노인의 동거자녀 유무별 노인폭력 발생률 ……	574
〈표 9- 35〉 유배우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 많은 자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5
〈표 9- 36〉 유배우 노인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 유무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6

〈표 9- 37〉 유배우 노인의 부모·친척·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점수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77
〈표 9- 38〉 노인의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78
〈표 9- 39〉 유배우 노인이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	578
〈표 9- 40〉 유배우 노인의 가부장제 성역할태도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79
〈표 9- 41〉 유배우 노인의 부부권력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80
〈표 9- 42〉 유배우 노인의 부부동등여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81
〈표 9- 43〉 유배우 노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의견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81
〈표 9- 44〉 유배우 노인의 배우자와의 갈등정도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82
〈표 9- 45〉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경험횟수 분포	583
〈표 9- 46〉 과거(1년 이전) 노인부부폭력 경험률	584
〈표 9- 47〉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횟수 분포	586
〈표 9- 48〉 과거(1년 이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률	587
〈표 9- 49〉 지난 1년간 경험한 노인부부폭력 중 가장 심각한 영향 미친 유형 ·	588
〈표 9- 50〉 노인부부폭력 발생원인	589
〈표 9- 51〉 성장시 학대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원인	590
〈표 9- 52〉 학대행위자 특성	591
〈표 9- 53〉 학대행위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 경험 및 학대목격 경험여부	592
〈표 9- 54〉 학대행위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자 및 학대목격 대상	592
〈표 9- 55〉 학대행위자의 성별 학대행동 후 태도변화	593
〈표 9- 56〉 학대행위자의 성별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	593
〈표 9- 57〉 학대행위로 인한 신체적 증상	594
〈표 9- 58〉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증상	594
〈표 9- 59〉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	594
〈표 9- 60〉 학대행위에 대한 대응	595
〈표 9- 61〉 학대행위에 대해 무조건 피하는 곳	595
〈표 9- 62〉 학대행위에 대해 참는 이유	596

〈표 9- 63〉 학대행위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여부 및 미신고 이유	596
〈표 9- 64〉 부부폭력 경험 후 가족생활의 변화	597
〈표 9- 65〉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 및 보호시설 입소 의향	597
〈표 9- 66〉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	598
〈표 9- 67〉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598
〈표 9- 68〉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599
〈표 10- 1〉 응답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603
〈표 10- 2〉 노인의 특성별 경제상태	604
〈표 10- 3〉 노인의 특성별 건강상태	606
〈표 10- 4〉 노인응답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 경험 및 학대목적 경험여부	607
〈표 10- 5〉 노인응답자의 성별 성장시 학대자 및 학대목적 대상	608
〈표 10- 6〉 노인의 성별 음주빈도	608
〈표 10- 7〉 노인의 성별 음주량	608
〈표 10- 8〉 노인의 자녀 및 손자·손녀수 분포	609
〈표 10- 9〉 노인의 성별 평균 자녀 및 손자·손녀수	609
〈표 10- 10〉 노인의 성별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 많은 자녀	610
〈표 10- 11〉 노인의 성별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 많은 자녀의 접촉빈도	610
〈표 10- 12〉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접촉 많은 자녀별 접촉빈도	611
〈표 10- 13〉 유배우 노인의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도움 준 비율과 도움 받은 비율	611
〈표 10- 14〉 노인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유무 및 친구 수	612
〈표 10- 15〉 노인의 성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 유무 및 이웃 수	612
〈표 10- 16〉 노인의 성별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613
〈표 10- 17〉 노인의 부모·친척과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기통제력에 관한 생각	614
〈표 10- 18〉 가족유대감에 대한 의견	615
〈표 10- 19〉 노인의 사회적 스트레스 경험률	615
〈표 10- 20〉 노인의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	616
〈표 10- 21〉 노인특성별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관한 인식	617

〈표 10- 22〉 노인의 성별 노인학대 인식률	620
〈표 10- 23〉 노인의 특성별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신고의향	621
〈표 10- 24〉 노인의 특성별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미신고 이유	622
〈표 10- 25〉 노인특성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624
〈표 10- 26〉 노인가구유형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624
〈표 10- 27〉 월평균 소득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625
〈표 10- 28〉 주 소득원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626
〈표 10- 29〉 노인의 건강상태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	626
〈표 10- 30〉 일상적 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	627
〈표 10- 31〉 노인의 성장시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627
〈표 10- 32〉 노인의 동거자녀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628
〈표 10- 33〉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 많은 자녀별 노인학대 발생률 ..	629
〈표 10- 34〉 노인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이웃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	629
〈표 10- 35〉 노인의 부모·친척·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점수별 노인학대 발생률	630
〈표 10- 36〉 노인의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학대 발생률	631
〈표 10- 37〉 노인이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631
〈표 10- 38〉 노인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주거나 받은 경험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	632
〈표 10- 39〉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횟수 분포	633
〈표 10- 40〉 과거(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률	635
〈표 10- 41〉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 이유	637
〈표 10- 42〉 성장시 학대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학대 학대이유	637
〈표 10- 43〉 학대행위자의 특성별 가정 내 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638
〈표 10- 44〉 학대행위자 특성	639
〈표 10- 45〉 학대경험 노인의 특성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640
〈표 10- 46〉 학대경험 노인의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641
〈표 10- 47〉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 및 목격경험 여부	641

〈표 10- 48〉	학대행위자의 성별 학대행동시 음주상태	642
〈표 10- 49〉	학대행위로 인한 신체적 증상	642
〈표 10- 50〉	학대행위로 인한 정신적 증상	643
〈표 10- 51〉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	643
〈표 10- 52〉	학대행위에 대한 대응	644
〈표 10- 53〉	학대행위에 대해 무조건 피하는 곳	644
〈표 10- 54〉	주위도움 요청하는 곳	644
〈표 10- 55〉	학대행위에 대해 참는 이유	645
〈표 10- 56〉	학대행위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여부 및 미신고 이유	645
〈표 10- 57〉	경찰신고 후 조치사항 및 법적 조치 받은 경험유무	646
〈표 10- 58〉	경찰 상황 처리 후 학대행위자의 행동 변화	646
〈표 10- 59〉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 및 보호시설 입소 의향	647
〈표 10- 60〉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지원	647
〈표 10- 61〉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647
〈표 10- 62〉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	648
〈표 11- 1〉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652
〈표 11- 2〉	장애인의 성별 장애정도	653
〈표 11- 3〉	장애인의 연령대별 분포	653
〈표 11- 4〉	장애인의 성별 가구주 여부	654
〈표 11- 5〉	장애인의 교육 정도	654
〈표 11- 6〉	장애인의 결혼상태	655
〈표 11- 7〉	장애인의 취업여부	655
〈표 11- 8〉	장애인의 거주지역	655
〈표 11- 9〉	최근(지난 1년간) 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	657
〈표 11- 10〉	과거(1년 이전)의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659
〈표 11- 11〉	폭력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	661
〈표 11- 12〉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원인	662
〈표 11- 13〉	성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원인	663

〈표 11- 14〉	장애유형별 가정폭력 발생원인	663
〈표 11- 15〉	장애정도별 가정폭력 발생원인	664
〈표 11- 16〉	성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가해자	665
〈표 11- 17〉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가해자	666
〈표 11- 18〉	장애인의 가정폭력 첫 발생시기	666
〈표 11- 19〉	장애유형별 가정폭력 첫 발생시기	667
〈표 11- 20〉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사시 음주여부	667
〈표 11- 21〉	장애인 가정폭력 결과 나타난 가장 중한 신체적 증상	668
〈표 11- 22〉	장애인 가정폭력 결과 나타난 가장 중한 정신적 증상	668
〈표 11- 23〉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 후 가족생활의 변화	669
〈표 11- 24〉	성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대처방식	670
〈표 11- 25〉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 대처방식	670
〈표 11- 26〉	성별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 유무	671
〈표 11- 27〉	장애유형별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신고 경험 유무	671
〈표 11- 28〉	성별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672
〈표 11- 29〉	장애인의 가정폭력 해결·예방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시설 입소 의향	673
〈표 11- 30〉	장애인의 가정폭력 예방위해 필요한 정책(성별)	674
〈표 11- 31〉	장애인의 가정폭력 예방위해 필요한 정책	674
〈표 11- 32〉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성별 사회적응 위해 필요한 지원유형	675
〈표 11- 33〉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장애유형별 사회적응 위해 필요한 지원유형	676
〈표 12- 1〉	응답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78
〈표 12- 2〉	응답부부의 음주행태	679
〈표 12- 3〉	응답부부의 사회적 스트레스 경험률	680
〈표 12- 4〉	부부폭력 인식	681
〈표 12- 5〉	응답부부의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율	682
〈표 12- 6〉	응답부부의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않는 이유	683
〈표 12- 7〉	응답부부의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 및 신고않는 이유	683
〈표 12- 8〉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발생률	684

〈표 12- 9〉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686
〈표 12- 10〉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별 발생률	687
〈표 12- 11〉	지난 1년간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688
〈표 12- 12〉	배우자에게 폭력행사 당시 가해자의 음주여부 및 음주상태1)	688
〈표 12- 13〉	폭력을 행사한 후의 태도	689
〈표 12- 14〉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또는 남편의 신체적 증상	690
〈표 12- 15〉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 또는 남편의 정신적 증상	690
〈표 12- 16〉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와 남편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691
〈표 12- 17〉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정책	692
〈표 12- 18〉	가정폭력 해결 또는 예방프로그램에의 참여 여부	692
〈표 12- 19〉	특성별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사후적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	693
〈표 12- 20〉	가족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을 시 보호시설 입소할 의향	693
〈표 13- 1〉	조사대상자의 구성	698
〈표 13- 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표 구성	700
〈표 13-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02
〈표 13- 4〉	가정생활 관련 특성	705
〈표 13- 5〉	피해자의 성장기 특성	706
〈표 13- 6〉	폭력유형별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	708
〈표 13- 7〉	폭력내용별 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	709
〈표 13- 8〉	가정폭력지속기간	711
〈표 13- 9〉	가정폭력 변화양상	712
〈표 13- 10〉	폭력유형별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대응률	714
〈표 13- 11〉	폭력내용별 지난 1년간 피해자의 대응률	714
〈표 13- 12〉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가해자 발생률·피해자 대응률 비교	715
〈표 13- 13〉	맞대응 관련 사항	717
〈표 13- 14〉	가정폭력 후의 상황	719
〈표 13- 15〉	가정폭력 피해 내용	721
〈표 13- 16〉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실태	723

〈표 13- 17〉 폭력 후 상담관련 사항	725
〈표 13- 18〉 가해자(배우자)의 일반적 특성	727
〈표 13- 19〉 가해자(배우자)와의 향후관계	730
〈표 13- 20〉 가해자 관련 사항	733
〈표 13- 21〉 가해자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관련 사항	736
〈표 13- 22〉 폭력당사자 관련요인별 폭력발생빈도(언어적 폭력행사)	739
〈표 13- 23〉 부부폭력의 유형과 특성	743
〈표 13- 24〉 지난 1년간 장애인 가정폭력발생 실태	745
〈표 13- 25〉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복수응답)	745
〈표 13- 26〉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성	746
〈표 13- 27〉 지원제도 이용경험	747
〈표 13- 28〉 지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748
〈표 13- 29〉 지원제도 이용욕구	748
〈표 13- 30〉 지원제도 우선순위	749
〈표 13- 31〉 주거지원 욕구	750
〈표 13- 32〉 정부지원이 필요한 서비스 유형과 내용	751
〈표 13- 33〉 가정폭력 관련시설 이용 정도	753
〈표 13- 34〉 가정폭력 관련시설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753
〈표 13- 35〉 상담유형별 지난 1년간 이용 정도	754
〈표 13- 36〉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 경위 및 이유	755
〈표 13- 37〉 상담환경 관련 이용자 만족도	756
〈표 13- 38〉 상담소 프로그램 이용정도	757
〈표 13- 39〉 상담소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758
〈표 13- 40〉 상담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758
〈표 13- 41〉 상담소 프로그램 우선순위	759
〈표 13- 42〉 보호시설 이용실태	761
〈표 13- 43〉 보호시설 이용경위 및 이유	762
〈표 13- 44〉 보호시설 입주관련 사항	763

〈표 13- 45〉	가정폭력 관련시설별 지난 1년간 이용한 횟수	765
〈표 13- 46〉	가정폭력 관련시설 이용자 만족도	765
〈표 13- 47〉	미성년자녀관련 사항	766
〈표 13- 48〉	보호시설환경 관련 이용자 만족도	767
〈표 13- 49〉	상담소 프로그램 이용경험	768
〈표 13- 50〉	보호시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768
〈표 13- 51〉	보호시설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770
〈표 13- 52〉	보호시설 프로그램 우선순위	772
〈표 14- 1〉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유형별 조사결과	779
〈표 14- 2〉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설립년도	781
〈표 14- 3〉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	782
〈표 14- 4〉	법인유형별 가정폭력상담소의 법인역할	782
〈표 14- 5〉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건물소유형태	783
〈표 14- 6〉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노유자시설 지정 여부	783
〈표 14- 7〉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의 노유자시설 소방기준 충족도	784
〈표 14- 8〉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정부지원상태	785
〈표 14- 9〉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후원금 수준	786
〈표 14- 10〉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기금모금사업 수준	787
〈표 14- 11〉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프로젝트사업 수준	787
〈표 14- 12〉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채무상태	788
〈표 14- 13〉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유형	788
〈표 14- 14〉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일시보호기능 여부	789
〈표 14- 15〉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별도공간 구비율	790
〈표 14- 16〉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항목별 어려운 정도	790
〈표 14- 17〉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791
〈표 14- 18〉	가정폭력상담소의 협의체 운영 주관 기관	792

〈표 14- 19〉	가정폭력상담소의 바람직한 네트워크 주체	792
〈표 14- 20〉	가정폭력상담소의 연계가 중요한 기관 분포(중복응답)	793
〈표 14- 21〉	가정폭력상담소의 연계가 어려운 기관 분포(중복응답)	794
〈표 14- 22〉	가정폭력상담소의 관련기관과의 연계정도 및 연계미흡 원인	794
〈표 14- 23〉	가정폭력상담소의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필요한 정책	795
〈표 14- 24〉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찰과의 연계에 필요한 정책	795
〈표 14- 25〉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상담원 교육실시	796
〈표 14- 26〉	가정폭력상담소의 필요한 서비스 대비 지원 비율	797
〈표 14- 27〉	지난 1년간(2006. 1. 1~12. 31) 가정폭력상담소의 법적 소송이 필요한 사례수 대비 소송 비율	797
〈표 14- 28〉	가정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 실시율	798
〈표 14- 29〉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외부강사 참여 여부	798
〈표 14- 30〉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799
〈표 14- 31〉	가정폭력상담소의 외부강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800
〈표 14- 32〉	가정폭력상담소의 외부강사가 섭외 방식	800
〈표 14- 33〉	가정폭력상담소의 외부강사 사례 방식	800
〈표 14- 34〉	가정폭력상담소의 장애인 및 아동 서비스 수준	801
〈표 14- 35〉	가정폭력상담소의 사례관리 실시율 및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802
〈표 14- 36〉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 사례관리 건수	803
〈표 14- 37〉	가정폭력상담소의 사후관리 실시 및 사후관리 방식	803
〈표 14- 38〉	가정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평가 여부	804
〈표 14- 39〉	가정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평가 방식	804
〈표 14- 40〉	가정폭력상담소의 프로그램평가 틀 유무	805
〈표 14- 41〉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 인력수	806
〈표 14- 42〉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근무년수	806
〈표 14- 43〉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보수분포도	807
〈표 14- 44〉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평균 주당근무시간 및 주당초과근무시간	807

〈표 14- 45〉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휴가여건	808
〈표 14- 46〉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 종사자수 대비 전문자격증 소지자수	808
〈표 14- 47〉	가정폭력상담소의 교육·훈련실시율 및 교육·훈련방식	809
〈표 14- 48〉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 교육·훈련시간 및 지원비용 ..	810
〈표 14- 49〉	가정폭력상담소의 정기적인 재교육 여부	810
〈표 14- 50〉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의 가장 큰 어려움	810
〈표 14- 51〉	가정폭력상담소 종사자를 위한 개선점	811
〈표 14- 5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 분포	811
〈표 14- 5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 설립유형	811
〈표 14- 54〉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지역별 설립년도	812
〈표 14- 55〉	법인과 시설의 사무실 공간 별도 확보여부	812
〈표 14- 56〉	지역별 건물형태	813
〈표 14- 57〉	지역별 시설 소유형태	813
〈표 14- 58〉	시설 소유형태별 입주비용 부담처	813
〈표 14- 59〉	지역별 평균 시설 전체면적, 개별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면적	814
〈표 14- 60〉	별도 공간마련 비율	814
〈표 14- 6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속한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815
〈표 14- 62〉	법인대표와 시설대표의 동일인 여부	815
〈표 14- 63〉	법인과 시설 간의 회계장부 분리여부	815
〈표 14- 64〉	수익사업 종류	816
〈표 14- 65〉	법인이사회·운영위원회 구성여부 및 역할	816
〈표 14- 66〉	피해자 치료비 지원여부 및 치료비 지급방법	817
〈표 14- 67〉	피해자 치료비 집행상 문제점	817
〈표 14- 68〉	건물 또는 운영 관련 채무유무	818
〈표 14- 69〉	채무유무별 재정지원 충분	818
〈표 14- 70〉	재정지원이 부족한 부분	818
〈표 14- 71〉	재정지원이 부족한 경우 충당방법	819

〈표 14- 72〉	평균 지도·점검횟수 및 지도·점검 내용	819
〈표 14- 73〉	지도·점검의 사업운영 및 관리 개선에 도움정도	820
〈표 14- 74〉	인력 충분성 여부	820
〈표 14- 75〉	인력 확보상 어려운 이유	820
〈표 14- 76〉	거주자의 의견개진 공식경로 및 의견 반영정도	821
〈표 14- 77〉	퇴소자 의견수렴 여부 및 반영정도	821
〈표 14- 78〉	활용 홍보방법	822
〈표 14- 79〉	활용 홍보방법의 효과 유무	822
〈표 14- 80〉	강화되어야 하는 홍보방법	822
〈표 14- 8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협의체 구성여부 및 참여여부	823
〈표 14- 82〉	지역협의체 참여기관 및 협의체 운영 주관기관	823
〈표 14- 83〉	협의체 모임 빈도	824
〈표 14- 84〉	협의체 역할	824
〈표 14- 85〉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의체 주관기관	824
〈표 14- 86〉	주 연계기관, 연계 어려운 기관 및 향후 연계 강화 기관	825
〈표 14- 87〉	연계가 어려운 이유	825
〈표 14- 88〉	향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	826
〈표 14- 89〉	시설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 및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우선 개선사항	827
〈표 14- 90〉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7
〈표 14- 91〉	지원하는 피해자 유형 및 서비스 대상자	828
〈표 14- 92〉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여부 및 서비스 미제공 이유	828
〈표 14- 93〉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829
〈표 14- 94〉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제공 서비스 내용별 평균 건수	829
〈표 14- 95〉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제공한 상담 서비스 건수	829
〈표 14- 96〉	프로그램별 실시여부	830
〈표 14- 97〉	외부 전문가 활용	831
〈표 14- 98〉	외부 전문가 미활용 이유	831

〈표 14- 99〉	외부 전문가 활용 프로그램	831
〈표 14-100〉	외부 전문가 활용횟수	832
〈표 14-101〉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례	832
〈표 14-102〉	지난 1년간(2006. 1. 1~12. 31)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832
〈표 14-103〉	프로그램 평가틀 유무 및 평가방법	833
〈표 14-104〉	지난 1년간 사례관리 실시여부 및 미실시 이유	833
〈표 14-105〉	지난 1년간 실시한 평균 사례관리 수	833
〈표 14-106〉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미실시 이유	834
〈표 14-107〉	거주자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1)	834
〈표 14-108〉	평균 시설 정원	835
〈표 14-109〉	시설 평균 연 거주자	835
〈표 14-110〉	평균 입소율	835
〈표 14-111〉	지난 1년간(2006. 1. 1~12. 31)의 수용률1)	836
〈표 14-112〉	현 입소기간의 충분여부 및 적당한 입소기간	836
〈표 14-113〉	지난 1년간(2006. 1. 1~12. 31) 보호사례 건수	837
〈표 14-114〉	평균 종사자, 전문자원봉사자, 자문단 수	837
〈표 14-115〉	자격증 소지자 수	837
〈표 14-116〉	최종 학력별 평균 종사자 수	838
〈표 14-117〉	총 근무경력 및 현 시설 근무경력별 평균 종사자 수	838
〈표 14-118〉	월 평균 급여별 종사자 분포	839
〈표 14-119〉	종사자 수별로 본 월 평균 급여 분포	839
〈표 14-120〉	종사자의 현 급여에 대한 충분성 여부	839
〈표 14-121〉	종사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840
〈표 14-122〉	외부 보수교육 참여 종사자 수 및 개인당 지원액	840
〈표 14-123〉	종사자의 외부 보수교육 기회가 부족한 이유	841
〈표 14-124〉	종사자의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실시율 및 교육·훈련 방식	841
〈표 14-125〉	직원을 위한 재교육의 정기적인 실시여부	841
〈표 14-126〉	휴가관련 규정 유무 및 휴가일수 사용 정도	842

〈표 14-127〉	종사자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842
〈표 14-128〉	1366 여성긴급전화의 지역별 분포	843
〈표 14-129〉	1366 여성긴급전화의 설립년도	843
〈표 14-130〉	1366 여성긴급전화의 개별상담실 및 전용전화상담실	844
〈표 14-131〉	1366 여성긴급전화의 운영주체 및 위탁운영 단체	844
〈표 14-132〉	1366 여성긴급전화 건물 소유형태 및 채무 유무	844
〈표 14-133〉	운영주체별 평균 수신전화 회선 수 및 전용선 설치 기관 수	845
〈표 14-134〉	1366과 전용선을 설치한 기관1)	845
〈표 14-135〉	외국 여성을 위한 동시통역시스템 설치여부	845
〈표 14-136〉	운영주체별 운영위원회 구성비율 및 운영주체별 평균 운영위원 수	846
〈표 14-137〉	운영위원회 역할	846
〈표 14-138〉	운영위원회 결과의 기관운영에의 반영정도	847
〈표 14-139〉	직원채용 방법	847
〈표 14-140〉	자체 직원교육·훈련 실시율 및 실시횟수	847
〈표 14-141〉	직원 교육·훈련 실시방법	848
〈표 14-142〉	정기적인 보수교육 실시율 및 직원 교육·훈련의 도움여부	848
〈표 14-143〉	휴가실시 여부	849
〈표 14-144〉	야간 근무자 배치 여부 및 미배치 이유	849
〈표 14-145〉	1일 3교대 근무를 위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 설정 여부	849
〈표 14-146〉	1366의 담당 업무 중 비중을 두는 업무: 제1순위, 제2순위	850
〈표 14-147〉	1366의 운영 총당 자원	850
〈표 14-148〉	1366 운영상 재정지원의 적절성 여부	851
〈표 14-149〉	재정지원이 부족한 부분	851
〈표 14-150〉	1366의 재정지원이 부족한 부분의 총당방법	851
〈표 14-151〉	인력 충분성 여부 및 평균 적절 인력 수	852
〈표 14-152〉	인력확보 상 가장 큰 어려움	852
〈표 14-153〉	이용자의 의견수렴 공식경로 및 의견 반영정도	853
〈표 14-154〉	1366 홍보방법	853

〈표 14-155〉	1366 홍보방법의 효과성	853
〈표 14-156〉	기관별 1366과의 연계 실시율 및 평균 연계 건수	854
〈표 14-157〉	연계가 활발한 기관: 제1순위, 제2순위	854
〈표 14-158〉	연계가 어려운 기관	855
〈표 14-159〉	연계가 어려운 이유	855
〈표 14-160〉	향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	855
〈표 14-161〉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협의체 구성여부 및 참여여부	856
〈표 14-162〉	지역협의체 참여기관 및 운영 주관기관	856
〈표 14-163〉	협의체 모임 빈도	857
〈표 14-164〉	협의체 역할	857
〈표 14-165〉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협의체 주관기관	857
〈표 14-166〉	시설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	858
〈표 14-167〉	1366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858
〈표 14-168〉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프로그램 유무	859
〈표 14-169〉	외부 전문가 활용횟수	859
〈표 14-170〉	외부 전문가에 대한 사례	859
〈표 14-171〉	지난 1년간(2006. 1. 1~12. 31)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860
〈표 14-172〉	지난 1년간(2006. 1. 1~12. 31)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	860
〈표 14-173〉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 방법	860
〈표 14-174〉	긴급피난처 구비여부 및 규모별 분포	861
〈표 14-175〉	긴급피난처 규모별 공간의 적절성 여부	861
〈표 14-176〉	긴급피난처 이용 평균 피해자 수 및 동반자녀 수	862
〈표 14-177〉	긴급피난처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	862
〈표 14-178〉	긴급피난처 이용 경로별 평균 이용자 수	863
〈표 14-179〉	긴급피난처 이용자의 입소이유별 평균 인원 수	863
〈표 14-180〉	긴급피난처 이용자의 입소기간별 인원 분포	863
〈표 14-181〉	현 입소기간의 충분여부 및 적당한 입소기간	864
〈표 14-182〉	종사자 정원 및 현원	864

〈표 14-183〉	1366의 종사자 규모	864
〈표 14-184〉	학력별 평균 종사자 수	865
〈표 14-185〉	평균 자격증별 소지자 수 및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원 교육이수자	865
〈표 14-186〉	현 1366 근무경력	866
〈표 14-187〉	종사자의 평균 월 급여별 분포	866
〈표 14-188〉	정규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및 평균 근무시간	866
〈표 14-189〉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설립년도	867
〈표 14-190〉	지역별 통합상담소의 운영주체	868
〈표 14-191〉	통합상담소의 법인역할	868
〈표 14-192〉	통합상담소의 건물소유형태	869
〈표 14-193〉	지역 및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노유자시설 지정 여부	869
〈표 14-194〉	지역별 통합상담소의 노유자시설 소방기준 충족도	870
〈표 14-195〉	지난 1년간(2006. 1. 1~12. 31) 통합상담소의 지원상태	870
〈표 14-196〉	지난 1년간(2006. 1. 1~12. 31) 통합상담소의 후원금 수준	871
〈표 14-197〉	통합상담소의 기금모금사업 수준	871
〈표 14-198〉	통합상담소의 프로젝트사업 수준	872
〈표 14-199〉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채무상태	872
〈표 14-200〉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피해자 지원유형	873
〈표 14-201〉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일시보호기능 여부	873
〈표 14-202〉	통합상담소의 별도공간 구비율	874
〈표 14-203〉	통합상담소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별 공간 구분 및 전화기 별도 설치 여부	874
〈표 14-204〉	통합상담소의 운영항목별 어려운 정도	875
〈표 14-205〉	통합상담소의 협의체 구성 및 참여 여부	876
〈표 14-206〉	통합상담소의 협의체 운영 주관 기관	876
〈표 14-207〉	통합상담소의 바람직한 네트워킹 주체	876
〈표 14-208〉	통합상담소의 연계가 중요한 기관 분포(중복응답)	877
〈표 14-209〉	통합상담소의 연계가 어려운 기관 분포(중복응답)	877

〈표 14-210〉	통합상담소의 관련기관과의 연계정도 및 연계미흡 원인	878
〈표 14-211〉	통합상담소의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필요한 정책	879
〈표 14-212〉	통합상담소의 경찰과의 연계에 필요한 정책	879
〈표 14-213〉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전문상담원 교육실시	880
〈표 14-214〉	통합상담소의 필요한 서비스 대비 지원 비율	880
〈표 14-215〉	지난 1년간(2006. 1. 1~12. 31) 통합상담소의 법적 소송이 필요한 사례수 대비 소송 비율	881
〈표 14-216〉	통합상담소의 프로그램 실시율	881
〈표 14-217〉	지역 및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프로그램외부강사 참여 여부	882
〈표 14-218〉	통합상담소의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883
〈표 14-219〉	통합상담소의 외부강사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중복응답)	883
〈표 14-220〉	통합상담소의 외부강사가 섭외 방식	883
〈표 14-221〉	통합상담소의 외부강사 사례 방식	884
〈표 14-222〉	통합상담소의 아동 및 장애인 서비스 수준	884
〈표 14-223〉	통합상담소의 사례관리 실시율 및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	885
〈표 14-224〉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지역 및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평균 사례관리 건수	886
〈표 14-225〉	통합상담소의 사후관리 실시 및 사후관리 방식	886
〈표 14-226〉	통합상담소의 프로그램평가 여부	887
〈표 14-227〉	통합상담소의 프로그램평가 방식	887
〈표 14-228〉	통합상담소의 프로그램평가 틀 유무	888
〈표 14-229〉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평균 인력수	888
〈표 14-230〉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 종사자의 근무년수	889
〈표 14-231〉	통합상담소 종사자의 보수분포도	889
〈표 14-232〉	통합상담소 종사자의 평균 주당근무시간 및 주당초과근무시간	890
〈표 14-233〉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휴가여건	890
〈표 14-234〉	지역 및 운영주체별 가정폭력상담소의 평균 종사자수 대비 전문자격증 소지자수	891

〈표 14-235〉	통합상담소의 교육·훈련실시율 및 교육·훈련방식	892
〈표 14-236〉	운영주체별 통합상담소의 평균 교육·훈련시간 및 지원비용	892
〈표 14-237〉	통합상담소의 정기적인 재교육 여부	893
〈표 14-238〉	통합상담소 종사자의 가장 큰 어려움	893
〈표 14-239〉	통합상담소 종사자를 위한 개선점	893
〈표 14-240〉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지역분포	894
〈표 14-241〉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설립년도	894
〈표 14-242〉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법인유형	895
〈표 14-243〉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	895
〈표 14-244〉	법인대표와 시설대표의 공동여부	895
〈표 14-245〉	법인과 시설간의 회계장부의 분리여부	896
〈표 14-246〉	법인과 시설의 사무실 공간 분리여부	896
〈표 14-247〉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건물유형	897
〈표 14-248〉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건물소유형태	897
〈표 14-249〉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별도공간 구비율	897
〈표 14-250〉	지난 1년간(2006. 1. 1~12. 31)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예산상태	898
〈표 14-251〉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재정지원의 충분도	898
〈표 14-252〉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재정지원의 가장 부족한 부분	899
〈표 14-253〉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재정지원의 부족 부분 충당방법(중복응답)	899
〈표 14-254〉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법인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여부 및 역할	900
〈표 14-255〉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인력지원의 충분도 및 평균 충원인력	900
〈표 14-256〉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전문인력 확보상의 어려움	901
〈표 14-257〉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피해자치료의 지원 여부	901
〈표 14-258〉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치료비 집행상의 문제점	901
〈표 14-259〉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지도·점검 평균 회수 및 지도·점검 내용	902
〈표 14-260〉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지도·점검의 사업운영 및 관리개선의 도움정도	902

〈표 14-261〉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거주자의견 개선 공식경로	903
〈표 14-262〉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거주자의견 반영도	903
〈표 14-263〉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퇴소자 의견수렴 및 운영개선 활용	903
〈표 14-264〉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협의체 구성 및 참여율	904
〈표 14-265〉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협의체 참여 기관(중복응답)	904
〈표 14-266〉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협의체 운영 주관 기관	904
〈표 14-267〉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협의체 모임횟수	905
〈표 14-268〉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협의체 하는 일(중복응답)	905
〈표 14-269〉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협의체 주관 희망 기관	905
〈표 14-270〉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주로 연계하는 기관(중복응답)	906
〈표 14-271〉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계가 어려운 기관 분포(중복응답)	906
〈표 14-272〉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계가 어려운 이유(중복응답)	907
〈표 14-273〉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기관 분포(중복응답)	907
〈표 14-274〉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할 서비스(중복응답)	908
〈표 14-275〉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홍보방법(중복응답)	908
〈표 14-276〉	모자일시보호시설의 홍보방법 효과정도	908
〈표 14-277〉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	909
〈표 14-278〉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개선점	909
〈표 14-279〉	모자일시보호시설 발전에 필요한 정책	909
〈표 14-280〉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지원 피해자 유형 및 서비스 대상자	910
〈표 14-281〉	제공되는 서비스	911
〈표 14-282〉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제공된 평균 서비스 건수	911
〈표 14-283〉	지난 1년간(2006. 1. 1~12. 31) 제공한 평균 상담건수	912
〈표 14-284〉	프로그램 실시여부	913
〈표 14-285〉	활용중인 외부 전문가	913
〈표 14-286〉	외부 전문가 미활용 이유	914
〈표 14-287〉	외부 전문가 활용 프로그램	914

〈표 14-288〉	외부 전문가 활용횟수 및 사례방법	914
〈표 14-289〉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실시 여부	915
〈표 14-290〉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틀 유무 및 평가방법	915
〈표 14-291〉	지난 1년간(2006. 1. ~12)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 사례관리 미실시 이유 및 평균 사례관리 건수	916
〈표 14-292〉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여부	916
〈표 14-293〉	사후관리 방법	916
〈표 14-294〉	시설 정원 및 평균 연 거주자	917
〈표 14-295〉	지난 1년간(2006. 1. ~12)의 입소율 및 수용률	917
〈표 14-296〉	지난 1년간(2006. 1. ~12) 보호받은 사례건수	918
〈표 14-297〉	지난 1년간 (2006. 1. 1~12. 31) 평균 입소기간 및 재입소 비율 ...	918
〈표 14-298〉	현재 입소기간에 대한 충분성 여부 및 적당한 입소기간	918
〈표 14-299〉	종사자, 전문자원봉사자, 자문단 수	919
〈표 14-300〉	자격증 소지자 수	920
〈표 14-301〉	종사자의 최종 학력	920
〈표 14-302〉	총 근무경력 및 현 시설 근무경력별 평균 종사자 수	921
〈표 14-303〉	평균 월 급여별 종사자 수 분포	921
〈표 14-304〉	현 급여수준의 충분성	922
〈표 14-305〉	주당 평균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시간	922
〈표 14-306〉	지난 1년간 외부 보수교육 참여 종사자 수	922
〈표 14-307〉	외부 보수교육이 부족한 이유	923
〈표 14-308〉	시설 내 직원의 업무를 위한 교육·훈련과정 유무 및 교육·훈련방법	923
〈표 14-309〉	시설 내 직원을 위한 정기적인 재교육과정 유무	923
〈표 14-310〉	직원 휴가관련 규정 유무 및 규정 종류	924
〈표 14-311〉	직원 사용 휴가일수	924
〈표 14-312〉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925

그림 목 차

[그림 1- 1] 연구수행도	219
[그림 3- 1]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수직적 전달체계	255
[그림 3- 2]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의 수평적 전달체계	255
[그림 3- 3]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서비스의 네트워크 운영체계	256
[그림 3- 4] 윈스톱 서비스지원체계	256
[그림 3- 5]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실적	257
[그림 4- 1] 소득과 소비의 분포	310
[그림 5- 1] 폭력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322
[그림 5- 2] 가구주 성별 가정폭력발생률	328
[그림 6- 1] 부부폭력발생률	365
[그림 6- 2] 부부의 신체적 폭력발생률	367
[그림 7- 1] 학대유형별 아동학대 발생률	450
[그림 8- 1] 학대유형별 미혼자학대발생률	513
[그림 8- 2] 미혼자학대의 가해자 분포	529
[그림 9- 1] 건강상태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572
[그림 10-2] 가구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625
[그림 12-1]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685
[그림 13-1] 폭력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707
[그림 13-2]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대응률	713
[그림 13-3] 폭력유형별 가정폭력 가해자 발생률·대응률 비교	715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 넓은 의미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됨.
- 가정폭력의 순환성이나 전파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가정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의 마련과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는데 주요 목적을 가짐.
 - 첫째, 가정폭력 유형별 발생실태를 파악함.
 - 둘째, 가정폭력 유형별 예방 및 대응책을 개발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함.
 - 셋째, 가정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국내제도 연구 검토, 가정폭력 관련 선진국의 제도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해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제시함.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기존문헌 검토

- 한국과 선진국의 가정폭력 관련 제도 및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가정폭력 발생이론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에서 유용한 이론을 논의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일반가구조사

- 조사표 유형은 모두 6종이며, 가구공통조사표(영유아 확대 포함), 응답자조사표, 응답자배우자조사표, 중·고등학생 조사표, 미혼자조사표, 노인조사표 등으로 이루어졌음.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 가정폭력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은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및 상담소 내담자
 -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조사 및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

가정폭력 관련 지원시설조사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우편조사 실시

2. 연구방법

가정폭력 관련 문헌연구

-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선행연구, 정책추진 실태, 민간단체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함.
- 또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외국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 및 피해자 보호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제도 및 정책의 도입가능성을 판단함.

행정통계 수집 및 분석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의 공식통계에 의해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추이 및 특성 파악.

□ 가구실태조사 및 자료분석

-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ED를 활용한 전국단위의 표본추출을 함.
 - 즉, 전국 대표성을 가진 200개 조사구의 10,00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통계청의 조사구 요도를 활용하고 가구명부 참조
- 조사기간은 2007. 8. 6~10. 29(80일간)이었으며, 조사대상 10,000가구 중에 조사완료가구는 9,847가구로 완료율은 98.5%를 보였음.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피해자 심층조사

- 가정폭력 피해자 약 1,000명에 대한 심층조사
- 전문상담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는 피해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
- 가정폭력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현황 등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조사

- 조사대상: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22개소
- 조사방법: 우편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07년 10월 8일 ~ 11월 30일
- 조사완료: 320개소
 - 가정폭력상담소 209개소, 통합상담소 29개소, 여성긴급전화 1366 17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9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6개소
- 조사표 구성: 5종
 -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등

제 3 절 연구수행체계

□ 실태조사 분담

- 3개 기관이 연구내용에 따라 실태조사 분담 실시
 - 조사단계: 일반가구에 대한 가정폭력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정폭력관련 지원시설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조사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수행하였음.
 - 분석단계: 각 조사수행기관이 조사자료 처리 및 데이터 분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보고서 작성의 책임기관에게 이관되었음.
 - 최종단계: 보고서 작성단계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고, 공동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가정법률상담소의 연구진과 협의·조정하여 완료하였음.

제 2 장 가정폭력 이론 및 선행연구

제 1 절 가정폭력관련 제 이론

1.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 가정폭력의 개념

-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 외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개념인 ‘가정폭력(family violence)’ 혹은 ‘배우자학대(domestic violence or spouse abuse)’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 가정폭력의 유형

- 가정폭력의 유형은 가정폭력의 가해자(행위자)와 피해자간의 관계에 의한 분류이며, 다른 하나는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임.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의한 폭력을 기준할 경우, 일반적으로 3대 가정폭력은 아내폭력,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을 의미함.
 - 가정폭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간주되는 것은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라 하겠음.

2. 가정폭력 발생이론

□ 정신병리학적 이론(psychopathological theory)

-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개인적 행위자로서 어떤 특성(characteristics)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가정폭력을 이해하려고 하는 개인내적 이론(intraindividual theories)의 한 유형임.
 - 가정폭력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병리적인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입장임.

□ 사회심리학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ies)

-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사회환경, 타인, 집단, 그리고 조직과 개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가정폭력을 이해하려는 관점임.
 - 이에선 좌절-공격이론, 사회학습 및 역할모형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교환이론, 자원이론, 갈등이론 등이 있음.

□ 사회문화적 이론

- 사회문화적 이론은 폭력을 가치, 제도, 체계운영 등과 같은 사회적 구조나 질서 등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사회구조, 기능, 하위문화, 그리고 사회체제 등과 같은 거시적 변인에 의해 가족 내에서의 개인폭력을 설명함.
 - 이에선 체계이론, 기능이론, 구조적 이론, 문화적 이론, 맑스 이론, 그리고 여

권론적 이론 등이 있음(Gelles & Straus, 1979).

제2절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1. 가정폭력관련 선행연구

□ 가정폭력실태조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변화순 외(1993), 김재엽 외(1997), 김승권 외(1998), 한국여성개발원(1999), 한국여성개발원(2001) 등에 의하여 주로 이루어졌음.
 - 각 연구별로 전국규모의 조사가 아니라 대표성을 갖지 못하거나 전체 가족구성원간의 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거나 또는 조사방법 상의 한계를 지님.
- 가정폭력 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1999)에서 이루어졌고, 가정폭력전달체계 및 인력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김승권(1999), 박경숙(2000), 신은주(2000), 엄명용(2000), 김승권(2000, 2006) 등의 연구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정부의 폭력대응체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방안모색을 위한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김승권(2006)은 '정부의 폭력에 대한 분절적 대응과 행정시스템 분석'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김승권(2006)은 여성긴급전화 1366의 위기개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을 발표하였음.

2.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 아동학대 관련 선행연구

-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1990년대에는 일부지역 및 집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생률 및 빈도가 조사되었으며, 2000년대 오면서 전국 단

- 위의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아동학대발생률 및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 통계가 분석되었음(보건복지부, 2000; 여성가족부, 2004).
- 또한 아동학대발생원인,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후 후유증과 대처방식 등 다양한 주제들의 연구가 수행되었음.
- 아동학대발생률은 아동학대범위 및 아동학대를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차이를 보임.
- 2000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위를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와 방임, 성학대로 분류하였으며 폭력정도에 따라 구타와 폭행 및 상해로 재분류하였음.
 - 동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 및 척도 기준이 마련되었고 폭력정도에 따라 신체적학대를 분류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음(보건복지부, 2000).
- 2004년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범위를 신체적폭력과 정서적폭력으로 분류하였으며 폭력정도에 따라 경한 신체적폭력과 심한 신체적폭력으로 분류하였음.
- 2004년 아동학대범위는 2000년에 비하여 신체와 정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용어도 학대에서 폭력으로 바뀌면서 아동학대의 측정도구에 폭력행위가 강하게 반영되었음(여성가족부, 2004).
- 전국 단위의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아동학대발생률은 2000년에 43.7%에서 2004년에 69.2%로 4년간 25.5%pt의 증가를 보였음(보건복지부, 2000; 여성가족부, 2004).
- 학대유형별 아동학대발생률은 2000년 연구에서는 신체학대발생률은 23.5%이었으며 정서적학대는 19.0%, 방임은 20.2%로 산출되었으며, 성학대는 1.1%로 나타났음(보건복지부, 2000).
 - 2004년 연구에서는 신체적학대발생률이 51.9%, 정신적 폭력은 66.1%로 측정되었음(여성가족부, 2004).
 - 아동학대유형은 4년간 신체적학대는 2.2배, 정서적학대는 3.5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한 신체적폭력이 높게 발생하는 특성을 보였음. 그러나 두 연구 간에는 아동학대 정의, 범위 및 측정도구 등이 동일하지 않고 응답자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학대유형 중에서 주로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방임에 관한 연구는 몇몇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최윤라, 1988; 변화순,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수미, 2003; 보건복지부, 2004).
- 아동학대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아동학대범주가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향후 아동학대연구는 급변하는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학대 이외에 새로운 형태의 방임, 성학대 등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아동학대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것임.
- 아동학대는 발생 요인을 단절할 때 최소화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

□ 노인학대 개념 및 유형

- 노인학대에 관한 개념은 사회·문화적 요인과 가치관을 반영하여 정립되므로 나라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음.
 - 최근 미국립노화지원센터(NARCEA)는 기존에 확인된 노인학대 유형들을 총망라하여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혹은 심리적 학대, 방임, 재정적 혹은 물질적 착취, 자기방임 등 6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이 6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 그 외 다른 형태의 학대는 일곱 번째 유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Tatara, 1993; 우국희, 2001 재인용).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은 신체적 학대·폭력,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으로, 국가인권위원회(2002)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으로 구분하고 있고, 최근 김미혜·권금주 등(2006)은 신체적 학대를 안전위협과 직접 상해로 분류하여 신체적 학대 I, 신체적 학대 II로 분류하고, 언어·정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재정적 학대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

□ 노인학대 실태 관련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서 서울시 60세 이상 노인 593명을 대상으로 형법상의 유기죄 및 학대죄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8개 항목에 대한 빈도를 측정한 결과,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의 경험이 더 많았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1999)에 의하면, 전체 응답노인 중 8.2%의 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유형별 발생률은 언어·심리적 학대가 7.7%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방임(2.5%), 경제적 착취(2.1%), 신체적 학대·폭력(0.3%)의 순이었음.
- 국가인권위원회(2002)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 정서적 학대 37.3%, 방임 24.9%, 언어적 학대 19.5%, 신체적 학대 10.6%, 경제적 학대(7.7%)의 순으로 나타났음.

□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노인학대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 가족관련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노인의 성별과 연령, 배우자 유무, 경제적 상태 및 의존성 등을 들 수 있음.
 - 박미은(2004)은 가족관련 요인으로 사회적지지, 학대자와 노인의 평소 관계, 노인과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박봉길(2005)은 가족갈등을, 그리고 이연호(2003)는 가족의 기능의 저하나 가족결속력의 약화를 학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노인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노인차별주의, 강한 가족주의,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을 들 수 있음.

4. 장애인폭력 관련 선행연구

- 기존의 장애인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함.

- 비장애인들의 일반적인 가정폭력, 특히 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을 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선행연구는 거의 없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전국 6개 도시에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문화된 폭력상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상담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이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피해의 심각성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되기 시작됨.
- 2006년에 여성가족부의 지원 하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그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관련 정책과 법제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처음으로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대상은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부설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14 곳의 활동 여성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하였음.
 - 주요 조사결과로는,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경험률은 68.8%였고, 장애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적장애인이 72.5%로 가장 높았고, 장애등급별 가정폭력 발생률은 장애등급 2등급의 장애인이 76.3%로 가장 높았음.
- 본 조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비장애여성 중심의 가정폭력 조사 및 관련 정책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조사표 설계에 매우 어려움이 많았고, 조사대상이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지부의 활동가와 회원인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남성장애인과 전체 장애인을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폭력 관련 후속 연구 및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5.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선행연구

□ 가정폭력 피해 실태

- 쉼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8.2%의 대상자들이 한달에 1회 이상의 신체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김선아 외, 2003)
- 남편의 폭력에 대해 피해여성들의 맞대응은 빈도와 정도에서 경미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함.
 -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가해자 부부 22쌍을 대상으로 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2006: 175)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 부부들의 동거기간은 72.8%가 1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나 가정폭력의 장기성을 보여주고 있음.
 - 김재엽의 조사(2007: 452)에서는 남편으로부터의 첫 폭력 발생시기가 결혼한 지 6개월 미만이 42.9%,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25.5%로 1년 이내가 응답자의 68.4%에 이룸.

□ 가정폭력의 영향

-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특징으로는 오랜 기간동안 폭력에 시달리면서 이로 인한 충격으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부정적인 심리상태 등 다양한 측면의 충격을 포함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김광일(1985)은 피해여성들은 가해자인 남편에 대해 순응적이며, 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 기인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고, 표출하지 못한 분노감이나 적개심으로 심리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이러한 심리상태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으로 논의하였음.
 - 일반여성과 비교한 Gleason(1993)의 연구에 의하면 학대받는 여성의 63%가 우울증으로 일반여성들의 9.3%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여성들은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폭력의 순환싸이클에 갇혀지는 것을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되기도 함.

□ 폭력상황에서의 대응

- 가정폭력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폭력발생시 ‘끝까지 참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63.0%, ‘무조건 피함’이 22.4%로 보고한 연구보고서가 있으며(김승권·조애저, 1998), 다른 연구에서는 남편의 폭력행동으로 인하여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74.6%인 것으로 보고되었음(김선아 외, 2003).
- 남편이 폭력행동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가에 대해 경찰 전문가 등에 의한 도움요청이 17.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김선아 외, 2003).

□ 법적인 요청 정도

- 피해여성들이 가해남성을 대상으로 신고 또는 고소와 같은 법적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율은 낮은 경향이 있는데, Kantor & Straus(1990)의 연구에서는 경미한 폭력의 경우 3.2%, 심각한 폭력의 경우 14.4%로 나타났으며, Bachman & Coker(1995)는 피해자들의 경찰신고율은 56%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자들의 경찰에의 도움 요청 및 신고율은 현재까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식력 및 법적 개입효과에 대한 태도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김승권·조애저(1998)는 폭력상황에서 피해여성의 주위 요청은 6.8%에 불과하

고 대부분이 끝까지 참으면서 맞는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문제로 상담기관이나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장희숙 외의 연구(200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1.8%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고소를 하는 경우는 중한 폭력을 당하는 아내들이 경미한 폭력의 피해자에 비해서 고소할 확률이 높으며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여성일수록 고소할 확률이 높고, 고소를 한 아내들은 그렇지 않은 아내들에 비해 남편과의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높음.
 - 경찰에 신고 후 남편의 신체적인 폭력이 줄었다는 보고가 피해여성들의 38%로서 신고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가해자의 특성

-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은 난폭한 성격, 편집적인 성격 등과 같은 인격 장애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음주는 가해남성들의 폭력행동과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서 음주상태에서 가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이 마시지 않는 남자들에 비해 2-3배 높다고 함(Kantor & Straus, 1990).
 - 한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Fojtik(1978)의 조사에서는 학대 남편들의 60% 정도가 알코올 중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김재엽, 2007 재인용).
- 가해남성들은 성역할에 대해 남성우월주의 또는 가부장적인 태도가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폭력성이 높을수록 더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다는 입장(김광일, 1985; Rosenbaum & O'Leary, 1981)으로서 성역할의 사회화가 남녀간의 불평등에 대해 동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사회화된 경우가 많아서 가해자 폭력재발을 막는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성역할 재사회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됨.
- 한편 가해자들은 대체적으로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가 강하다고 함.

- Dibble & Straus의 연구(1990)에서 아내구타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남편 응답자 중에서는 23.0%가 실제로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였으나, 아내 구타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남편은 6.5%가 아내를 구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는 위에서 논의한 성역할태도에 있어 가부장적인 사고가 폭력행위에 미치는 관련성 보다 더 밀접하게 폭력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장희숙(2006)은 밝히고 있음.
- 부부의사소통 유형은 가해남성의 인격적 특성, 가해 남성의 성역할 태도 또는 가부장적인 사고, 그리고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과정과 연관되어 폭력을 초래하는 원인인 것으로 논의됨.
- 건강하지 못한 인격, 또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성들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부간의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폭력이 의사소통의 한 유형으로 변하게 함.
- 한편 가정폭력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기인하기보다는 부부간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도 있음 (Giles-Simes, 1993).
- 다시 말해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부부는 상호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고 폭력을 대화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임.
- 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아동기에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아내 폭력률이 높다는 주장이 많지만(김득성 외, 2000; Rosenbaum & O'Leary, 1981), 성장기의 폭력에 대한 경험이 성인이 되어 아내폭력에 직접적인 관련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관련이 있어도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Gelles, 1997; Hotaling & Sugarman, 1990; 김예정 외, 2003).

□ 필요한 서비스

- 쉼터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경우 우선 자신들이 폭력상황에서 도피하여 쉴 수 있는 '쉼터'의 증대(26.0%), '폭력남편에 대

한 법적인 제한조치(18.1%), 15.7%의 대상자들이 '남편의 치료'를, 15.0%가 '여성의 취업알선'을 원하고 있었음.

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의 평가연구

□ 여성폭력관련 지원시설(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

- 여성폭력관련 전달체계로서 지원시설(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03년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2차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음.
 - 2003년의 최초 평가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원시설이 시설환경, 종사자 근무환경, 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및 수준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음(김승권 외, 2004).
 - 2006년에는 2007년의 2차 평가를 실시할 목적으로 평가지표가 개발되었음(김승권 외, 2006).
- 이어서 2007년에는 3대 여성폭력(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관련 시설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평가결과는 시설발전계획과 중장기 대응방안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제 3장 가정폭력의 국내·외 정책동향

제 1절 국내 정책동향

- 1990년대 중·후반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에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규정 마련, 1997년 말에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주요정책과제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1998년에는 가정폭력 특별법 시행으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1999년에는 가정폭력방지보완대책을 수립하였음.

- 2001년 이후에는 가정폭력관련 대응정책이 통합적으로 접근된 시기로, 여성부가 신설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가정폭력관련 업무가 이관되었고, 같은 해에 가정폭력근절 종합대책(안)이 마련되었음.

1. 가정폭력 관련 법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¹⁾

- 본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보호법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진정한 피해자 욕구에 부응하여 보호와 지원활동을 하도록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 법안 마련이 중요함.
-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경찰,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기관, 취업지원기관, 의료기관 등이 연계하는 협력적 피해자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다각도의 지원책이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자를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급하고 행위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8조는 성폭력특별법 제33조에서 구상권 규정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따라서 가정폭력이 국가적·사회적으로 대처해야 할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도 국가가 일차적으로 치료비용을 부담함으로써 가정폭력이 사회적 대가를 지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정책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1) 홍미영, 20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안 요약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²⁾

- 현행 특례법은 가정보호라는 입법목적 하에서 경미한 제재수단인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또한 현행 특례법은 보호처분의 도입으로 가해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보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가정폭력범죄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피해자보호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결함을 지님.
 - 특히, 현행 특례법상의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은 그 내용이 피해자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자의 교정을 위한 조치가 혼재되어 있음.
 - 또한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임시조치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피해자보호조치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2.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 및 재정지원

-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는 전국에 372개소가 설립되어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자의 임시보호 및 법률지원서비스 등 관련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사회 홍보 및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음.
 - 가정폭력보호시설의 업무는 일반적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업무를 비롯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임시보호 및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가정복귀 원조,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예의 동행이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 홍미영, 20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요약

3.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의료기관은 보건의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신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등의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음(제18조 제1항).
-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며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음(제18조 제2항).

4. 서비스 전달체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01년 7월 여성긴급전화 「1366」을 16개 권역으로 정비하고 전담직원 144명을 배치하여 연중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전화권역(시·도)별로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종합정보 안내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긴급보호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과 유관기관별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폭력피해여성이 One-stop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112, 119,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별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정폭력·성폭력관련 서비스간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였음.
- 현재 여성가족부, 경찰청, 의료기관 3자 협약에 의해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1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찰, 상담원,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여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
- 그러나 의사는 비상근으로 배치되어 가정폭력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짐.

제 2절 주요 외국의 정책동향

1. 여성폭력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전반적 동향

- 오스트리아에서는 ‘폭력 피해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행위자가 집을 나가야 한다’는 인식으로의 대전환에 기초하여 1997년 새로운 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미한 폭력을 방지하는 실효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또한 선진국의 경우 모든 폭력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가정폭력, 성학대, 아동학대, 여성폭력 등을 포괄하는 통합번호로 일차적인 핫라인이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단체 네트워크별 산하의 여성신고 전화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Secondary bound).
- EU의 확대와 함께 여성폭력문제도 전 유럽차원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4년에 설립된 WAVE에 23개국이 참여해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 WAVE는 여성폭력에 관한 유럽 내 국제 NGO로서 각국 폭력상황에 관한 정보교류, 국가별 실태조사와 공통인식을 증진시키는 구심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국가에 따라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매우 제한적으로 가정폭력을 접근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아내폭력과 남편폭력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어 부부폭력으로 접근하고 있었음.

□ 미국

- 여성폭력 관련 법률인 1984년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의 특징은 피해자가 긴급 상황 일 때만 지원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단기간의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었음.
- 1990년에는 피해자권리 및 회복법(Victims Rights and of Crime Act), 1994년 폭력범죄통제와 법집행법 및 여성을 위한 가정보호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1997년에 피해자권리 분류법(Victim Right Clarifica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1998년에 여성폭력방지법(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제정하여 1984년 법에 비해 연방정부의 주 정부 가정폭력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양의 증가되었고, 가정폭력피해 여성들이 주 단위를 넘어서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내용들이 명시되었음.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여성피해자에게 쉼터, 상담서비스 제공과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대중교육 캠페인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희생자들이 연방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법 집행관들이 가해자를 주 경계에 상관없이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음. 그리고 검사들이 피해자에 의한 고소의 철회를 막기 위한 시도로 '철회불가(No-Drop)' 정책을 도입하였음.
- 미국의 여성폭력 행정체계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휴먼서비스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하에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을 두어 가정폭력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가족청(ACF)에서는 가정폭력을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할 문제로 보고 있음.
 -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관련법(The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Act)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가정폭력 희생자를 위한 쉼터 및 여성폭력예방 상담을 지원함.
- 또한 가정폭력 관련 5개의 전국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s) 즉, 민·형

사법관련 자원센터, 아동부양 및 보호관련 자원센터, 가정폭력관련 보건자원센터, 인디언부족과 부족민을 위한 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1995년부터 전국 무료응급전화(1-800-368-5737)가 도입되어 매일 24시간 운영되며 상담,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원조, 정보를 제공함.

□ 스웨덴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폭력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정과 별도의 조치들을 채택하였음.
-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부서는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며, 책임자는 장관과 2명의 부장관으로 구분되며, 이들 조직에서는 주로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 및 감독하는 업무가 주류를 이룸.
 - 영역별로는 공공보건(Public Health Division), 보건(Health Care Division),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Division),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Division) 등으로 구분하며,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부서(Social Service Division)에서 각종 가정폭력·성폭력, 장애,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
- 보건사회부는 지방단위의 사회복지 부서에 대하여 정책의 견인과 집행의 강제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여성복지서비스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함.
- 1994년 스웨덴 폭력방지위원회는 정부제안을 받아들여 옘살라 대학병원 내에 국립폭력피해여성센터(National Center for Battered and Raped Women)를 설립하였음.
 - 또한 현재 131개의 여성 긴급쉼터(local women's emergency shelters)가 있으며, 이들 쉼터들은 일년에 약 14,000건의 전화를 받고 있으며, 국가 예산에서 기관지원금을 받고 있음.

□ 영국

- 여성폭력 관련 법률은 1990년에 여성폭력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관

십의 집중을 보이면서 1996년 가족법의 개정으로 가정폭력위험으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상의 조치가 취해졌음.

- 폭행에 대한 법적조치에는 형법상 경찰에 폭행죄로 조치하거나 민법상 폭력 남편을 가정에서 내몰거나 접근을 금지시키는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음.
- 영국의 여성폭력 관련 행정체계에는 여성문제담당 장관과 여성청(The Women and Equality Unit)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음.
- 여성청 장관은 정부 내의 다른 직을 맡고 있는 장·차관들이 겸직하는데, 2명의 여성장관(The Ministers of Women)이 분야별로 종사함.
 - 여성청은 총리 직속의 내각기구로 여성담당 장관과 국장 및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결정을 타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처리함.
- 여성청의 조직에서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곳은 여성폭력대응팀(Violence Against Women Team)임.
- 주요 역할은 여성에 관한 모든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특별히 강간, 스토키 범죄, 가정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표적인 여성폭력정책으로는 1974년 처음으로 핫라인인 여성보호기관(Women's Aid)이 설립된 이후 2000년대까지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영국 및 웨일즈(England and Wales)지역에 약 200여 개의 가정폭력 관련 기관간의 포럼이 존재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의 연계망이 효율적으로 이용됨.

□ 일본

- 일본은 1992년 가정폭력운동 및 연구집단(Domestic Violence Action and Research: DVARG)에 의해 전국적 조사가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이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
- 그 후로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민간 여성단체에 의해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피해자를 위한 서비스가 시작되었음.
- 북경여성회의 이후 1996년 '남녀공동참여비전'에서는 여성폭력의 철폐를 포함

시켰고, 후속조치로 '남녀공동참여 2000년 계획-남녀공동참여사회의 형성 촉진에 관한 국내행동계획'을 발표하였음.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이라는 제목으로 11개의 기본시책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확대되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경찰, 사법기관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단지 몇몇 현에서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여성경찰관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 일본에서는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피해여성들을 구제하는 등 직접적으로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특별법은 정비되어 있지 않음.
 - 다만 현행 법체계 내에서 형법, 민사법, 복지관련법 등 개별법을 적용하고 있음.
- 여성폭력에 대한 근거법이 없으며 매춘방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부인상담소, 부인보호시설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음.
- 정부의 대응에 반해 민간단체들이 제공하는 쉼터는 1993년에 처음으로 AKK여성센터가 설립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쉼터들이 설치되었으나 절대량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2. 아동학대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미국

- 미국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의 복지에 책임 있는 자가 1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서적 폭력, 성학대, 무관심, 부적절한 양육을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해롭거나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는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CAPTA)에서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착취 등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1974년에 아동학대 관련법으로 최초로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있

으며, 연방정부는 본 법에 의거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1980년 ‘입양원조 및 아동복지에 관한 법(The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족보존서비스와 영구배치서비스, 가족 외 배치를 주로 다루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변화를 가져온 법률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나타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 단위의 ‘아동학대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이 제정되었음.
 - 이 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전문가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 1993년에 제정된 ‘일괄예산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BRA)’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 아동학대 방지 및 치료법의 재승인된 법안으로 ‘아동안전가족법(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이 제정되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제정된 아동학대관련 총괄법안임.
- 미국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1974)에 근거하여 ‘국립아동학대 및 방임센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NCCAN)’가 설립되었음.
 - 동 센터는 주정부나 지역사회가 아동학대와 방임을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하도록 원조해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11개의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휴먼서비스 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하에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을 두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동보호의 주무부서는 DHHS 산하의 아동국(Children’s Bureau)으로 주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할하며, 정책수립, 주 재정지원, 현황조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초기에는 ‘격리보호’를 채택하였으나 점차 예방적인 차원의 가족보존 및 가족통합의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방향 하에서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조사, 개입, 종결의 네 단계를

거치며, 주정부의 DHHS 하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 CPS)가 주 전달체계임.

□ 영국

- 영국의 아동학대 개념은 ‘육체적 손상, 지적, 정서적, 또는 행동의 발육의 손상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법률에서는 학대가 아동의 건강 또는 발육에 손상을 입히는지 손상이 심각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동등한 아동과 비교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이 제정됨에 따라 분산되어 있던 아동관련 법률을 정비하였음.
 - 동 법에는 아동보호, 입양, 위탁 및 권리보장, 아동관련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였으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였음. 아동법은 2004년에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및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이 강화되었음.
- 영국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서로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있으며, 보건부 산하의 아동안전국(Head of the Children’s Safeguard Unit)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함.
-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현장조사, 사례회의, 판정, 보호 등 다섯 단계를 거침.

□ 일본

- 일본의 아동학대 개념은 ‘아동의 신체에 와상이 생기고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폭행을 가하는 일,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아동에게 외설적인 행위를 시키는 일, 아동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불충분한 섭식 또는 장시간의 방치, 그 외의 보호자로서의 감독보호를 현저하게 태만

하는 경우,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주는 언행을 행하는 일'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범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목인 및 배우자 폭력장면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일본의 아동학대관련 법률은 193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었고, 1947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폐지되고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되었는데 동 법에는 국민은 모든 아동이 심신 건강하게 태어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고 사랑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199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차원의 아동학대예방정책이 수행되었음.
- 일본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중앙정부 부서로 후생노동성이 관할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을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의 아동학대방지법에 대한 인식을 증진, 전파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 산하의 학대방지대책국(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Department)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계획, 지역별 학대방지 네트워크구축 등을 담당하며 개별 현·지정 도시의 아동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제를 논의함.
 - 후생노동성 산하의 평등고용·아동·가족국(Equal Employment, Children, Families Bureau)과 총무부는 아동학대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2004년 아동폭력예방을 정보제공, 교육, 계몽 및 연구조사를 위하여 45백만 엔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1990년에 민간단체인 '아동학대방지협회'가 오사카에서, 1991년에는 동경에서 발족하였음.
 - 동 단체에서는 전화 Hot-line을 개설하고, 심포지엄, 보고서 발행, 학회 발표 등을 통해 아동학대 방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 도도부현, 시정촌에서는 아동학대의 상담창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음.
-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 현장조사, 조치 등 세 단계를 거침.

- 신고는 아동학대 목격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안 할 경우의 처벌 조항은 없으며,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관련 기관을 통하여 신고하고 있음.
- 학대현장조사는 아동상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아동은 재가지도(원가정보호), 혹은 격리판정을 받고 있음.
- 아동은 격리판정이 나면 일시보호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위탁부모 혹은 후견인 인도, 친권박탈, 혹은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스웨덴

- 스웨덴의 아동학대 범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 방임 등을 모두 포함하며, 특히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경한 경우라도 법정에 회부됨.
-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아동학대 사례등록 및 신고 시스템이 없어 국가단위의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우며, 모든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은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신고된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기준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스웨덴의 아동학대 관련법은 1902년 아동복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가 시작되었고, 2002년 아동보호특별법(Care of Young Persons Special Provision Act)이 제정되어 아동보호서비스 및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더욱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음.
- 스웨덴의 아동학대 행정체계는 지역별로 사회복지위원회 총 284개소가 설립되어 아동보호체계를 구성 및 관리하며 보호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
 - 또한 보건복지국가위원회(the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산하에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평가센터(Center for Evaluation of Social Services)에서는 사회서비스 및 의료보호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적,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 민간협력프로그램으로는 아동권리사회(Children's Rights in Society: CRIS)는

아동을 위한 신고전화인 핫라인을 운영하여 전화상으로 고민을 상담하며 상담 내용 및 현황자료에 대하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음.

- 스웨덴의 아동보호체계는 예방, 조사, 사회적 지원과 재가치료, 기타 조치 등 네 단계를 거침.
 - 예방은 아동학대 사례로 관계기관에 넘기지는 않으나 아동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조사는 아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교사, 의사, 학교관련 및 보육 등)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접수 후 즉각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시작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긴급상황)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일시 격리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3. 노인학대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미국

-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성격이 강한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다는 주 정부 차원에서 먼저 노인학대에 관여하였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관심은 1978년 Steinmetz에 의한 논문이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1980년 하원의원인 Pepper & Oakar에 의해 '성인학대 방지, 확인, 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입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음.
 -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는 국가기관 설립과 의무신고제의 도입에 관한 것이었음(Tatara, 1995; 우국희, 2001 재인용).
- 1987년 노인법 관련 개정에서 노인학대관련 욕구조사와 노인학대예방활동을 주 정부 산하 지역노인기관(Area Agencies on Aging)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법안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1년 노인학대와 관련된 Title VII, Chapter 3이 추가되었음.

- 이는 주 정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련 조항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포괄적인 노인학대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음(Tatara, 1996; 우국희 2001 재인용).
- 이 외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 성인보호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이 있음.
- 이 법률에 따라 모든 주 정부는 자체의 노인학대 신고 및 조사, 피해자를 돕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성인보호서비스법의 핵심인 신고제는 노인학대 케이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학대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 개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미국의 노인학대 대처조직은 노인국, 국립노인학대센터, 그리고 민간기구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들 수 있음.
-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 AOA)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임.
 - 국립노인학대센터(NCEA)는 보고서를 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의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함.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국가 규모의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임.
 - 이 외 민간차원의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NCPEA)는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대변자들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단체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연구사업 활동을 하고 있음(이연호, 2001).
-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서비스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에서 조사되며, 성인보호 서비스의 강조점은 노인이 가능한 독립적 삶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것임.
- 각 주에서 제공되는 보편적인 주요서비스는 정신건강사정서비스, 상담, 법적

지원, 원조서비스, 가정폭력프로그램, 가해자프로그램, 비자발적 서비스, 정신적 장애, 게이트키퍼 프로그램, 이외 방임, 자기방임 프로그램 등임(Kemp, 1998; NCPEA, 2001; 이연호, 2001 재인용).

□ 영국

- 영국에서는 1993년에 시행된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으로 인해 영국의 지역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음.
 - 이 법과 보건부의 실행지침은 사정(assessment), 수발계획(care planning), 개입(intervention), 모니터링과 재검토(monitoring and review) 등의 과정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다음은 2000년에 시행된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으로 이 법의 내용 중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특히 노인학대 및 방임의 대상자로서의 노인과 관련이 있는 조항은 생명에 대한 권리(제2조), 고문, 비열한 처우 또는 징벌을 당하지 않을 권리(제3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5조), 개인 및 가족 생활, 가정, 통신을 존중할 권리 제8조)등임.
- 성인학대 또는 노인학대를 당할 위험성이 높거나 실제로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은 영국 보건부 지침인 『No Secrets』(Department of Health, 2000)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노인학대 및 방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은 사회서비스 부서에의 의뢰, 사회서비스 부서와 경찰의 합동전략 논의, 통합조사, 관련 기관간의 의사결정 및 계획의 수립, 모니터링과 재검토의 과정으로 이루어짐.
 - 이러한 사회서비스 부서 중심의 개입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이 진행되거나 시설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 직원 징계가 이루어짐(김경호, 2007).
- Action on Elder Abuse(AEA)는 영국에서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국가조직임.
 - AEA는 노인학대를 모든 노인이 안전하게 공포, 방임, 태만, 고통, 착취없는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학대를 규정하고 유형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AEA는 무료위기전화상담(Help Line)을 운영하며, 컨퍼런스 등 학술사업과 정기간행물 등 출판사업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연호, 2001).

□ 일본

- 일본 노인학대의 법적·제도적 체계에 근간이 되는 법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임. 민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되어짐.
- 최근 개호보호제도의 검토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대응이 이슈가 되었다. ‘고령자 간호’, ‘자립시스템 보고서- 새로운 고령자 간호시스템 구축(1994)’에서는 간호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와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것이 적당함을 인정하나 가족에 의한 간호 포기, 학대의 경우 행정기관이 긴급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개호보험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노인복지법의 일부 개정 형태로 법문화 되었다(이연호, 2001).
- 일본에는 노인학대를 보고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시설 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음.
 - 1994년 Society for the Study of Elder Abuse(SSEA)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분명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런 조사에 근거하여 SSEA는 일본 노인학대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자발적 전화상담서비스 Help Line을 시작하였음(Yamada, 1999; 이연호, 2001 재인용).
 - 노인학대예방센터(Japan Elder Abuse Prevention Center)는 1995년(평성 8년) ‘노인학대 프로젝트’ 연구과제에서 창안·설립되어 노인학대를 주제로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상담, 연수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위기라인인 전화상담(Support Line)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이연호, 2001).
- 일본의 경우 가정 내 고령자학대의 대처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이 없고, 가정 내 고령자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재택개호지원센터나 복지사무소, 고령자학대방지센터 등 민간단체가 대처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고령자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역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생노동성에서는 가정 내 고령자학대에 대해 복지기관이나 의료기관이 제휴하는 지역네트워크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택개호지원센터를 창구로 해서 민간위원이나 개호서비스종사자, 자치회, 의료기관, 경찰, 변호사 등이 제휴해서 조직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
- 민생위원들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여 재택개호지원센터에 통보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원을 자택에 파견하며, 개호서비스의 이용이나 입원 등을 재촉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지원도 함.
 - 심한 학대자인 경우 경찰에 통보까지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우병창, 2006).

4. 장애인폭력관련 외국의 정책동향

- 외국에서 행해지는 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한 법적 제제는 각 나라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특별법 등을 통해서 벌칙 등을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다.
- 많은 국가들이 일반적인 폭력관련금지법 등을 통해 인종이나 성, 그리고 장애와 연령 등의 카테고리로 폭력에 대한 법적 제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러 차별 관련법과 같은 형태로 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위를 정의하거나 그 범주를 정하여 이 들을 위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을 폭력의 주요 희생대상으로 보아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는 법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금지법(laws for violence against women)과 증오범죄관련법(hate crime laws) 등이 있으며 국가와 각 지자체 혹은 주(state) 별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에 대한 법령들이 있음.
 - 이 법들에서 장애인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판결과정에서 가중처벌이 결정되는 경우

가 있음.

-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국제적인 주요이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 여성폭력금지법(laws for violence against women)

- 여성폭력금지법은 특별법으로 여성폭력을 금지하고 노인여성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을 따로 명시하여 처벌수위나 관련된 서비스를 명시하였음.
 - 한 예로 미국의 '2000 여성폭력금지법'의 Sec. 1209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노인여성과 장애여성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보조금(예: STOP grants, Pro-Arrest grants)도 명시하고 있음.

□ 증오범죄금지법(hate crime laws)

- 인종과 국적, 성, 특정한 질병 등 사회적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증오범죄(hate crimes)를 금지하는 법들에서 폭력의 주된 피해의 한 대상으로 장애인을 분류함.
 - 이 법들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폭력범죄의 판결 과정에서 좀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하거나 더 많은 벌금형을 구형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음.
 - 한 예로 뉴욕시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의 정의(the definition of bias crimes)에 장애인에 대한 공격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 장애인증오범죄법(laws for hate crime against disabled people)

- 장애를 증오범죄의 한 대상으로 보는 일반적인 증오범죄금지법 외에도 장애인 대상의 폭력을 금지하는 법령으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2004년 제정된 장애인 증오범죄금지법령(2004 Hate Crime Against Disabled People in Scotland)이 해당됨.

□ 사회적약자보호법과 법령

-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보호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고 있는데, 미국 조지아주의 2000년 노인과 성인장애인을 위한 보호법(Georgia Protection of Elder Persons and Disabled Adults Act of 2000)과 캘리포니아 형법 368(California Penal Code § 368. Crimes against elder or dependent adults)이 해당됨.
 - 이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형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칙을 강화하였음.

제4장 전국 가정폭력실태의 조사개요 및 응답가구 특성

제1절 조사개요

□ 조사내용

- 가구공통조사의 주요 내용은 가구원 사항, 비동거 가족, 가구사항, 아동양육태도, 아동관계 실태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응답자 조사표와 응답자 배우자 조사의 주요 내용은 특성 및 부부관계,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부부생활실태, 서비스욕구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중·고등학생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특성 및 부모-자녀관계,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부부생활실태, 서비스욕구 등의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미혼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경제·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폭력 관련 법 및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가정폭력실태, 서비스욕구 등 5개 부문으로 분류됨.

- 노인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특성 및 부부관계, 경제·건강상태, 가족 및 친구관계, 부부관계, 폭력 관련 법 및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장애로 인한 가족관계 실태, 부부생활실태, 노인학대 인식 및 실태, 서비스욕구 등 9개 부문으로 분류됨.
 - 노인부부간의 폭력에 대한 조사문항은 노인조사표에 포함하였음.

□ 표본추출 개요

- 전국 가족실태조사의 목표모집단은 2005년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이며, 조사모집단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자료 중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로 정의됨.
- 표본의 규모는 약 10,000가구이며, 조사의 현실성과 가정폭력 발생빈도를 고려할 때 조사구당 약 50가구를 조사하여 총 200개 조사구를 표본조사구로 결정함.
- 표본대체는 조사구 변동이 있을 경우 기존의 표본조사구와 성질이 유사한 해당지역의 인근 조사구로 대체하되, 예비조사구로 보유하고 있는 조사구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함.
- 표본 배분은 지역별 조사구수는 전체 표본가구수 약 10,000가구를 조사구별로 배분하되, 조사구당 50가구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역별, 동부·읍면부별로 배분함.
 - 광역단위 차원의 표본 배분이 되도록 지역을 고려함.
- 추정방법 가중치로 추출가중치, 무응답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함.

제2절 응답가구의 제 특성

□ 응답가구의 유형 및 가구원수

- 조사완료된 10,083가구 중에서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구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독신가구 18.6%, 부부가구 17.3% 등임.

- 한부모가구 7.9%, 3세대 가구 5.9% 등이 있었고, 다문화가정이 0.4% 포함됨.
- 응답가구의 가구원수는 평균 2.79명이었고, 남자가구원 1.33명, 여자가구원 1.46명으로 나타남.

□ 응답가구의 주거상태

-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42.7%), 다음은 단독주택(37.6%), 다세대주택(11.0%) 등이 순이었음.
- 주택의 소유형태는 본인소유가 가장 많았고(56.5%), 다음은 전세(22.6%), 전·월세 및 보증부 월세(13.7%) 등의 순이었음.

□ 응답가구의 경제상태

- 전체 평균소득은 233만 8천 5백원이었고, 전체 평균소비는 175만 6백원이었음.
 -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소득보다 소비가 많아 매월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소득과 소비의 격차는 형제자매가구(97.9만원)가 가장 여유가 있었고, 조손가구(6.1만원), 독신가구(32.1만원), 한부모가구(41.9만원), 부부가구(49.0만원)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적은 것으로 추정됨.

□ 가정폭력실태조사 대상자

- 전체 가구 중 기혼부부조사대상은 76.9%이었고, 영유아를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의 가구당 평균 0.47명(최고 4명), 중·고등학생은 가구당 평균 0.23명(최고 3명)이었음.
 - 15~64세 미혼자는 가구당 평균 0.44명(최고 4명), 65세 이상 노인은 가구당 평균 0.28명(최고 4명)으로 나타났음.
 - 이혼·사별·별거 등의 경우에도 기혼부부 조사대상인지의 여부만 판단함.

제 5장 한국의 가정폭력실태

제 1절 가정폭력의 조작적 정의

□ 부부폭력의 조작적 정의

- 부부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1(1979; 1990)³⁾에 상해개념을 보완한 39가지 유형으로 구성된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에서 17가지 유형을 활용하였음.
- 첫째의 선택기준은 첫째, 2004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조사에서 활용한 척도 중에서 정서적 폭력 2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6가지 행위, 성학대 1가지 행위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둘째,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부부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위, 방임 2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셋째, 2004년 척도에서 누락된 정서적 폭력 1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1가지 행위, 성학대 1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부부폭력은 이혼·별거기간이 5년 이내, 사별기간이 1년 이내인 기혼부부(결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 및 남성)에게 발생된 모든 유형의 폭력행위를 의미함.
- 또한 노인부부폭력의 정의도 동일한 폭력행위를 적용한 것임.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아동학대의 조작적 정의

-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PC, Form A(Parent-Child Conflict

3) 협상,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성됨.

Tactics Scale, 1997) 중에서 20가지 행위를 활용하였음.

- 척도의 선택기준은 첫째, 2004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결과와 2007년 조사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2004년 조사에서 활용한 척도 중에서 정서적 폭력 3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6가지 행위를 그대로 활용하였음.
- 둘째,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의 방임 4가지 행위, 성학대 5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셋째 2004년 척도에서 누락된 신체적 폭력 2가지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였음.
- 따라서 아동학대의 발생여부는 이러한 행위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다만, 영아인 경우 16~20번의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음.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미혼자 학대의 조작적 정의

- 미혼자학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의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1996) 중에서 15가지 행위를 활용하였음.
- 척도의 선택기준은 18~64세 미혼 가족원이 가족 및 친척사이에서 경험가능성이 높은 정서적 폭력 3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7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위, 방임 2가지 행위를 활용하였음.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노인학대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노인학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써 다음의 3가지를 활용하였음.

- 첫째, Straus의 CTS1(Conflict Tactis Scale, 1979; 1990)과 CTS2(Revised Conflict Tactis Scale, 1996) 중에서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는 유형 중 일부를 활용하였음.
- 둘째,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활용한 노인학대 척도 중 일부 유형별 척도를 활용하였음.
- 셋째, 김미혜 외(2006)가 개발한 노인학대 척도 중 각 유형별 척도를 일부 활용하였음. 단, 김미혜 등은 신체적 폭력을 <I>, <II>로 구분하여 신체적 폭력 <I>은 안전위협을, 신체적 폭력 <II>는 직접 상해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 한가지로 구분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노인학대 측정을 위한 척도로 활용된 행위는 정서적 폭력 6가지, 신체적 폭력 7가지, 경제적 폭력 4가지, 방임 7가지로 총 24개 행위로 측정하였음.
-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 장애인 폭력의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폭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6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개발된 장애인 가정폭력 척도를 활용하였음.
- 장애인 가정폭력 척도는 여성장애인 관련 문헌 분석과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실무진들과의 포커스 그룹회의를 통해 최종 측정척도가 확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가정폭력 측정척도를 기반으로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이 개발된 것임.
- 단, 가정폭력 측정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장애인의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조사자료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성학대, 경제적 폭력으로 구성된 총 28개의 행위 중 본 연구에서는 이 중 15개의 행위를 활용하였음.
-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장애인 폭력 측정척도는 유형별로 볼 때, 언어폭력 2가지 행위, 신체적 폭력 2가지 행위, 정신적 폭력 5가지 행위, 성학대 3가지 행위, 경제적 폭력 3가지 행위 등으로 구성되었음.
- 조사대상기간은 지난 1년간 폭력 경험과 1년 이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응답 문항은 총 7개로 전혀 없음(0), 1회(1), 2회(2), 3~5회(3), 6~10회(4), 11~20회(5), 20회 이상(6) 등으로 구성하였음.

제 2절 전국 및 지역별 가정폭력발생률

□ 전국 가정폭력발생률

-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발생률의 정의를 조사대상의 '전체 가정 중 최근 1년간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을 대상으로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유기, 성학대 등의 가정폭력이 한번 이상 발생된 가정의 비율'로 설정하였음.
 - 따라서 아내폭력, 남편폭력, 아동학대, 미혼자 학대, 노인부부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폭력 등이 주요 가정폭력 대상이 됨.
- 2007년 조사시점 기준 최근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50.4%로 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심각성을 보여주었음.
 - 정서적 폭력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체적 폭력 30.7%, 방임 16.0%, 성학대 9.6%, 경제적 폭력 3.5% 등의 순이었음.

□ 지역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률은 도시 50.7%, 농어촌 46.9%로 도시지역이 농·어촌보다 3.8%pt 높았음.

- 도시지역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학대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농·어촌 지역은 경제적 폭력과 방임의 발생률이 높았음.

□ 과거 1년 이전 및 최근 1년간의 가정폭력발생률 비교

- 과거의 가정폭력발생률은 64.8%로 최근 1년간의 가정폭력발생률 50.4%보다 현저히 높았음
- 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은 정서적 폭력은 60.0%에서 46.2%로 감소하였고, 신체적 폭력도 38.2%에서 30.7%로 감소하였으며, 방임은 23.1%에서 16.0%로, 성학대 16.4%에서 9.6%로, 그리고 경제적 폭력도 5.4%에서 3.5%로 감소하였음.

제 3절 가구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률은 3세대가족이 가장 높았고, 1인가족이 가장 낮아 가구원수에 따라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3세대가족의 가정폭력발생률은 7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핵가족 56.4%, 한부모가족 36.5%, 기타 가족 33.8% 순이었으며, 1인 가족은 12.5%로 가장 낮았음.
- 학대유형별로도 3세대가족과 핵가족은 모든 학대유형에서 가정폭력발생률이 높았으며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소득수준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가구소득 300~399만원 가정의 폭력발생률이 62.6%로 가장 높았고, 반대로 99만원 이하인 가정의 폭력발생률은 32.5%로 큰 격차를 보였음.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가구원 규모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가정폭력의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혼자 사는 가구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이 14.7%가 있었던 반면, 2명 사는 가구는 2배가 증가한 29.1%나 되었음.
- 총가구원수가 3명부터는 전국 평균수준의 가정폭력발생률을 웃도는 52.4%이었고, 4~6명이 함께 사는 가구의 폭력발생률은 약 74.6~79.2%에 머물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원수가 7명 이상인 경우는 폭력발생률이 무려 90.6%나 되었음.
- 따라서 가구원이 많을수록 한정된 자원의 분배상 어려움과 가족원 상호관계의 복잡성 등이 발생되어 갈등요인이 증가하고 폭력발생의 개연성이 증대되는데 기인되는 것이라 판단됨.

제 4 절 가구주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주의 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발생률은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가구주의 가정폭력발생률은 52.9%이었고, 여성가구주는 36.4%로 남성가구주가 16.5%pt 높았음.
- 남성가구주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발생률이 여성가구주보다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는 경제적 폭력의 발생률이 남성가구주보다 높았음.
-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경제적 폭력은 생활의 어려움에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됨.

□ 가구주 교육수준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이 낮은 가정보다 가정폭력발생률이 높았고, 폭력유형도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인 가정의 폭력발생률은 54.5%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인 가정의 폭력발생률 47.9%보다 6.6%pt 높았음.

□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유배우인 가구의 가정폭력발생률은 57.4%로 가장 높았고, 이혼·별거·사별가구도 43.8%로 높았으며, 미혼가구의 가정폭력발생률은 9.8%로 낮았음.
- 유배우 가구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폭력발생률이 높았고, 이혼·별거·사별가구는 경제적 폭력의 발생률이 높았음.
- 특히, 이혼·별거·사별가구의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은 생활의 어려움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제5절 기혼부부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성장과정의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남편의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은 68.8%로 없는 경우(60.9%)보다 7.9%p 높았고, 아내의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은 74.4%로 경험하지 않은 경우(60.2%)보다 14.2%p 높았음.
- 따라서 학습이론에서 주장하는 성장시의 학대경험이 가정폭력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남편의 성장시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

은 69.6%로 목격하지 않은 경우(60.2%)보다 9.4%pt 높았고, 아내의 성장시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가정폭력발생률은 76.2%로 목격 경험이 없는 경우(59.2%)보다 17.0%pt 높았음.

- 따라서 성장시 학대경험과 마찬가지로 학습이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음주행태별 특성별 가정폭력발생률

- 최근 1년간의 음주행태별 가정폭력발생률을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46.3%, 아내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 52.2%이었던 반면,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경우 가정폭력발생률은 58.9~67.1%의 범주이었고,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경우 64.3~70.4%의 범주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음.
 - 따라서 음주가 가정폭력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됨.
- 최근 1년간 마시는 평균 음주량에 따른 가정폭력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에는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폭력발생률이 증가하였지만, 아내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음.
- 결과적으로 남편의 음주빈도와 음주량, 아내의 음주빈도가 가정폭력발생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내의 음주빈도가 남편의 음주빈도보다 가정폭력발생률에 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됨.

□ 폭력법 인식정도별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관련 법의 주요 내용 여섯 가지에 대한 부부의 인식여부에 따른 가정폭력발생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가정폭력법에 대한 인식이 폭력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편적 사고와는 다른 것으로 폭력발생 및 폭력의 해결과정에서 폭력법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추론됨.

제6장 부부폭력 실태

제1절 응답부부의 특성

□ 응답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아내와 남편 모두 30~40대가 각각 63.2%, 62.8%를 차지하였고, 혼인상태는 유배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대학 이상보다 많았음.
 - 취업비율은 남편이 89.8%이었고, 아내는 46.9%로 취업중인 경우보다 비취업상태가 53.1%로 높았음.

□ 응답부부의 성장과정의 특성

- 성장시 가족원으로부터 학대경험이 있는 비율은 아내는 6.9%, 남편은 6.0%이었고, 가족원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한 경우는 남편이 12.4%, 아내가 10.8%로 나타났음.

□ 응답부부의 음주행태

- 음주를 하는 비율은 아내가 57.8%, 남편이 85.0%이었고, 음주빈도는 아내는 한 달에 1~2회 마시는 비율이 20.6%, 남편은 일주일에 1~2회 마시는 비율이 30.3%이었음.
-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은 아내는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는 경우가 45.8%이었고, 남편은 소주 1병을 마시는 경우가 43.9%로 많았음.

□ 응답부부의 생활만족도

- 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항목은 ‘여가생활’로 아내는 36.9%, 남편은 37.6%가 (매우)만족하였음.
- 부부생활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항목은 ‘배우자와의 여가생활’로 아내는 40.7%, 남편은 41.2%가 (매우)만족하였음.

□ 응답부부의 사회적 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아내 44.3%, 남편 48.4%), 다음은 가까운 사람의 사망(아내 24.6%, 남편 26.4%), 질병(아내 24.5%, 남편 22.3%), 실직(아내 14.4%, 남편 13.7%) 등의 순이었음.

□ 응답부부의 상호관계

-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 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의 세 항목은 부부가 평등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의 갈등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가끔 또는 자주) 갈등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아내의 45.8%, 남편의 47.1%).
 - 아내는 ‘남편의 생활방식’에 대하여 (가끔 또는 자주) 갈등을 하였음(아내의 45.8%).

제2절 부부의 폭력인식 및 폭력관련 법인식 태도

□ 전반적 폭력인식수준

- 한국 부부는 신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한 폭력인식은 매우 높았으며, 정서적 폭력과 부부간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수준도 상당히 높았음.
-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력인식이 약 50~60%로 나타나 다소 낮아졌음.

□ 개별 폭력행위별 인식수준

-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등을 부부폭력이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아내가 남편보다 높았음.
- 경제적 폭력으로 분류되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등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부부폭력으로 인식하였음.
 - 다른 개별 폭력행위보다 인식도가 낮았으며, 특히 아내의 인식도가 남편보다 높았음.
- 방임으로 분류되는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인식도가 낮았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부부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인식도가 높았음.
- 성학대로 분류되는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부부폭력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아내가 남편보다 인식도가 높았음.
 - 그러나 성학대는 정서적 폭력행위 및 신체적 폭력행위보다 인식도가 낮았음.

□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및 폭력에 대한 태도

- ‘검찰에서 상담을 조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기소유예제도 있음’과 ‘국번없이 1366은 부부폭력 및 가정폭력을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임’은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음.
-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60.5%)가 남편(38.2%)보다 현저히 많았음.
 -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대화로 해결 희망’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족이므

로, '가족내부문제'이므로 등이 비교적 많았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60.4%)가 남편(52.4%)보다 다소 많았음.
-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남의 일이므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화를 입을까봐 또는 보복이 두려워' 등이었음.

제3절 과거(1년 전) 부부폭력 발생실태

□ 과거(1년 전) 부부폭력발생률

- 과거(1년 전) 부부간의 가정폭력발생률은 60.4%이었고, 정서적 폭력은 68.9%, 신체적 폭력은 21.9%, 경제적 폭력은 6.1, 방임 31.9%, 성학대 15.6%로 매우 높은 폭력발생률을 보였음.
- 경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9.0%로 매우 높았고, 중한 신체적 폭력 발생률도 9.6%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에서 폭력이 발생되었음.
- 과거(1년 전) 상호폭력은 25.1%로 매우 높아 남성의 일방적인 아내폭력이 47.8%, 여성의 일방적인 남편폭력은 37.7%로 나타났음.
- 정서적 폭력의 상호폭력은 12.9%, 신체적 폭력은 상호폭력이 1.7%, 경제적 폭력과 성학대의 상호폭력은 각각 0.2%, 0.5%, 방임은 3.9%로 나타나서 대부분이 일방적인 폭력을 배우자에게 가하였음.

제4절 최근(1년 내) 부부폭력 발생실태

□ 부부폭력발생률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부부는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최근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음.
- 아내폭력발생률은 33.1%로 남편폭력발생률 27.1%보다 6.0%pt 높았으며, 상호폭력 발생률 19.9%를 제외한 아내폭력발생률은 13.2%, 남편폭력발생률은 7.2%이었음.

□ 폭력유형별 부부폭력발생률

- 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3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 19.6%, 신체적 폭력 11.6%, 성학대 10.5%, 경제적 폭력 4.1% 등의 순이었음.
- 상호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정서적 폭력 15.9%, 방임 8.5%, 신체적 폭력 4.2%, 성학대 2.6%, 경제적 폭력 1.0% 등으로 방어측면의 폭력대향도 상당히 있었음.
- 상호폭력을 제외한 폭력유형별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아내폭력이 10.5%, 남편폭력은 6.6%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아내폭력이 5.2%, 남편폭력은 2.2% 등이었음.
- 경제적 폭력은 아내폭력이 2.2%, 남편폭력은 0.9%이었고, 방임은 아내 5.8%, 남편 5.3%이었으며, 그리고 성학대는 아내 6.9%, 남편 1.0% 등이었음.

□ 아내폭력 발생실태

- 아동기 폭력경험이 아내폭력발생률과 유형별 폭력발생률의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내폭력발생률은 경험이 없는 경우 32.9%, 둘 다 경험이 있는 경우 59.7%로 현저한 차이가 났음.
- 부부권력구조가 평등한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내폭력이 낮았으며, 아내가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아내폭력이 높았음.
- 평등형 부부의 아내폭력발생률은 28.1%, ‘아내혼자+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형의 부부는 아내폭력발생률이 33.8%, 그리고 ‘남편혼자+남편이 보다 많이’ 결정형의 부부는 아내폭력발생률이 37.6%로 가장 높았음.
-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부부폭력발생률을 살펴보면,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가부장적 가치관이 높은 계층(37.0%)과 낮은 계층(33.8%) 간의 아내폭력발생률의 차이는 3.2%pt로 크지 않았음.

-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은 29.1%, 스트레스가 1~2점인 남편은 37.4%, 3~4점인 남편은 39.9%, 5점 이상인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은 56.5%로 높았음.
-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았고, 중간 이상인 경우는 유사한 수준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생활만족도와 아내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아내폭력발생률은 32.7%이었고, 만족도 낮은 경우는 45.2%이었음.
- 남편의 결혼생활만족도와 아내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아내폭력발생률은 69.6%이었고, 만족도 낮은 경우는 32.2%이었음.
- 갈등이 중간수준인 경우에 아내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고(56.1%), 갈등이 높은 경우에 가장 낮았음(33.1%).
- 음주량에 따라 아내폭력발생률과 유형별 폭력발생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주를 하지 않는 남편의 경우 아내폭력발생률은 25.7%이었고, 많이 마시는 남편의 아내학대발생률은 40.0%로 현저히 높았음.
-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은 부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아내의 교육수준보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내폭력발생률은 부부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37.6%, 남편만 고등학교 이하(아내는 대학 이상)인 경우 37.1%로 높은 수준이었음.
- ‘남편은 실업상태이고, 아내만 취업’한 경우에 남편의 아내폭력발생률이 52.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부부가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아내폭력발생률은 24.9%로 가장 낮았음.

□ 남편폭력 발생실태

- 아동기 폭력경험이 없는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26.2%, 둘 다 경험 있는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44.5%로 현저한 차이가 났음.
- 부부권력구조가 평등한 가정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남편폭력발생률이 낮았으며, 아내가 주로 결정하는 가정보다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가정에서 남편폭력발생이 높았음.
 - 평등형 부부의 남편폭력발생률은 18.5%로 낮은 수준이었고, ‘아내혼자+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형의 부부는 남편폭력발생률은 28.5%로 비교적 높았으며, ‘남편혼자+남편이 보다 많이’ 결정형의 부부는 남편폭력발생률이 31.6%로 가장 높았음.
- 아내의 성평등적 태도와 폭력발생은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양성평등적 태도를 강하게 보이는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발생률이 36.5%로 높았음.
-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폭력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24.7%이었으나, 스트레스가 1~2점인 아내는 27.7%, 3~4점인 아내는 37.1%, 스트레스가 5점 이상인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44.1%로 높았음.
- 아내의 자기통제력의 높낮이에 따라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여서 자기통제가 잘되는 아내가 잘 안되는 아내보다 남편에 대하여 폭력을 많이 가하였음.
- 아내의 생활만족도와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26.4%이었고, 만족도가 낮은 경우는 35.7%이었음.
- 아내의 결혼생활만족도와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가 높은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51.4%이었고, 만족도 낮은 경우는 25.3%이었음.
- 아내의 남편과의 갈등정도에 따른 남편폭력발생률은 반비례하여서 갈등이 높은 경우에 남편폭력발생률이 26.6%로 가장 낮았고, 갈등이 낮은 경우에 남편폭력발생률은 77.8%로 약 3배의 차이가 있었음.
- 음주량에 따라 부부폭력발생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를 하지 않는 아내의 경우 남편폭력발생률은 23.0%이었고, 많이 마시는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33.2%로 매우 높았음.
- 아내의 남편폭력발생률은 부부의 교육수준이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은 실업상태이고, 아내만 취업한 경우에 남편폭력발생률은 45.2%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부부가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남편폭력발생률이 19.0%로 가장 낮았음.

제5절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 남편의 아내폭력과 아내의 남편폭력의 발생원인은 모두 '사소한 말다툼·잘못', '성격차이', '상호 이해부족' 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부부폭력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아내에게 폭력행사를 한 남편의 69.1%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29.1%는 음주를 하였으며, 1.8%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남편에게 폭력행사를 한 아내의 88.0%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9.4%만이 음주를 하였으며, 2.6%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아내폭력 후에 남편들은 '행동 전·후가 동일'이 5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평소보다 더 잘해 줌' 32.2%이었음.
 - 남편폭력 후에 아내들은 '행동 전·후가 동일'한 비율이 남편보다 높은 63.7%이었고, '평소보다 더 잘해 줌'은 다소 낮은 23.2%이었음.

제6절 부부폭력의 대처방식

피해증상 및 의료처치 경험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75.0%는 신체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나타난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이었으며, 굉장히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약 0.4% 수준으로 추정됨.
 -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피해아내의 의료처치 발생률은 13.5%로 대부분 유료 처치이었고, 무료처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64.0%는 정신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나, 36.0%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불안, 우울, 학대한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 죽고 싶다는 생각 등이었음.
 - 신체적 증상보다 많이 나타난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3.0%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이 유료에 의한 의료처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86.6%는 신체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나타난 대표적인 신체적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이었으며, 굉장히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약 0.2% 수준으로 추정함.
 -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피해남편의 의료처치 발생률은 16.4%로 피해아내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유료처치이었고, 무료처치율은 낮은 수준이었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79.9%는 정신적으로 별 증상이 없었으며, 30.1%는 정신적 증상이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 등이었음.
 - 신체적 증상보다 많이 나타난 정신적 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1.7%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피해아내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 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

- 폭력을 당한 아내의 96.8%, 폭력을 당한 남편의 97.8%가 동거여부에서의 가족 생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그 외의 경우는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배우자와 별거중이거나, 심지어는 이혼을 한 경우도 발생하여 미미하나마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음.

□ 대처방식

- 부부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부부 모두가 '함께 폭력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42.4%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미미하였지만, 도움을 요청한 경우의 대상은 경찰인 경우가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26.7%, 친척 20.0%, 이웃이나 친구 13.3% 등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주로 피하는 장소는 '집안의 다른 곳'인 경우가 무려 56.9%나 되었고, 다음은 '집밖을 배회'하는 경우가 19.2%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참는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짐으로'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4%로 나타났으며, 경한 폭력을 당한 아내는 8.4%,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는 10.0%가 경찰에 신고하였음.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창피해서', '귀찮아서', '배우자가 무서워서' 등이었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의 43.5%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다음은 '대응하지 않음'이 10.8%이었고, 이어서 '무조건 피함' 7.3%, '끝날 때 까지 참음' 6.1% 등의 순이었음.
 -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는 미미하나 이웃이나 친구와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주로 피하는 장소는 '집안의 다른 곳'이 53.4%나 되었고, 다음은 '집밖을 배회'하는 경우가 23.3%이었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이 참는 이유로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가 잘못된 것이므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짐으로' 등이 비교적 높았음.

- 아내로부터 폭력을 당한 남편의 경찰신고율은 0.4%로 나타났으며, 경한 폭력을 당한 아내의 1.1%, 중한 폭력을 당한 아내의 1.1%가 경찰에 신고하였음.
-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창피해서', '귀찮아서', '배우자가 무서워서' 등이었음.

제7절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 가정폭력예방정책에 대한 욕구

-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 제공'이 여성의 25.6%, 남성의 24.3%로 가장 많았음.
- 또한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아내의 45.6%가, 남편의 31.8%로 나타났으며, 참여의향이 없다는 비율은 아내의 37.0%, 남편의 44.1%이었음.

□ 가정폭력발생 후 정책에 대한 욕구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후정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제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성의 24.5%, 남성의 25.6%로 나타났음.
- '보호시설 확충',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등의 순이었음.
- 가족으로부터 실제로 가정폭력을 당하였을 경우에 보호시설에의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여성의 57.6%, 남성의 34.7%로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았음.

제7장 아동학대 실태

제1절 아동 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아동의 일반특성

- 조사완료된 18세 미만의 아동 4,439명 중에서 6세 이하가 23.1%이었으며, 7~12세 아동이 39.6%, 13~15세와 16~18세는 각각 19.9%와 17.3%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음.
- 중·고등학생 응답자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94.9%이었고, 한 부모만 생존한 경우는 5.0%, 부모 모두 사망한 비율은 0.1%이었음.
 -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7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어머니가 12.0%, 아버지 4.2%로 한 부모와 함께 사는 응답자는 16.2%에 해당되었음.

□ 응답아동의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경험

- 중·고등학생 응답자가 성장시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률은 2.7%이었으며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더 높았음(중학생: 2.5%, 고등학생: 2.7%).
 -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부모가 87.2%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조부모와 기타 가족은 5.1%, 삼촌·고모는 2.6%로 미미하였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은 중·고등학생 응답자가 5.3%로 학대를 직접 경험한 비율보다 높았으며, 동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2.6%pt 높았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는 부모간이 7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기타 순으로 많았음.

□ 음주행태

-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81.8%가 최근 1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나머지

18.2%는 음주를 하였음.

-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2회 음주를 한 경우가 1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1~2회 음주한 경우, 주 1~4회, 거의 매일 순으로 많았음.
-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음주량은 1회에 평균 소주 반병을 마시는 비율은 10.7%로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비율인 7.5%보다 3.2%pt 높았음.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 생활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가 8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친척과의 관계’가 75.7%,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가 53.5%, ‘여가활동’은 52.7% 순이었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4.4%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중·고등학생은 ‘손해되는 일’, ‘위험한 일’,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자기통제를 하였으나, ‘힘들고 복잡한 일’, ‘움직이는 것’ 등에 대해서는 일부만이 자기통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족, 개인 및 학교에서 경험한 일

- 지난 1년간 ‘학교성적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율은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부 때문에 부모님께 심하게 꾸중을 듣거나 야단을 맞았다’는 경험은 29.0%,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경험은 27.8%이었음.
-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는 경험은 11.4%, ‘이성친구와 헤어졌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은 8.1%, ‘선생님이나 학교친구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은 7.5%이었음,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생각

-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에 대한 (매우) 그렇다는 의견은 83.9%로 높았음.

-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의견은 (매우) 그렇다를 과반수 정도가 응답하였음.
-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6~64% 범위로 양성평등적인 의식이 높았음.

□ 부모-자녀관계

-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면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3.4%로 높았음.
 -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스럽게 여긴다’, ‘부모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어주시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의 장래 희망에 대해 찬성하신다’, ‘부모님은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어 주신다’ 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48.3~65.9%로 과반수 내외가 긍정적이었음.
- 형제·자매관계, 생활태도, 학교문제, 경제적 어려움, 집안일 분담 등 5개 항목에 대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53.7~69.1% 범위로 나타났음.
 - 부모와의 갈등은 학교문제(학업성적, 친구)가 1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형제자매와의 관계, 생활태도(공부, 늦은 귀가, 약물중독 등), 집안경제의 어려움, 집안 일 분담 등의 순으로 높았음.

제2절 아동학대 및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

□ 아동학대 인식수준

-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29~43% 사이로 낮았고, 아이에게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 밖으로 가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68.5%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음.

- 칼이나 흉기로 아이를 위협하는 행위를 인식하는 비율은 92~95% 사이로 높았음.
 - 아이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를 세게 밀치는 행위,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의 신체적 폭력에 대한 인식은 38~71% 사이로 낮았음.
- 방임에서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행위와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55% 내외로 낮았음.
 - 성학대에서는 관련 5개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82~92% 사이로 높았음.

□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중·고등학생의 가정폭력상당소에 대한 인지도는 41.9%로 가장 높았으며, ‘전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 가능하다’와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되어도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37.2%와 32.0% 수준이었음.
 -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391 아동학대 신고번호에 대한 인지도,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5~20% 사이로 인지도가 낮았음.
- 본인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가족내부문제이기 때문 등이었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4.6%로 가정폭력발생시 신고 의향은 이웃 가정인 경우 본인가정보다 1.5%pt 높았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화를 입을까봐/보복이 두려워서, 귀찮아서 순으로 높았음.

제3절 아동학대발생실태

□ 전체 아동학대발생률

-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아동학대발생률은 66.9%로 아동 10명당 6.7명 정도가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아동학대발생률

- 남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9.2%이고, 여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4.4%로 남아가 여아보다 4.8%pt 높았음.
- 취학전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7.4%로 전체 수준보다 0.5%pt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생은 89.9%로 취학전 아동보다 23%pt 높게 나타났음.
 - 중학생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9.9%, 고등학생의 아동학대발생률은 32.7%로 초등학생에 비해서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음.

□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정서적 폭력은 6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신체적 폭력이 49.7%로 높았고, 방임은 2.7%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성학대는 1.1%로 낮았음.
 - 신체적 폭력 중에서 경한 폭력발생률은 48.8%, 중한 폭력발생률은 8.7%로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아가 여아보다 모든 학대유형별로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발생률과 신체적 폭력발생률, 그리고 성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초등학생이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학전 아동,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높았음.

□ 아동의 아동기 폭력경험 및 음주정도별 아동학대 발생률

- 과거에 학대를 받았거나 가족원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학대발생률은 78.3%로 가장 높았음.

- 다음은 학대를 받았거나 또는 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은 54.1%이었고, 두 가지 모두 없는 아동의 경우는 33.4%로 가장 낮았음.
- 아동의 음주량은 아동학대발생률과 관련성이 떨어지나 아동의 음주여부는 아동폭력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술을 많이 마시는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41.4%이었고, 조금마시는 아동은 47.6%,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34.5%이었음.

□ 아동의 양성평등적 태도 및 자기통제력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양성평등적 태도가 높은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43.5%이었고, 중간과 낮은 경우는 각 35.7%로 아동의 양성평등적 태도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아동학대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40.3%로 가장 높았고, 자기통제력이 중간인 아동이 34.4%, 자기통제력이 높은 아동이 33.7%로 가장 낮았음.

□ 아동의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아동의 생활만족도는 아동학대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만족도가 낮은 아동의 아동학대발생률은 56.1%로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도가 중간인 아동이 37.0%, 높은 아동은 31.4%로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아동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는 아동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적 스트레스가 5점 이상인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61.3%로 가장 높았고, 3~4점인 아동은 46.3%, 1~2점인 아동은 39.5%,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아동은 26.2%로 가장 낮았음.

□ 아동의 부모관계 및 갈등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아동의 부모-자녀관계는 아동학대발생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자녀관계가 나쁜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58.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인 경우는 36.7%, 양호한 경우는 25.6%이었음.
- 부모와의 갈등정도는 아동학대발생률에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와의 갈등이 많거나 중간인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49.8%로 부모와의 갈등이 적은 경우보다 16.8%pt 높았음.

□ 자녀양육방식별 아동학대발생률

- 자녀양육방식이 통제적인 가정의 아동학대발생률은 76.1%로 전체 수준인 66.9%를 상회하였으며 권위적인 가정이나 아동에게 제한적으로 자율을 허용하는 가정도 각각 66.4%, 67.9%로 전체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자율적인 가정의 아동학대발생률은 55.9%로 낮은 수준을 보였음.

□ 부모의 아동기 폭력 경험 및 음주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부의 경우 일정하지 않았으나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만 있는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68.8%로 가장 높았음.
-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는 68.4%, 둘 다 있는 경우 66.7%,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6.0%로 가장 낮았음.
- 아버지가 조금마시는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69.3%로 가장 높았고, 많이 마시는 경우 67.8%, 비음주인 경우의 아동학대발생률은 58.8%로 가장 낮았음.
- 어머니는 음주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여 많이 마신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71.2%로 가장 높았고, 조금마시는 경우 68.4%, 비음주인 경우의 아동학대발생률은 61.7%로 가장 낮았음.

□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 및 자기통제력 정도별 아동학대 발생률

- 부모 모두 아내혼자+아내가 보다 많이 결정하는 아내우위형인 경우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부부평등형에서 아동학대발생률이 가장 낮았음.
- 아내우위형과 부부평등형 간의 아동학대발생률은 아버지는 6%pt(아내우위형: 68.3%, 부부평등형: 62.3%), 어머니는 9.6%pt 차이(아내우위형: 71.3%, 부부평등형: 61.7%)를 보였음.
- 부모 모두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높아서 부모의 가부장적 요인은 아동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모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아동학대발생률은 관련이 없었음.

□ 부모의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아동학대발생률

- 생활만족도와 아동학대발생률과의 관계는 부의 경우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모의 경우는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이 70.4%로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도가 중간인 경우 68.0%, 생활만족도가 높은 경우는 66.9% 순이었음.
- 부모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

□ 부모의 교육수준, 취업 및 소득수준별 아동학대발생률

- 아동학대발생률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
- 아버지만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어머니는 대학 이상) 아동학대발생률은 72.3%로 가장 높았고, 아버지만 대학 이상(어머니는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는 67.3%,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는 65.5%로 가장 낮았음.
- 부모의 취업에 따라 아동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취업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았음.

- 아버지만 취업한 경우 아동학대발생률은 70.1%이었고, 부모 모두 취업한 경우는 66.9%로 높았으며, 아버지는 비취업이고 어머니만 취업한 경우는 57.5%이었고,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는 45.5%로 낮았음.
- 아동학대발생률은 소득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경우 저소득층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음.

□ 아동학대경험횟수 및 경험률

- 지난 1년간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아이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에게 욕설 중 심한 말을 하는 행위, 아이에게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하는 행위 순으로 많았음.
-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는 14.5%로 나타나서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심각함을 보여줌.
- 정서적 폭력의 경우 학대빈도가 높았으며, 그 중에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20회 이상이 21.5%나 되었으며, 심각한 학대유형에 속하는 학대행위의 빈도는 5회 이하가 1~5% 사이의 분포를 보였음.

□ 중복학대유형수

- 지난 1년간 학대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30.1%이었고, 학대 받은 아동 중에서 3~5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31.1%로 가장 높았음,
- 2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18.0%, 1가지는 15.0%이었으며, 6가지 이상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5.8%로 나타났음.

□ 지난 1년 이전 아동학대경험률

- 지난 1년 이전에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6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회초리로 아이의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아이

를 쥐어박는 행위, 아이에게 욕설 등 심한 말을 하는 행위, 아이에게 멀리 보내겠다고 혹은 집밖으로 나가라고 위협하는 행위 순으로 많았음.

- 심각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 행위는 15.9%로 나타나서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비율보다 1.4%pt 높았음.

제4절 아동학대발생원인

□ 아동특성별 발생원인

- 남아는 아동비행문제, 장애, 게임중독 등이 주요한 아동학대발생원인이었고, 여아는 가해자와의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학업성적, 생활태도 등 주로 정서적인 요인이 해당되었음.
- 취학전 아동은 고집 등의 성격차이가 아동학대발생원인으로 나타난 반면, 초·중학생은 비행문제, 장애, 게임중독이 많았고, 중·고등학생은 상호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학업성적, 생활태도 때문에 학대 받았음.

□ 폭력주체별 발생원인

-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다른 가족에 비해서 아동과의 성격차이, 이해부족, 사소한 말다툼 등의 정서적인 요인 외에 아동의 학업성적, 생활태도, 게임중독 등 훈육차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을 학대한 부모 중에서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비율은 아버지가 90.2%, 어머니가 99.6%이었음.
- 조부모나 고모·삼촌·이모 등도 대다수가 가해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파악되어 음주와 아동학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5절 가해자 특성

□ 아동학대의 가해자

-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는 아버지가 16.2%, 어머니가 79.7%로 96%가 친부모로 나타나서 아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친부모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음.
- 부모 이외에 나머지 47%는 조부모, 삼촌·고모·이모, 계부모 및 양부모, 친척 등이었음.

□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해자의 연령은 40대 이하가 95.9%이었고, 30대 이하는 65.2%로 과반수이상 이 해당되었으며 50세 이상은 4%에 불과하였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하가 69.2%로 대학 이상보다 2배 높아서 가해자의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혼인상태는 가해자의 89.6%가 유배우이었고, 가해자의 53.1%는 취업 중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공유 시간

- 가해자와 학대 받은 피해아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 하고 6시간 이하가 68.5%로 나타나서 가해자의 과반수이상 이 피해 아동과 6시간 이하를 함께 생활하였으며, 7시간 이상을 함께 생활하는 가해자는 31.5%이었음.

□ 가해자별 신체적 폭력 정도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15%, 어머니가 81.5%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5.4배로 높았음.
- 경한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가 14.5%, 어머니가 82.0%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5.6배로 높았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가 21.0%, 어머니가 74.5%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3.6배 높았음.

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피해증상

-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9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7.4%이었으며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은 1.4%,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같은 심각한 증세는 0.1%로 상당히 미미하였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3.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6.4%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많았으나 5.4%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보여주었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1.3%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8.7%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가족변화

- 학대발생 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99.5%로 가장 많았고 미미하나 가족과 별거하거나 부모님이 이혼한 사례로 나타났음.

□ 대처방식

- 아동의 대처방식은 66.7%인 과반수이상이 학대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22.0%는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동이 피하는 장소로는 집안의 다른 곳인 경우가 8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이웃·친구, 배회, 쉼터 및 상담소, 친척의 집의 순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친척과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각각 40.0%이었고, 기타가 20%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이유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

이 7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해자가 무서워서가 10.7%이었음.

폭력주체별 대처방식

- 가해자가 친부모, 조부모 그리고 고모·삼촌에 이르기까지 친 가족인 경우 피학대 아동은 참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음.
- 양부모·계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경우는 인내하면서 참기보다는 무조건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음.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 아동이 학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경험률은 0.1%로 극히 미미하였으며 나머지 99.9%는 경찰에 신고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타를 제외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1.2%로 많았음.

경찰의 대응방식

-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대응한 형태로는 응답자 3명 중 2명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도 아동학대에 개입하지 않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며 경찰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나머지 1명만이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제7절 서비스욕구

서비스프로그램욕구

-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51.9%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아동학대신고전화인 1391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은 87.6%로 높았으나, 보호시설의

입소의향은 54.2%로 과반수 정도에 머물렀음.

□ 사후서비스 욕구

- 사후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응답한 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호시설확충,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조치, 상담서비스제공 순으로 높았음.
- 이외에 주거시설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서비스 제공, 예방 및 인권교육 등에 대해서도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방정책

- 가정폭력예방정책으로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순이었음.

제8장 미혼자 학대실태

제1절 미혼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미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조사 완료된 18~64세 이하의 미혼 2,670명 중에서 미혼남성이 51.4%, 미혼여성이 48.6%이었음.
- 29세 이하 연령층은 69.8%, 30세 이상의 연령층은 30.2%의 분포를 보였음.
-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가 71.4%이었고, 취업중인 응답자는 61.5%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음.

□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

- 월 평균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81.4%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다수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소비는 99만원 이하가 76.5%이었고, 100~199만원은 19.8%, 200만원 이상을 소비하는 응답자는 3.7%에 불과하였음.
- 미혼 응답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는 응답은 56.7%이었고, 보통이 36.2%,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7.1%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음.

□ 미혼응답자의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경험

- 미혼응답자의 성장시 가족에게 학대 받은 경험률은 4.3%이었으며, 학대를 목격한 경험은 9.8%로 학대를 직접 경험한 비율보다 높았음.
 - 미혼응답자의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부모가 92.9%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계부모, 조부모, 삼촌·고모 그리고 기타 가족 등은 각각 1.8%로 미미하였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는 부모간이 7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 기타 순으로 높았음.

□ 음주행태

- 미혼응답자의 86.6%가 최근 1년간 음주를 하였으며, 나머지 13.4%만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음.
 - 15일에서 1개월 이내에 1~2회 음주한 경우가 36.9%, 주 1~4회가 35.6%로 많았고, 다음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1~2회 음주한 경우, 거의 매일 순으로 많았음.
- 미혼 응답자의 음주량은 1회에 평균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53.8%로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는 비율인 32.5%보다 1.7배 높았음.

□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 생활만족도는 ‘친구와의 관계’가 7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친척과의 관계’가 65.7%,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낀다’가 60.4%, ‘여가활동’은 47.6% 순이었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52.3%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미혼응답자는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 ‘힘들고 복잡한 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일’, ‘위험한 일’, ‘손해되는 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자기통제를 하였으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통제를 하는 응답자가 23.6%로 적었음.

□ 가족 및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

- 지난 1년간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를 경험한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다’는 경험은 22.1%,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했다’는 경험은 21.8%이었음.
- ‘최근 3년간 실직’을 경험한 경우는 14.3%이었고, ‘약물중독’, ‘우울증을 앓음’, ‘알코올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 등의 경험은 미미하였음.

□ 가부장적 태도에 대한 생각

- ‘결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79.7%로 높았음.
- ‘성 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가 61.8%이었고,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한 의견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54.2%로 양성평등적인 의식이 높았음.
- ‘가족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아내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 ‘여자가 개인경력을 쌓는 것도 좋지만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

한 의견에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6~42% 범위로 가부장적인 의식이 높았음.

□ 가족 및 친·인척관계

- 미혼응답자는 부모 모두 생존한 경우가 77.4%이었고, 한 부모만 생존한 경우는 18.8%, 부모 모두 사망한 비율은 3.6%이었음.
 - 부모 모두와 동거하는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 모두 비동거가 35.7%, 한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19.0%이었으며 그중에서 어머니하고만 동거하는 비율은 15.8%이었음.
- 미혼응답자의 형제자매수는 1명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명, 4명 이상, 3명 순으로 많았고 형제자매가 전혀 없는 경우는 미미하였음.
 - 남자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68.3%, 여자형제자매가 있는 비율은 66.8%이었음.
- 미혼응답자는 마음을 터놓고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이 없다는 비율이 20.0%이었으며 나머지 80.0%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 및 친·인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중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가족이 어머니인 경우는 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가 30.0%이었으며, 아버지인 경우는 5.6%로 적었음.
- 미혼응답자와 가족 및 친·인척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63.6%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88.3%이었음.

□ 친구 및 이웃관계

- 미혼응답자 중에서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5%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구가 4명 이상이 있다는 비율이 3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명과 3명이 각각 28.6%로 동일하였고, 1명이 있는 경우는 11.8%로 가장 낮았음.

- 미혼응답자 중에서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2%로 응답자의 소수만이 이웃이 정서적 지지대상으로 나타났음.
 - 이웃이 2명 있다는 비율이 3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명이 31.5%, 4명 이상이 17.8%, 3명이 13.3% 순이었음.
- 미혼응답자와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83.2%이었음.

제2절 미혼자학대 및 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

□ 미혼자학대 인식수준

- 정서적인 학대에 속하는 3가지 행위 중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0.9%가 학대라고 인식하였음.
- 신체적 폭력의 5가지 행위 중에서는 가족원의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해서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95.1%로 가장 높았으나, 가족원의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에 대해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음.
- 경제적 폭력의 3가지 유형 중에서는 가족의 재산을 가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에 대해 62.0%가 학대로 인식하였으며, 가족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53.6%만이 학대로 인식하였음.
- 방임의 2가지 행위 중에서는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은 60.2%이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82.8%의 인식률을 보였음.

□ 미혼의 폭력 관련법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미혼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 '전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소가능하다'에 대한 인지도는 62.4%

로 가장 높았음.

-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 되어도 이혼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한 인지도는 52~61% 사이에 해당되었음.
 -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41.0%로 가장 낮아서, 동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
- 본인 집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3.3%로 과반수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대화로 해결희망을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이기 때문, 가족내부문제이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62.4%로 가정폭력발생시 신고 의향은 이웃 가정이 본인가정보다 0.9%pt 낮았음.
- 파출소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기 때문으로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화로 해결 희망, 화를 입을까봐/보복이 두려워서 순으로 높았음.

제3절 미혼자학대 발생률

전체 미혼자학대 발생률

-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지난 1년 이내 발생한 18~64세 이하의 미혼자학대 발생률은 10.0%로 18~64세 미혼 10명당 1명 정도가 학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미혼자학대 발생률

- 미혼남성의 미혼자학대발생률은 7.8%이고, 미혼여성은 12.3%로 미혼여성이 미

혼남성보다 4.5%pt 높았음.

- 29세 이하의 연령층의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1.8%이었고, 30~39세 연령층은 5.9%, 40~64세 연령층은 5.2%로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미혼의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1.2%로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미혼보다 4.3%pt가 높게 나타났음.
- 취업중인 미혼은 미혼자학대발생률이 7.8%이었고 비취업중인 미혼은 13.5%로 취업한 미혼보다 5.7%pt 높았음.

□ 가구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미혼의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0.3%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보다 4.3%pt가 높았음.
-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가족유형별로는 핵가족으로 구성된 미혼자의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타가족이 11.8%, 3세대가족 9.1%, 형제·자매가족 8.6%, 1인 가족은 5.6% 순이었음.

□ 학대유형 및 폭력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정서적 폭력은 8.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방임이 3.7%, 신체적 폭력 3.4%, 경제적 폭력 1.4% 등의 순으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경한 신체적 폭력발생률은 2.8%, 중한 신체적 폭력발생률은 0.2%로 신체적 폭력의 대부분이 경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음.
- 미혼여성이 미혼남성보다 모든 학대유형별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에서 2배 높은 미혼자학대발생률을 보였음.
- 29세 이하 연령층과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모든 학대유형별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비취업 중인 미혼은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및 경제적 폭력 등에서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으며 정서적 폭력은 취업중인 미혼보다 2배나 높았음.

□ 아동기 폭력경험 및 음주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학대발생률은 아동기폭력경험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아동기에 학대 받은 경험만 있는 경우는 미혼자학대발생률이 3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둘 다 있는 경우 25.3%,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 21.3%, 두 가지 모두 없는 경우는 7.9%로 가장 낮았음.
- 미혼자의 음주정도는 미혼자학대발생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부장적 태도 및 자기통제력 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의 가부장적 태도가 낮을수록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낮은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2.1%로 가장 높았고,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중간인 경우 9.4%, 높은 경우는 7.0% 순이었음.
- 미혼자의 자기통제력 정도에 따라 미혼자학대발생률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1.8%로 가장 높았고, 자기통제력이 중간인 경우 10.3%, 높은 경우 6.9% 순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미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생활만족도 및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별 미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의 생활만족도에 따라 미혼자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음.
 - 생활만족도가 낮은 경우 미혼자학대발생률은 15.3%로 가장 높았고, 생활만족도가 중간인 경우 10.4%, 높은 경우 7.8%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낮을수록 미

혼자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미혼자의 사회적 스트레스 정도는 혼자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스트레스가 3점 이상인 경우는 혼자학대발생률이 18.3%로 가장 높았고, 1~2점은 10/4%,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는 경우는 7.7%로 가장 낮았음.

□ 건강상태 및 사회적지지 자원별 혼자학대발생률

- 미혼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혼자학대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음.
 -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혼자학대발생률은 18.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보통이 11.1%, 좋은 경우가 8.1%로 가장 낮았음.
- 미혼의 사회적지지 자원을 갖고 있는 정도와 혼자학대발생률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지지 자원이 전혀 없는 경우 혼자학대발생률은 1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회적지지 자원이 중간수준인 경우는 10.3%, 사회적지지 자원이 많은 경우는 7.7%로 가장 낮았음
- 미혼의 사회적지지 자원은 혼자학대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회적지지 자원과의 접촉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자학대경험횟수 및 경험률

- 지난 1년간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8.1%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3.6%,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는 3.3% 순이었음.
- 정서적 폭력에서는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6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험한 비율이 높지 않았음.
 - 경제적 폭력에서는 가족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를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이 0.6%이었고, 방임에서는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를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비율이 0.9%이었음.

중복학대유형수

- 지난 1년간 학대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비율은 90.0%이었고 학대 받은 미혼 중에서 1가지 유형의 학대만을 경험한 비율은 4.0%로 가장 높았음.
- 3~5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해서 받은 비율은 2.6%, 2가지 유형은 2.2%, 6가지 이상 유형의 학대를 받은 비율은 1.2% 순이었음.

지난 1년 이전 미혼자학대경험률

- 지난 1년 이전에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1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가족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가족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가족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순으로 많았음.

제4절 미혼자학대 발생원인

미혼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원인

- 미혼자학대의 발생원인은 가해자와의 사소한 말다툼, 잘못이 1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본인의 잘못, 상호이해부족, 성격차이 순으로 높았음.

폭력주체별 미혼자학대발생원인

-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미혼자학대발생원인으로 성격차이, 본인의 잘못, 상호이해부족, 사소한말다툼, 잘못 등으로 나타난 비율이 52.9%이었음.
- 가해자가 어머니인 경우는 동 비율이 76.1%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23.2%pt가 높았음.

□ 가해자특성별 미혼자학대발생원인

- 아동기에 폭력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아버지가 32.2%, 어머니는 11.3%로 미혼 자녀를 학대한 부모 10명중 1~3명은 아동기에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자학대발생에 가해자의 아동기 폭력경험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을 학대한 부모 중에서 음주한 비율은 아버지가 37.0%로 가해당시 3분의 1 이상이 음주상태임을 말해주고 있으나 어머니는 4.6%에 불과하여 음주와 미혼자학대의 관련성은 부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제5절 가해자 특성

□ 미혼학대의 가해자

- 18~64세 이하의 미혼자를 학대한 가해자는 아버지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어머니가 28.6%이었고, 형제·자매는 23.9% 순으로 가해자의 97%가 부모와 형제·자매로 나타났다.

□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가해자의 연령은 40세 이상이 77.9%이었고, 39세 이하는 22.1%이었으며, 특히 50세 이상이 49.6%의 분포를 보였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이하가 68.0%로 대학 이상보다 2배 높아서 가해자의 교육수준이 낮았으며, 혼인상태는 가해자의 68.8%가 유배우 상태였고, 가해자의 63.6%는 취업 중으로 나타났다.

□ 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는 경우는 76.3%이었고, 비동거는 23.7%로 피해자의

다수가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향을 보였음.

- 가해자가 어머니인 경우 동거하는 비율은 91.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버지가 74.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67.2%, 가타 가족이 33.3% 순으로 높았음.

□ 가해자별 신체적 폭력 정도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56.8%, 어머니가 17.6%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3배 높았음.
- 경한 신체적 폭력은 아버지가 54.0%, 어머니 20.6%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2.6배 높았으며, 중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아버지가 60.0%,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각각 20.0%로 아버지가 기타 가해자에 비해 3배 높았음.

제6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피해증상

- 학대 후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이 14.9%, 가벼운 상처,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은 9.0% 순이었으며 또한 팔,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고막이 터지고 이가 부러짐 같은 심각한 증세는 0.4%로 상당히 미미하였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24.2에 해당되었고 나머지 75.8%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별 증상이 없다는 응답이 65.0%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31.1%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학대 후유증을 보여주었음.
- 의료기관에서 의료적 조치를 받은 비율은 8.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91.2%는 의료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 후 가족변화

- 학대발생 후에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91.2%로 가장 많았고 미미하나 가족과 별거하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변화 사례로 나타났다.

□ 대처방식

- 미혼자의 대처방식은 48.0%가 학대에 대응하지 않았으며, 28.0%는 무조건 피하거나 학대행위가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반면, 19.6%는 함께 폭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혼이 피하는 장소로는 집안, 이웃·친구, 종교기관 및 쉼터·상담소 등을 제외한 제3의 장소로 도피하는 경우가 83.3%로 가장 많았고, 종교기관이 5.6%, 쉼터 및 상담소가 5.6%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이웃·친구와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각 33.3%이었고, 친척과 형제·자매는 각 16.7%이었음.
 - 학대에 대처하여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 이유는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과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가 각 33.3%이었고, 다음은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가 23.3%이었음.

□ 폭력주체별 대처방식

- 부모가 학대를 행사할 경우 피학대 미혼자가 참거나 대응하지 않는 비율은 가해자가 아버지인 경우 64.3%, 어머니는 66.2%로 과반수 이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였음.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학대를 행사하는 경우는 대응하지 않거나 참는다는 비율이 42.0%이었고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은 41.9%로 다른 가해자에 비해 약 3~4배 많았음.

□ 경찰신고 경험률 및 미신고 이유

- 미혼이 학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한 경험률은 3.2%로 미미하였으며, 나머지

96.8%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기타를 제외하고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가 41.6%로 많았음.

경찰의 대응방식 및 가해자의 행동변화

-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대응한 형태로는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그냥 듣기만 하고 접수시키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가 37.5%이었음.
 - 신고를 받고도 미혼자학대에 개입하지 않고 집안일이니 해결하라며 경찰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가 25.0%,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한 경우는 12.5%에 불과하였음.
- 경찰의 학대신고를 받고 상황을 처리한 후에 가해자의 행동변화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2.5%는 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응답하였으나, 25.0%는 학대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오히려 학대가 이전보다 늘었다고 응답하였음.

제7절 서비스 욕구

서비스프로그램욕구

- 가정폭력 해결 및 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30.2%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보호시설의 입소의향도 36.8%로 보호시설에 대한 욕구 또한 낮았음.

사후서비스욕구

-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응답한 비율이 25.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19.7%, 보호시설확충은 18.1% 순으로 높았으며, 이외에도 상담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 대해서도 욕구를 보였음.

□ 예방정책

- 가정폭력예방정책으로는 가족관계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응답한 비율이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 가정폭력예방의 홍보·계몽 강화, 사회적 인식개선 순으로 높았음.

제 9 장 노인부부 폭력실태

제 1 절 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노인의 인구사회적 특성

- 전국 가족생활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조사의 응답자 9,846명 중 65세 이상 노인은 2,325명이었으며, 유배우 노인은 1,33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노인의 57.2%이었음.
 - 남성노인은 58.6%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41.4%로 여성노인이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가 51.3%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이 19.2%이었음.
 -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5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고등학교 이상으로 26.9%이었고 무학은 14.1%이었음.
 -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은 40.5%로 비취업 상태는 59.5%이었으며, 가구주와의 관계는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배우자인 경우는 36.7%,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6.2% 등의 순이었음.
 - 가구유형은 노인부부가구 72.9%, 자녀동거가구 23.9%, 기타 3.1% 등으로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결혼기간은 40년 이상 50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3.6%), 50년 이상된 경우도 28.7%나 되었다. 평균 결혼기간은 46.1년이었음.

□ 경제상태

- 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명의는 응답자 본인인 경우가 52.4%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4.8%이었음.
- 남성노인의 경우 본인이 주택소유자인 경우가 75.3%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66.1%).
- 노인의 78.2%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86.4%로 남성노인(72.4%)보다 14.0%포인트 높았으며, 200만원 이상은 전체 7.3%로 남성노인(9.1%)이 여성노인(4.8%)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았음.
- 유배우 노인의 주 소득원은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이 가장 많았고(40.0%), 다음은 자녀로부터의 보조(30.5%),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11.4%), 부동산 임대료·집세(7.9%) 등이었음.
- 성별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과 연금은 남성노인이, 자녀로부터의 보조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통수당 등은 여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음.

□ 건강상태

- 전체 유배우 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은 36.8%이었고, (매우) 나쁨은 34.5%로 좋은 편의 비율이 높았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68.8%이었으며, 약간 어려움 16.0%이었고, 매우 어려움 4.0%, 전혀 할 수 없음 0.2%이었음.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 62.1%이었으나 여성노인에 비해 남성노인의 비율이 높았고, 약간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은 여성노인이 높았으나 전혀 할 수 없음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적 경험

- 성장시 학대경험률은 5.3%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5.9%, 여성노인 4.5%로

남성노인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에 있어서도 전체 노인 중 5.4%가 성장시 학대를 목격하였으며, 남성노인 5.9%, 여성노인 4.7%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률이 더 높았음.

□ 음주행태

- 유배우 노인의 음주행태를 최근 1년간 음주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으로 파악한 결과, 남성노인의 57.3%, 여성노인의 30.9%가 음주를 하고 있었음.
 - 빈도는 남성노인의 경우는 14.8%가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2.4%만이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상태이었음.

□ 자녀 및 손·자녀

- 유배우 노인의 평균 자녀 및 손자녀수를 살펴보면 동거자녀와 손자·손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비동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 아들은 2.02명, 딸 1.93명으로 동거아들 0.21명, 비동거 아들 1.83명이었으며, 동거 딸 0.08명, 비동거 딸 1.86명이었음.
 - 손자와 손녀의 경우에도 대부분 비동거중이었으며, 전체 손자·손녀수는 아들이나 딸에 비해 더 많았음(손자: 3.30명, 손녀: 2.95명).
- 유배우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노인과 가장 접촉빈도가 많은 자녀는 아들로 54.8%이었으며, 그 다음은 딸로 40.0%이었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보면, 주 2~3회 접촉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26.4%),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4.9%나 되었음.
- 유배우 노인이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56.9%이었고, 도움을 받은 경우는 78.2%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음.
 - 도움을 준 경우는 경제적 지원이 48.2%로 가장 많았고,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의 37.9%, (손)자녀 돌보기 31.0%,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22.6% 등의 순이었음.

-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 80.2%로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구 및 이웃관계

- 노인들이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비율이 52.8%이었으며,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음.
- 또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은 41.5%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남성노인: 36.8%, 여성노인: 48.1%).
- 이들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46.2%이었으며, 주 2~3회 17.5%, 월 1회 13.9%, 주 1회 12.3%로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76.0%이었음.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 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기통제력

- 부모·친척과의 관계 중 63.1%와 친구와의 관계 62.6%가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35.5%만이 잘 하는 편이었음.
-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42.2%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음.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39.9%만이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하는가에 대해서는 73.9%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였음.
-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 56.9%이었고, 스틸 있고 신나는 일이라면 위험하더라도 꼭 하는가에 대해서는 10.6%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 움직

- 이는 것을 좋아하는 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5.3%이었음.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1.3%이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쉽게 화를 내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19.2%만이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가족유대감 및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80.0%이었으며, 가족간의 대화가 잘 통한다’에 대해서는 67.0%가 (매우) 그런 편이었음.
- 가족원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 ‘그때 즉시 풀고 지나감’에 대해서는 59.5%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으며, ‘우리 집 식구보다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에 대해서는 73.7%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는 58.4%가 (매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35.1%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51.4%로 2가구 중 1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실직한 경험은 11.5%이었음.
-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한 경우 24.8%,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경험은 38.8%이었으며,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0%이었고, 우울증은 5.1%,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은 경험은 0.2%이었음.
- 이외 지난 1년간 우울증이나 의처증 또는 의부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0.7%,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험도 0.7%,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족원의 질병이나 상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등의 사망, 실직 등의 경험이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음.

□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 응답노인들의 경우 남자와 여자, 사랑과 결혼, 사회생활 등에 관한 의식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러함인 91.0%인데 비해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71.2%만이 (매우) 그러하다는 의견이었음.
-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12.9%만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었고,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하고,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등에 관해서도 (매우) 그렇다가 75% 이상을 차지하였음.
-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 보다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도 83.3%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고,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59.2%가 (매우) 그렇다는 응답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서 (매우) 그렇다는 비율은 낮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관계

- 노인부부간의 일상생활 수행 상 누가 더 주도권을 갖는가에 대해 일상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는 아내 혼자 또는 아내가 보다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에 관해서는 부부가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배우 노인 중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9%이었고, '배우자에게 본인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는 경우도 63.3%이었으나 '배우자와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32.6%에 불과하였음.
- '배우자는 응답자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에 대해서는 75.5%가 (매우) 그

렇다는 응답을 하여 상당수의 부부가 배우자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배우자와의 갈등정도에 있어서는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나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는 90% 이상이 거의 갈등하지 않거나 또는 갈등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었음.
- 배우자의 생활방식에 관해서는 24.7%가 (매우) 자주 갈등 또는 가끔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는 20.8%가,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해서는 35.4%가 (매우) 자주 또는 가끔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외 가사분담에 관해서는 11.3%만이 (매우) 자주 또는 가끔 갈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제 2절 노인부부폭력 인식

□ 폭력관련 법 및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구조, 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대해 유배우 노인의 34.4%가 인식하고 있었음.
- ‘국번없이 1389는 노인학대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다’에 대해서는 8.7%만이 인식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인식률을 보였음.
-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19.2%의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며, ‘전 배우자(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34.4%의 인식률을 보였음.
- ‘학대한 사람이 상담을 받을 경우에 검찰이 처벌을 미루는 제도가 있다(기소유예)’에 대해서는 10.2%만이 인식률을 보였음.

□ 노인부부폭력에 관한 인식

- 유배우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부부폭력에 관한 인식수준을 부부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3가지 행위 중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가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유배우 노인의 63.4%이었음.
-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노인의 81.4%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노인 88.8%로 정서적 유형 중에서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률이 가장 높았음.
- 신체적 폭력에 속하는 5가지 행위 중 폭력으로써 인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로 전체 노인의 99.5%가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목을 조르는 행위 99.4%이었음.
- 이 외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96.9%,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93.7%, 그리고 어깨나 목을 꼭 움켜잡는 행위 92.1% 순이었음.
- 경제적 폭력 유형에 있어서는 정서적 또는 신체적 폭력에 비해 인식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52.8%만이, 재산을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 처분하는 행위 63.4%, 그리고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9.4%가 폭력으로 인식하였음.
- 방임유형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는 51.4%,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는 74.1%가 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다음은 성학대로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7%가, 그리고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4.8%가 폭력으로 인식하였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노인부부폭력에 대한 인식률에 있어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높았으며,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보다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에 대한 인식률이 남녀노인 모두 낮았음.

부부폭력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향

- 유배우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61.9%가 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음.
- 이웃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모두 신고하겠다는 의향은 본인가정에서 발생할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낮았음.
- 본인가정의 경우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이므로'(41.6%), '대화로 해결'(31.0%), '가족내부 문제이므로'(18.3%), '창피해서'(8.2%) 등의 이유이었음.
- 이웃가정의 경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므로'가 62.2%로 가장 높았음.

제 3절 노인부부폭력 발생률

노인특성별 부부폭력 발생률

- 유배우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은 15.3%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11.0%, 방임 6.9%, 성학대 3.8%, 신체적 폭력 1.5%, 경제적 폭력 1.2%이었음.

노인경제상태별 부부폭력 발생률

- 월평균 소득별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을 보면, 소득수준이 100~199만원인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99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이었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는 99만원 이하보다 100~199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인 경

우 정서적 폭력, 방임, 성학대,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순으로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주 소득원별 부부폭력발생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노인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일, 직업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일 경우가 그 다음(15.4%)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 순으로 높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노인의 10.1%가 방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건강상태별 부부폭력 발생률

- 노인 본인이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별 부부폭력 발생률은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고 인지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음.
 -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는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나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건강상태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 일상생활 수행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이 높았음.
 -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부폭력 발생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일상생활 수행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노인부부 폭력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음.

□ 성장시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부부폭력 발생률

- 유배우 노인의 성장시 폭력 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은 폭력경험과 목격경험여부에 따라 일관성 있는 부부폭력 발생률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나 폭력경험만 있는 경우에 100.0%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시 폭력경험이 성장 후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다른 특성별 노인부부폭력 발생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음.

□ 동거·비동거자녀 및 친구·이웃 유무별 부부폭력 발생률

-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 유무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을 보면, 동거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았으며, 비동거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도 모두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았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빈도가 많은 자녀별 부부폭력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16.4%이었으며, 딸인 경우에는 16.0%, 그리고 사위 등의 기타 자녀 6.3%, 그리고 며느리 5.0%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접촉빈도가 가장 많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 정서적 폭력 11.7%, 방임 7.0%, 성학대 3.9% 등의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딸인 경우에도 아들인 경우와 비슷한 양상으로 정서적 폭력 11.5%, 방임 7.1%, 성학대 3.8%, 신체적 폭력 2.2% 등이었음.
 -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며느리일 경우에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이 각각 3.3%이었으며, 신체적 폭력이 1.7%로 나타났음.
- 유배우 노인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 등의 사회 지지적 관계망이 있는지 여부별 부부폭력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친구나 이웃 모두 있는 경우에 부부폭력발생률은 1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는 16.2%이었음.
 - 친구만 있는 경우 15.6%, 이웃만 있는 경우 11.9%로 가장 낮은 부부폭력발생률을 보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친구만 있는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13.3%), 두 번째로 높은 부부폭력 발생률을 보인 유형은 방임으로 친구·이웃이 모두 없는 경우에 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성학

대로 특히 친구·이웃이 모두 있는 경우(5.3%)에 가장 높았음.

- 전체적으로 볼 때, 방임과 경제적 폭력은 친구·이웃 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거나 다른 유형은 친구·이웃 유무에 따른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아통제력 정도별 부부폭력발생률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등에 관한 11개 질문사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부모·친척·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등의 점수가 낮은 그룹의 경우 부부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아 27.4%이었으며, 중간수준인 경우에는 15.2%, 그리고 높은 그룹인 경우에는 6.0%로 가장 낮은 부부폭력 발생률을 보여주었음.
 - 유형별 폭력발생률은 전체유형에서 점수가 낮은 그룹의 폭력발생률이 각각 가장 높아 정서적 폭력 15.1%, 신체적 폭력 3.8%, 경제적 폭력 4.7%, 방임 17.0%, 그리고 성학대 11.3%이었음.
 - 나머지 중간인 그룹과 높은 그룹의 경우 각 유형별 폭력발생률이 점수가 낮은 그룹보다 모두 낮게 나타나 부모·친척·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등이 높을 경우 부부간의 폭력발생률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족유대감 수준 및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별 부부폭력발생률

- 평소 가족에 대한 느낌으로 본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을 보면, 낮은 그룹에서는 30.1%의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간인 경우에는 15.9%,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8.1%만이 발생하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방임, 성학대는 점수가 높은 그룹일수록 폭력 발생률은 낮았으나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은 점수별 일관성 있는 결과

를 보이지 않았음.

- 지난 1년 동안 9가지의 사회적 스트레스 중 경험한 수에 따른 부부폭력 발생률을 보면, 한 가지도 경험한 적 없는 노인의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낮았으며(13.4%), 1~2가지 경험한 노인은 14.7%, 그리고 3가지 이상 경험한 노인은 20.2%로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 경우에 부부폭력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를 제외할 경우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수 별로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등은 발생률도 높았음.

□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 최근 1년간의 노인부부폭력 발생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이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9가지 가부장적인 성역할태도에 따라 낮음, 중간, 높음으로 수준을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가부장적인 수준이 낮은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27.0%), 중간 15.6%, 높음 13.8%의 순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부부폭력 발생률은 높았음.
- 부부폭력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는 가부장제 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음.

□ 부부관계별 부부폭력 발생률

- 부부관계에서 부부권력구조에 따른 부부폭력 발생률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일상생활비 지출, 주택매매 및 이사, 투자 및 재산증식, 자녀양육 및 교육 등 4가지에 대해 아내 혼자 또는 아내가 보다 많이 주도권을 가질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음.
- 유형별 부부폭력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일 경우 부부동등하게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고, 신체적 폭력은 남편 혼자 또는 남편이 보다 많이 주도권을 행사할 경우에, 경제적 폭력은 부부동등할 때, 그리고 방임은 일상생활비 지출과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부부동등할 경우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음. 성학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비 지출만이 부부동등할 경우 가장 낮은 발생률을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남편이 혼자 또는 남편이 보다 많이 주도할 경우 폭력발생률이 낮았음.

- 전체적으로 부부동등한 경우와 아내나 남편이 혼자 결정하거나 어느 한 쪽이 보다 많이 일상생활 사항들을 결정하는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차이를 보였음.
 - 전체적으로 부부가 동등한 경우에는 4.0%의 부부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아내 또는 남편이 혼자 결정하거나 주도권을 갖고 보다 많이 결정할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17.1%)은 현저하게 차이를 보였음.
-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일수록, 배우자에게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는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의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본인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을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낮았음.
 - 폭력유형별로도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경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할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 부부간의 갈등빈도가 많을수록 부부폭력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다. 내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나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와의 관계, 배우자의 생활방식, 자녀교육문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가사분담 등에 관한 부부간의 갈등이 빈번할수록 노인부부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배우자와 갈등이 없는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은 9.0%이었으나 2가지 이하 경험에 있는 경우에는 15.1%, 그리고 3가지 이상 갈등을 경험한 경우에는 32.3%로 경험하는 갈등 수에 따라 부부폭력 발생률도 차이를 보였음.
 - 폭력유형별로도 갈등이 없는 경우 부부폭력 발생률이 모두 낮았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에는 갈등이 없을 경우 1.9%에 불과하던 부부폭력 발생률이 1~2가지일 경우에는 5.1%, 그리고 3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20.6%나 되었음.

□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

- 지난 1년간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를 보면, 정서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배우자로부터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를 경험한 노인이 1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특히 6회 이상의 반복 경험을 한 비율도 2.9%나 되어 노인부부간의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다음으로는 방임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가 6.1%나 되었으며, 6회 이상 반복 경험은 1.8%이었음.
- 성학대 유형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3.5%이었고, 정서적 폭력 유형에 속하는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1.8%, 성학대 유형인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8%, 정서적 유형에 속하는 배우자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0%, 신체적 폭력 유형인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 1.1% 등의 경험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 과거(1년 이전) 노인부부폭력 경험

- 지난 1년 이전 노인부부폭력 경험빈도를 성별로 살펴 본 결과, 정서적 폭력 중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는 42.9%의 노인이 경험하였음.
- 다음은 방임유형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로 전체노인의 20.2%가 경험하였음.
- 성학대인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도 7.1%의 노인이 경험하였으며, 정서적 폭력인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도 6.2%의 노인이 경험하였음.

□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

-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 빈도를 보면, 대체로 정서적 폭력과 방임, 그리고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경우도 정서적 폭력과 방임, 성학대에서 높게 나타났음.
- 정서적인 폭력 유형 중에서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는

11.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경험한 비율도 3.0%나 되었다. 다음은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로 1.7%가 경험하였음.

- 신체적 폭력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는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가장 경험률이 높았음.
- 경제적 폭력 중에서는 노인의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0.5%)이었으며, 방임 유형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5.6%)로 6회 이상의 반복 경험률도 2.2%로 높은 편이었음.
- 성학대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5.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6회 이상의 반복적인 경험률도 1.4%로 신체적 폭력, 방임 다음으로 높은 편이었음.

□ 과거(1년 이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 경험

- 지난 1년 이전 배우자에게 행한 노인부부폭력은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가 43.2%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으며, 다음은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12.5%),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6.7%) 등의 순이었음.
-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10.1%로 가장 높았고,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짊 움켜잡는 행위 등으로 높은 비율이었음.
- 경제적 폭력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방임에 있어서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20.1%)가 가장 높은 경험률을 나타내었으며, 성학대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5.2%의 경험률을 보였음.

□ 지난 1년간 경험한 노인부부폭력 중 가장 심각한 영향 미친 유형

- 지난 1년간 경험한 노인부부폭력 중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 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하는 행위로 59.0%이었음.

며, 이외 방임에 속하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로 15.0%이었음.

- 이외 성학대에서 배우자에게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11.5%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그리고 6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제4절 노인부부폭력 발생원인

□ 학대행위자 특성별 발생원인

- 노인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은 성격차이 32.5%, 사소한 말다툼 및 잘못 20.6%, 그리고 상호 이해부족 11.3%로 나타났음.
 - 남성 학대행위자는 성격차이(39.6%)를, 그리고 여성 학대행위자는 사소한 말다툼 및 잘못(20.6%)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음.
 - 연령별로는 각 연령층에서 모두 성격차이, 사소한 말다툼 및 잘못, 상호 이해부족, 경제적 문제 등이 높은 비율이었음.

□ 성장시 학대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발생원인

- 성장시 학대경험 여부별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성격차이, 배우자의 술버릇이 각각 25.0%로 가장 높았고(25.0%), 경제적 문제는 16.7%로 그 다음 순이었음.
 - 학대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성격차이 29.6%, 사소한 말다툼, 잘못 23.9%, 상호 이해부족 13.4% 등의 순이었음.
- 성장시 학대 목격여부에 따라서도 목격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리고 잘 모르는 경우 모두 성격차이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제5절 노인부부폭력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 특성

- 노인부부폭력의 학대행위자인 배우자의 연령은 65~74세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 그리고 비취업 중인 경우가 많았음.
-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는 65~74세가 63.7%, 75세 이상이 35.3%이었으며, 여성 학대행위자는 64세 이하가 55.9%로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상은 남성 학대행위자가, 중학교 이하는 여성 학대행위자가 많아 전체적으로 여성 학대행위자의 학력이 낮았음. 또한 여성 학대행위자(38.7%) 보다는 남성 학대행위자(42.2%)의 취업률이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 경험

- 노인 부부학대 행위자의 경우 성장시 학대 경험률은 5.3%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5.7%, 여성노인 4.9%로 남성노인이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 또한 전체 노인 중 5.9%가 성장시 학대를 목격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8.0%이었고, 여성노인 3.7%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률이 2배 이상 더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으며,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모간, 형제·자매간의 학대를 목격한 경우가 많았고,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형제·자매간의 학대를, 그리고 여성노인은 부모간의 학대를 목격한 경험이 많았음.

□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 이후 태도변화

- 학대행위자는 학대 행위 이후 평소와 비교하여 태도의 변화 없이 동일한 경우가 71.6%이었으며, 학대 후에 평소보다 더 잘해주는 경우가 18.0%, 평소보다

더 못해주는 경우 7.2%이었으며, 무조건 피하는 경우가 3.1%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

- 학대행위자는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이었던 경우가 13.0%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는 14.9%가 음주상태이었으나 여성 학대행위자는 11.0%가 음주상태이었음.

제 6 절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증상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호소한 비율은 18.1%이었으며,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28.4%),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가장 높은 비율(12.1%)이었음.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때문에 의료처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19.4%로 유료로 처치를 받았으며, 정신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5.9%로 모두 유료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신체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치 경험이 정신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치 경험 보다 높았음.

□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

-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45.2%가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34.2%는 대응하지 않았고, 무조건 피함 10.6%, 끝날 때까지 참음이 9.5%이었음.
 - 함께 폭력행사를 하거나 무조건 피하는 경우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에 비해 비율이 높았으며, 끝날 때까지 참음과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높은 비율이었음.
- (전) 배우자의 학대행위에 대해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주로 피하는 곳으로는

집안의 다른 곳이 가장 많았고(42.9%),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28.6%), 이웃·친구 (23.8%), 기타(4.8%) 등의 순이었음.

- 학대행위에 대해 참는다는 경우 그 이유로 ‘대응하면 폭력이 더 심해지므로’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31.6%, ‘배우자이기 때문에’ 21.1%, 그리고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므로’ 10.5% 등의 순이었음.

□ 경찰신고 경험

- 배우자의 폭력에 대해 함께 폭력을 행사한 사람 중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남녀노인 모두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없었음.
- 배우자의 폭력을 경험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27.3%로 기타를 제외할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은 창피해서 12.5%이었음.

□ 부부폭력 경험 이후 가족생활 변화

- 부부폭력 경험 후 가족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98.5%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었고,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경우는 0.5%, 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 1.0%이었음.

제 7절 서비스 욕구

□ 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및 보호시설 입소의향

-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에 36.0%의 노인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남성노인들의 참여의향 비율이 높았음.
- 보호시설 입소는 43.1%의 노인이 입소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역시 남성노인의 입소의향 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에 대해 보호시설 확충(49.2%)을 지적

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대행위자의 법적 조치, 신체적·정신적 치료, 상담서비스, 사회적 인식개선 등의 순이었음.

-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33.9%), 가정폭력 예방교육(30.4%),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15.1%), 상담서비스 제공(11.5%) 등의 순이었음.
-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 시설 마련(28.9%),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23.5%),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22.0%) 등의 순이었음.

제 10장 노인학대 실태

제 1절 노인 응답자 특성

□ 응답대상 노인의 일반적 특성

- 전국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조사의 응답자 9,846명 중 65세 이상 노인 조사대상은 2,32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3.6%에 해당되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38.7%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61.3%로 여성노인이 더 많았음.
 - 연령별로는 65~69세가 41.5%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이 28.9%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 연령은 71.94세이었음. 교육수준은 중학교 이하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 27.5%,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은 19.2%이었음.
 -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57.2%, 사별 39.6%, 그리고 이혼·별거는 3.1%이었음.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은 32.8%로 나머지 67.2%는 비취업 상태이었고, 가구주와의 관계는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가구주 배우자 21.2%, 가구주 부모 12.5% 등의 순이었음.
 - 가구유형은 노인독신가구 28.1%, 노인부부가구 41.3%, 자녀동거가구 26.9%, 기타 3.7% 등으로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경제상태

- 노인의 주택명의로는 노인 응답자 본인의 명의로 된 경우가 55.0%이었고, 노인의 배우자 명의로는 21.6%, 동거자녀 명의 9.5% 등의 순이었음.
- 월평균 소득은 응답노인의 84.1%가 100만원 미만이었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90.2%로 남성노인보다 15.7%포인트 높았음.
- 주소득원은 자녀로부터의 보조 40.3%, 본인·배우자의 일·직업으로 인한 근로소득 30.0%,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 9.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6.7%, 부동산 임대료·집세 6.2%의 순이었음.

□ 건강상태

- 전체 응답노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은 31.9%이었고, (매우) 나쁨은 39.2%로 나쁜 편이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건강상태는 나쁜 것으로 나타나 65~69세 32.2%, 70~74세 40.6%, 75세 이상 47.8%이었음.
- 일상생활수행에 겪는 어려움 정도는 전체 응답노인의 63.2%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6.1%가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정도는 전체 응답노인의 53.1%가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응답이었고, 9.8%가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었음.

□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목격 경험

- 노인 응답자의 성장시 학대 경험률은 6.9%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6.1%, 여성노인 7.4%로 여성노인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남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에 있어서도 전체 노인 중 7.4%가 성장시 학대를

목격하였으며, 남성노인 6.1%, 여성노인 8.3%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험률이 더 높았음.

- 노인의 성장시 학대를 가한 사람은 친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계부모의 경우에도 9.0%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성장시 학대를 목격한 경우에는 부모간, 부모-자식간, 형제·자매간의 순으로 학대를 목격한 경우가 많았음.

□ 음주행태

- 전체 노인의 음주행태를 최근 1년간 음주빈도와 1회 평균 음주량으로 파악한 결과, 남성노인의 55.8%, 여성노인의 21.7%가 음주를 하고 있었음. 빈도는 남성노인의 경우는 15.1%가 거의 매일 음주를 하고 있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2.0%만이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상태이었음.
- 음주량에 있어서는 1회의 소주 반병 이하를 마시는 경우는 남성노인이 32.3%, 여성노인이 20.5%이었으며,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남성노인은 23.4%인데 비해 여성노인은 1.2%로 여성노인의 음주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녀 및 손자·손녀

- 노인의 자녀 및 손자녀수를 살펴보면, 아들인 경우 2명이 37.2%로 가장 많았고, 딸인 경우는 1명 28.8%, 손자는 4명 이상이 44.4%이었으며, 손녀 역시 4명 이상이 36.9%로 가장 많았음.
- 평균 자녀 및 손자·손녀수는 동거자녀와 손자·손녀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비동거 중이었음.
 - 전체 아들은 1.96명, 딸 1.85명으로 동거아들 0.21명, 비동거 아들 1.77명이었으며, 동거 딸 0.08명, 비동거 딸 1.78명이었음.
 - 손자와 손녀의 경우에도 동거중인 경우는 적고, 대부분 비동거중이었음. 전체 손자·손녀수는 아들이나 딸에 비해 더 많았음(손자: 3.50명, 손녀: 3.08명).
- 노인의 비동거 자녀 중 노인과 가장 접촉빈도가 많은 자녀는 아들로 51.3%이

었으며, 그 다음은 딸로 43.7%이었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가장 많은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보면, 주 1회 접촉하는 경우가 24.2%로 가장 많았고, 주 2~3회 23.7%,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3.5%나 되었음.
- 비동거 자녀 중 접촉이 많은 자녀별 접촉빈도는 아들인 경우에는 주 1회 25.8%, 주 2~3회가 24.4%, (거의) 매일 22.5% 등이었고, 며느리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도 29.0%나 되었음. 딸의 경우에는 주 2~3회와 주 1회가 각각 23.9%로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거의 매일 접촉 23.7% 등의 순이었음.
- 노인이 자녀 및 손자·손녀에게 도움을 준 경우는 52.6%이었고, 도움을 받을 경우는 78.6%로 도움을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도움을 준 경우는 경제적 지원이 59.7%로 가장 많았고,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의 36.0%,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34.8%, (손)자녀 돌보기 32.0% 등의 순이었음.
- 도움을 받은 경우는 경제적 지원 82.4%로 대부분의 노인이 자녀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걱정거리나 문제점 상의 34.3%, 교통편의 제공 29.6%,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26.8% 등의 순이었다.

□ 친구 및 이웃관계

- 노인들이 자신의 문제점이나 걱정거리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비율이 48.5%이었음.
-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은 43.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노인: 37.3%, 여성노인: 48.0%).
- 이들 친구나 이웃과의 접촉빈도를 보면, 거의 매일 접촉하는 경우가 52.2%이었으며, 주 2~3회 17.3%, 주 1회 11.4%로 주 1회 이상 접촉하는 경우는 80.9%이었음.

□ 부모·친척과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기통제력

- 부모·친척과의 유대관계가 (매우) 좋다는 경우는 59.4%이었으며, 친구와의 유대관계도 59.9%가 (매우) 좋은 편이었음.
-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29.7%만이 잘 하는 편이었고, 53.3%가 잘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었고,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36.3%가 (매우) 그렇다고 하였으며,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35.5%만이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지금 당장 즐거운 일이면 나중에 손해를 보는 일이라도 하는가에 대해서는 75.6%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일이 힘들고 복잡하면 그만두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음이 53.9%이었으며, (매우) 그런 편도 32.9%나 되었음.
- 스릴있고 신나는 일이라면 위험하더라도 꼭 하는가에 대해서는 9.7%만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었고, 대부분의 노인(82.7%)들은 위험한 일인 경우에 반드시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음. 앉아 쉬거나 책을 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가에 대해서는 53.2%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개의치 않고 나의 일을 하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81.7%가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쉽게 화를 내는 편인가에 대해서는 17.8%만이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음.

□ 가족유대감 및 사회적 스트레스

-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좋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74.0%이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음은 9.8%이었음. ‘가족간의 대화가 잘 통한다’에 대해서는 63.3%가, 그리고 (전혀) 그렇지 않음이 13.2%이었음. ‘가족원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 그때 즉시 풀고 지나감’에 대해서는 54.2%가 (매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었으며, ‘우리 집 식구보다 친구들이 훨씬 나를 따뜻하게 대해 준다’에 대해서는 67.4%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응답

노인들이 가족원들이 친구보다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다'에 대해서는 53.3%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표현을 자주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31.5%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지난 1년간 '경제적 형편이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비율은 51.6%이었고, 최근 3년간 실직한 경험은 11.3%이었음.
- 지난 1년간 가족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친지가 사망한 경우 23.2%, 본인이나 가족이 심하게 아프거나 다친 경험은 36.3%이었음.
- 약물중독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은 2.6%이었고, 우울증은 6.6%, 의처증 또는 의부증을 앓은 경험은 0.1%이었음. 이외 지난 1년간 우울증이나 의처증 또는 의부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은 1.0%,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경험도 0.4%이었음.
- 전반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족원의 질병이나 상해,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 등의 사망, 실직 등의 경험이 비교적 높은 비율이었음.

□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

- 응답노인들의 경우 남자와 여자, 사랑과 결혼, 사회생활 등에 관한 의식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매우) 그러함이 92.3%인데 비해 남자는 혼인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대해서는 72.5%만이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성관계는 여성이 주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 대해서는 11.3%만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었고, 가족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자가 책임져야하고, 부부 중 남편이 가족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등에 관해서도 (매우) 그렇다가 각각 74.6%와 83.3%이었음. 여자는 대중 앞에서 남편에게 반박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서도 86.0%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 여자는 개인경력을 쌓는 것 보다 결혼과 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에 대해서

도 83.2%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부부갈등이 생기면 아내는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에 대해서는 62.6%가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었음.

제 2절 노인학대 인식

□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관한 인식 및 태도

-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 관련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면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구조, 치료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에 대해 노인의 28.4%가 인식하고 있었으며,
- ‘국번없이 1389는 노인학대를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이다’에 대해서는 6.7%만이 인식하고 있어 상당히 낮은 인식률을 보였음.
-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에 대해서는 16.0%의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며, 이에 관해서도 여성노인이,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인식률이 낮았음.
- ‘전 배우자(혹은 동거 중인 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28.9%의 인식률을 보였고, ‘학대한 사람이 상담을 받을 경우에 검찰이 처벌을 미루는 제도가 있다(기소유예)’에 대해서는 7.5%만이 인식률을 보였음.

□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 전체 노인 중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6가지 행위 중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노인학대라고 인식한 비율은 83.3%이었고,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97.0%가 학대행위로 인식하고 있었음.
-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82.6%,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를 내는 행위 81.1%,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노인의 배변, 실금 등의 실수를 비

난하거나 꾸짖는 행위 82.7%, 그리고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87.8% 등으로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에 대해 노인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신체적 폭력은 모두 7가지 유형이나 명백한 노인학대로 인식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노인학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본결과, 전체 노인의 95.7%가 노인학대로 인식하였음.
- 경제적 폭력의 4가지 유형 중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82.5%, 노인소유의 부동산을 노인 동의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82.3%, 노인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75.7%,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노인의 재산을 취하는 행위 85.8%의 인식률을 보였음.
-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방임에 대한 인식률은 다른 유형에 비해 인식률이 높게 나타나 노인을 길이나 낮은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98.1%로 가장 인식률이 높았고, 노인의 동의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96.8%,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96.5%,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95.6%,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94.7%,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93.9%,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91.5% 등의 순이었음.

□ 부부폭력 또는 노인학대 신고의향

-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노인의 60.9%가 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2가지 모두 신고하겠다는 비율은 31.9%이었음.
- 이웃가정의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발생 시 모두 신고하겠다는 의향은 본인가

- 정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42.3%),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낮았음.
- 본인가정의 경우 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2가지 모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가족이므로(44.8%), '대화로 해결'(27.3%), '가족내부 문제이므로'(18.8%), '창피해서'(8.0%) 등의 이유이었음.
 - 이웃가정의 경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남의 일이므로'가 64.5%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대화로 해결 원함'(15.7%), '화를 입을까봐'(12.2%), 등으로 남의 일이라는 점에서 무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보복 등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보여주었음.

제 3 절 노인학대 발생실태

노인특성별 노인학대 발생률

- 전체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5.2%), 방임(2.3%) 순으로 높았음.
 - 노인의 성별로는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일수록, 그리고 무배우자일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음.

노인가구유형별 노인학대 발생률

- 노인가구유형별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가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음(9.2%).
 - 이는 자녀들에게 의존적인 노인의 경우 부양자의 부양부담으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학대유형별 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자녀동거가구가,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은 기타가구, 그리고 방임은 노인독신가구가 가장 높았음.

□ 노인의 경제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 전체 노인에 있어서는 월평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고, 특히 99만원 이하의 경우 유형별 학대발생률도 타 월평균 소득수준의 노인보다 높았음.
- 주 소득원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 노인의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고(9.1%), 그 외 자녀로부터의 보조를 받는 경우(7.9%), 부동산 임대료, 연금, 저축 등(4.2%), 본인 및 배우자의 일·직업(3.6%) 등의 순이었음.
 - 학대유형별로는 주 소득원별로 각각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노인(7.5%), 자녀로부터의 보조(6.5%) 등이었음. 방임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노인의 경우 학대발생률이 가장 높았음(3.6%).

□ 노인 건강상태별 노인학대 발생률

-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아 건강이 매우 좋은 노인의 경우 학대 발생률이 2.7%이었으나 매우 나쁜 노인은 10.1%이었음.
 - 학대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방임은 건강이 나쁠수록 학대 발생률이 높았음.
-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낮을수록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아 일상생활 수행이 전혀 어렵지 않은 노인의 경우 학대발생률은 4.9%이었으나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16.7%이었음.
-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보통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전혀 어렵지 않은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낮았음. 그러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여부에 따른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음.

□ 성장시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 노인의 성장시 폭력경험과 목격경험여부에 따라 노인학대 발생률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즉, 폭력경험과 목격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노인학대가 발

생하였음.

- 그러나 유형별로는 노인학대 발생률 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여 폭력경험만 있는 경우에 정서적 폭력은 100.0% 발생하였고, 폭력경험 및 목격경험 모두 있는 경우 88.2%, 목격경험만 있는 경우 81.8%, 폭력 및 목격경험 모두 없는 경우 78.5%의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였음.

□ 동거·비동거자녀 및 친구·이웃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보면, 동거자녀와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았음.
 - 노인학대 유형별로도 모두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동거자녀가 있는 경우에 학대발생률이 높았음.
- 비동거 자녀 중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아들인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은 5.1%이었으며, 딸인 경우에는 7.2%, 며느리 8.7%, 사위 등의 기타 자녀 4.6%이었음.
 - 폭력유형별로는 접촉빈도가 가장 많은 자녀가 며느리일 경우 정서적 폭력발생률은 8.6%이었고, 신체적 폭력과 방임의 발생률이 각각 1.1%이었음.
 - 딸인 경우에도 정서적 폭력 6.1%, 방임 2.8%, 경제적 폭력 0.5%, 신체적 폭력 0.2% 등 이었음.
 - 가장 접촉이 많은 자녀가 아들일 경우에는 정서적 폭력 4.0%, 방임 1.7%, 그리고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각각 0.3%이었음.
- 노인 중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모두 있는 경우에 노인학대발생률은 4.7%로 낮은 편이었으며,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는 가장 학대발생률이 높았음(8.4%). 친구만 있는 경우 6.3%, 이웃만 있는 경우 3.2%로 가장 낮은 학대생률을 보였음.
 - 폭력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친구나 이웃 모두 없는 경우에 가장 높았음(7.1%). 방임 발생률도 친구나 이웃이 모두 없는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음(2.7%).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아통제력 정도별 노인학대 발생률

- 부모·친척 및 친구와의 유대관계, 여가활동,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자기통제력 등에 관한 11개 질문사항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부모·친척·친구와의 유대관계,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자아통제력 등의 점수가 낮은 그룹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아 14.2%이었음. 중간수준인 경우에는 5.6%이었으며, 높은 그룹인 경우에는 0.9%로 가장 낮은 노인학대 발생률을 나타내었음.
- 유형별 학대발생률은 점수가 낮은 그룹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여 정서적 폭력 11.7%, 경제적 폭력 0.4%, 방임 5.3%이었음.
 - 점수가 높은 그룹의 경우 정서적 폭력과 방임 발생률만이 나타나 다른 그룹 차이를 보였음.

□ 가족유대감 수준 및 경험한 사회적 스트레스 유무별 노인학대 발생률

- 평소 가족에 대한 느낌으로 본 가족유대감 수준별 노인학대 발생률을 살펴보면, 낮은 그룹에서는 19.0%의 발생률을 보였으나 중간인 경우에는 4.8%, 그리고 높은 경우에는 1.1%만이 발생하였음.
 -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은 낮은 그룹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그룹의 노인학대 발생률이 낮아지고 있음.
- 9가지의 사회적 스트레스 중에서 한 가지도 경험한 적 없는 노인의 경우 노인학대발생률이 가장 낮았으며(1.7%), 1~2가지 경험한 노인은 7.3%, 그리고 3가지 이상 경험한 노인은 8.8%로 가족원 간의 어려운 일을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 노인학대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음.
 - 노인학대 유형별로도 전체적으로 경험한 가족 내 어려움 수와 비례하여 노인학대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음.

□ 자녀 또는 손자·손녀에게 도움 제공여부별 노인학대 발생률

- 노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가사 등을 지원하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14.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 3.7%로 가장 낮았음.
- 노인이 자녀 또는 손·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가사 등을 지원받는 경우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았으며(7.7%), 그 다음으로는 간병·수발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7.4%,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 7.0% 등의 순이었음.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빈도

-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 빈도를 보면, 대체로 정서적 폭력과 방임에 대해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회 이상 반복 경험한 경우도 정서적 폭력과 방임에서 높게 나타났음.
 - 정서적인 폭력 유형 중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를 내는 행위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특히 6회 이상의 반복 경험을 한 비율(0.9%)도 가장 높았음.
 - 다음은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가 2.2%이었고,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1.8%,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0.9%,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0.5% 등이었음.
 - 신체적 폭력에 속하는 유형 중에서는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노인에게 거친 행위, 즉 물건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행위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만이 각각 0.3%와 0.1%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폭력 중에서는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0.2%이었고, 나머지 3개 행위 즉,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와 노인소유의 부동산

산을 노인 동의없이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노인의 재산을 취하는 행위 등은 각각 0.1%의 경험률을 보였음.

- 방임 유형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14%,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1.0%, 노인의 동의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1.0%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6회 이상의 반복 경험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0.4%,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노인에게 필요한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의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0.2%, 그 밖의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와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 각 0.1%씩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

- 지난 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은 정서적 폭력에 속하는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노인의 의견을 무시 또는 화를 내는 행위가 5.1%로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는 남성노인 3.4%, 여성노인 6.2%로 여성노인의 경험률이 더 높았음. 다음은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남성노인 1.6%, 여성노인 4.6%이었고,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는 남성노인 1.2%, 여성노인 2.8%이었음.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는 남성노인 0.6%, 여성노인 1.6%이었고,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는 남성노인 0.2%, 여성노인 1.2%이었음.
- 신체적 폭력에서는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노인에게 거친 행위로 하는 경우 남성노인 보다 여성노인이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다른 신체적 폭력행위 모두 경험률은 미미하나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경험률이 높았음.

- 경제적 폭력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아 남성노인 0.2%, 여성노인 1.1%이었고, 나머지 경제적 폭력행위 모두 남성노인 보다는 여성노인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 방임에 있어서는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와 노인에게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음. 이 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남성노인 보다 여성노인이 높았음.

제 4 절 노인학대 발생원인

□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별 학대이유

-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35.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상호이해 부족으로 22.3%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행위자는 경제적 문제(44.9%), 상호 이해부족(17.4%), 성격차이(8.7%)를, 여성행위자는 상호 이해부족(27.1%), 경제적 문제(25.7%), 사소한 말다툼, 잘못(10.0%)을 주요 이유로 지적인 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이유를 성장시 학대경험 및 학대 목격경험 여부별로 살펴본 결과, 성장시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경제적 문제가 47.6%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잘못이 14.3%로 그 다음이었음.
- 성장시 학대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 31.9%, 사소한 말다툼, 잘못 25.3%이었고, 성장 시 학대경험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 38.5%, 사소한 말다툼, 잘못 23.1% 순으로 높은 비율이었음.
- 성장시 학대 목격경험 여부별 학대이유는 학대 목격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41.8%)와 성격차이(12.9%)를, 학대 목격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 (34.9%), 사소한 말다툼, 잘못(26.5%)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학대 목격경험여부를 모르는 경우에도 경제적 문제 (29.2%), 사소한 말다

틈, 잘못(25.0%) 순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음.

- 학대행위자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스트레스 때문이 40.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피해자의 무능 때문이 20.1%이었음. 그 외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 8.6%, 열등감 때문에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때문(37.1%), 피해자의 무능 때문(22.9%), 열등감 때문(8.6%),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5.7%) 등이었고, 여성 학대행위자는 스트레스 때문(43.5%), 피해자의 무능 때문(17.4%),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11.6%), 자신이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해(5.8%) 등의 순으로 남성 학대행위자에 비해 스트레스 때문에, 원래 성격이 난폭해서, 자신이 강자임을 표현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등이 더 높은 비율이었음.

제5절 노인학대 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 특성

- 학대행위자의 연령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 등이 많았음.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47.9%이었고, 사별, 이혼, 별거 등의 무배우자가 24.3%, 미혼 20.7% 이었으며, 취업률은 59.2%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성별로는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많았으며,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고등학교 이상 비율이 더 높았음. 결혼상태도 남자보다 여자의 유배우율이 높았으며, 미혼율과 취업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았음.

□ 학대행위자의 노인과의 관계

- 노인학대 경험노인들의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 60.0%가 장남 또는 차남이하의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며느리(22.9%) 순이었음.
- 여성노인의 경우에도 아들, 며느리, 딸·사위 등의 순으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들에 의한 비율은 남성노인에 비해 낮은 반면, 며느리, 딸·사위, 기타 가족원에 의한 학대는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학대경험 노인의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가 아들인 경우 29.2%가 (매우) 좋은 편이었으며, 16.9%가 (매우) 나쁜 편이었고, 며느리인 경우에는 18.2%가 좋은 편인데 비해 33.3%가 (매우) 나쁜 편으로 아들보다 평소 관계가 보다 나쁜 편인 경우가 더 많았음.
- 학대행위자가 딸·사위인 경우에는 65.5%가 (매우) 좋은 편이었고 17.2%만이 나쁜 편이었으며 기타 가족원일 경우에는 좋은 편 55.6%, 보통 44.4%로 나쁜 편인 경우는 하나도 없었음.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 및 학대 목격경험 여부

-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은 15.1%이었음.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15.7%, 여성노인은 14.5%로 남성노인의 성장시 학대경험률이 더 높았음.
-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장시 학대목격률은 22.3%로 학대경험률 보다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27.1%, 여성노인은 17.4%로 학대목격률 역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았음.

노인학대 행위자의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

- 학대행위자는 학대행동 시 음주상태이었던 경우가 5.8%이었으며, 94.2%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음.
 - 성별로는 남성 학대행위자는 10.1%가 음주상태이었으나 여성 학대행위자는 1.4%가 음주상태로 남성학대행위자의 경우 학대행동시 음주상태이었던 경우가 더 많았음.

제6절 노인학대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노인학대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정신적 증상

- 노인학대로 인한 피해노인 중 28.6%가 신체적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로 인한 정신적 증상은 신체적 증상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54.3%),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학대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증상 때문에 의료처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10.0%로 유료로 처치를 받았으며, 정신적 증상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은 5.3%로 모두 유료로 처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전체적으로 신체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치 경험이 정신적 증상에 의한 의료처치 경험 보다 많았음.

□ 노인학대에 대한 대처방식

- 노인학대에 대해 59.3%가 대응하지 않았으며, 함께 폭력을 행사하거나 끝날 때까지 참는 경우가 각각 15.0%이었고 이외 무조건 피함 7.9%,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2.1%이었음.
 - 성별로는 남여 노인 모두 대응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남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음(남성노인: 68.6%, 여성노인: 56.2%).
-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주로 피하는 곳으로는 이웃이나 친구에게 가거나(27.3%),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27.3%), 집안의 다른 곳(18.2%) 등이었고, 그 외에는 형제·자매의 집(9.1%), 종교기관(9.1%) 등으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경찰서(66.7%), 따로 사는 자녀(33.3%) 등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대행위에 대해 참는다는 경우의 이유는 '자녀(가족)이므로'가 66.7%로 가장 많았고, '대응하면 폭력이 더 심해지므로' 9.5%, '피해자가 잘못된 것이므로' 9.5%,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9.5%,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4.8% 등의 순이었음.

□ 노인학대 경찰 신고경험 및 법적 조치

- 노인학대에 대해 경찰신고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 보다 경찰신고율이 더 높았음(남성노인: 2.9%, 여성노인: 1.9%).
- 노인학대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이므로'가 46.0%이었으며,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16.8%, '창피해서' 10.9% 순이었음.
-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에 대해 출동하여 상황을 그냥 듣기만 하고 집안일이나 알아서 해결하라고 한 후 돌아갔으며, 경찰에 신고한 수 학대행위자가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음.
- 경찰 상황 처리 후 학대행위자의 행동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 50.0%, 이전보다 학대행위가 줄어들었음 50.0%로 일부 줄어든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음.

제7절 서비스 욕구

□ 예방프로그램 참여의향 및 보호시설 입소의향

- 복지기관이나 상담기관에서 실시하는 노인부부폭력이나 노인학대 예방프로그램에 33.5%의 노인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시설 입소는 42.6%의 노인이 입소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노인보다 남성노인의 참여의향 비율이 높았으며, 보호시설 입소의향도 남성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전체 응답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국가지원에 대해 보호시설 확충(51.4%)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남성노인은 보호시설 확충,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신체적·정신적 치료 순으로, 여성노인은 보호시설 확충, 신체적·정신적 치료,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순으로 지적하였음.

-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33.3%), 가정폭력 예방교육(28.8%),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17.5%), 상담서비스 제공(11.5%) 등의 순이었음.
 - 노인의 성별로도 동일한 순으로 노인부부폭력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적하였으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지원만이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경우 비율이 높았음.
- 노인부부폭력 및 노인학대 피해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거 시설 마련(32.9%),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23.0%),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21.7%) 등의 순이었음.
 - 성별로는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에 비해 심리상담 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과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이 보다 높았고,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과 주거시설 마련 등이 높았음.

제11장 장애인 폭력실태

제1절 응답장애인의 특성

- 응답장애인은 성별로는 남성장애인(61.3%)이, 장애유형은 외부신체기능장애유형(89.0%)이, 장애정도는 경도장애인(42.7%)이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 연령층이 약 73%였음.
 - 67.8%가 유배우상태였고, 71.2%가 가구주였으며, 40.1%가 취업상태였음.

제2절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 19세 이상 장애인의 최근(지난 1년간) 가정폭력발생률은 8.5%였음.

- 성별 가정폭력발생율은 남성장애인 9.1%, 여성장애인 7.5%였고, 연령별 가정폭력발생률은 19~29세 연령대의 가정폭력발생률이 20.0%로 가장 높았음.
- 장애유형별 가정폭력발생률은 정신적 장애유형이 31.3%, 내부기관장애유형 13.3%, 외부신체기능장애유형 7.3%의 순이었음.
- 장애정도별로 가정폭력발생률은 중도장애인이 12.1%, 경도장애인 7.6%, 중등도장애인 7.6%의 순이었음.

□ 폭력유형별 장애인 가정폭력발생률

- 가정폭력 유형별 장애인의 가정폭력발생률은 언어폭력 6.5%, 경제적 폭력 3.3%, 정신적 폭력 1.4%, 성 폭력 1.1%, 신체적 폭력 0.7%의 순으로 높았음.
 - 성별로 모두 언어폭력이 6.1%로 가장 높았던 것 이외에 남성장애인은 경제적 폭력발생률(4.1%)이, 여성장애인은 성 폭력 발생률(1.4%)이 더 높았음.
 - 장애유형별로는 외부신체기능장애의 경우 언어폭력, 경제적 폭력, 정신적·성폭력의 순으로, 내부기관장애와 정신적 장애는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만이 발생했는데, 모두 외부신체기능장애에서의 폭력발생률보다는 더 높았음.
 - 장애정도에서는 중도, 중등도, 경도장애인 모두 언어폭력, 경제적 폭력의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음.

제3절 장애인 가정폭력 발생원인

□ 장애인의 가정폭력 발생원인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54.8%), 장애인이기 때문이다(52.4%), 의사소통이 안되기 때문이다(28.6%), 사회적 차별 때문이다(26.2%),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7.1%) 순이었음.

- 성별로 남성장애인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이다(59.2%)가,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이다(66.6%)가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유형이 모든

발생원인 항목에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장애정도별로는 중도장애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이다(83.3%)의 항목에서 가장 많았음.

제4절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 특성

- 가정폭력가해자는 배우자(56.1%), 형제자매(17.1%), 어머니(9.8%)의 순이었고, 자녀에 의한 가정폭력 발생은 여성장애인에게만 21.4%로 높게 나타남.
- 가정폭력 첫 발생시기는 30대(26.8%), 50대(22.0%), 40대(19.5%)의 순이었고, 첫 발생시기가 10대인 경우는 여성장애인(7.1%)이 남성보다 약 2배 더 많았음.
- 장애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폭력행사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여성장애인 60.0%, 남성장애인은 없었음.

제5절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증상 및 대처방식

- 가정폭력 피해 증상
 - 가정폭력 이후 나타난 신체적 피해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하다는 것(40.0%), 정신적 피해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5.0%)이 가장 많았음.
 - 피해증상에 대한 의료적 처치는 16.7%만이 신체적 증상에 대해 받았음.
 - 가정폭력 발생 이후 가족생활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77.8%로 가장 많았는데, 가족생활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여성장애인이 약 38%, 남성장애인은 10%였음.
- 가정폭력 대처방식으로는 함께 폭력 행사(55.0%),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음과 기타(각 15.0%), 무조건 피함(10.0%)의 순으로,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음과 무조건 피함이라는 소극적 대처방식이 약 25.0%였음.

-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유형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좀더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취하였음.
-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찰신고 경험은 10%였으며, 경찰이 취한 조치는 즉시 출동하여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접수하였다와 기타가 각 50%씩이었음.
- 가정폭력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41.2%), 창피해서, 기타의 순이었음.

제6절 장애인의 가정폭력 서비스 욕구

-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서, 가정폭력 해결·예방 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2.7%가, 가정폭력시 보호시설에 입소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51.8%가 참여 및 입소의향이 있었음.
- 여성장애인, 정신적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프로그램 참여 및 시설입소 의향이 높았음.
-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는 가정폭력 예방홍보·계몽강화(26.8%),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19.5%),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 제공(14.8%) 순으로 많았음.
- 여성장애인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23.7%)가 남성장애인 그리고 전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욕구가 더 높은 정책 중 하나임.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호시설 확충(21.1%), 상담서비스 제공(16.4%),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13.6%)의 순이었고, 그 외 가정폭력법에 장애조항 강화와 장애인전문상담소·쉼터 설치는 합하여 4.7% 수준이었음.

- 장애유형별로는 보호시설 확충 이외에 외부신체기능장애는 상담서비스 제공(16.8%)이, 내부기관장애는 주거시설 마련(20.9%)이, 정신적 장애유형은 가해자의 강력한 법적 조치(20.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제7절 장애인 가정폭력실태의 시사점

- 가정폭력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은 여성장애인, 정신적 장애유형, 중도 장애인으로, 이는 여성장애인 대상의 성 폭력 발생예방정책의 중요성과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유형과 장애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1차적인 대상이 됨을 나타냄.
- 가정폭력 예방정책으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특히 여성·장애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요구됨.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보호시설 확충과 장애인전문통합상담소의 설치확대가 필요하며,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 참여 및 보호시설 입소에 있어 여성장애인과 중도 장애인들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제12장 다문화가정의 폭력실태

제1절 다문화가정 응답부부의 특성

- 일반적 특성

- 다문화가정의 아내와 남편 모두 20~30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아내: 91.5%, 남편: 86.1%), 반면에 40대는 아내는 8.5%, 남편은 13.9%이었고, 50대 이상에 해당되는 부부는 없었음.
-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의 학력수준 보다는 고등학교 이하 학력이 많았으며, 학력수준은 아내와 남편이 동일하였음.
 - 남편의 77.8%가, 아내의 43.5%가 취업을 하였음.
- 조사완료된 다문화가정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11명, 베트남 10명, 필리핀 7명, 일본 6명, 호주 1명, 무응답 3명 등 모두 39건이었음.

응답부부의 음주행태

- 1년간 음주를 하였다는 비율은 다문화가정 아내가 36.6%, 남편은 71.0%에 해당되었으며, 아내와 남편 모두 한달에 1~2회 마시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 1년간 1회 평균 음주량은 아내는 1병 이하가 36.6%, 남편은 2병 이하가 71.0%이었음.

응답부부의 사회적 스트레스

- 다문화가정 부부는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고(아내 16.9%, 남편 40.9%), 다음은 가까운 사람의 질병과 사망, 실직 등이 많았으며, 성문제에 의한 스트레스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아내 4.1%, 남편 8.8%).

제2절 부부의 폭력인식 및 폭력관련 법인식 태도

전반적 폭력인식수준

- 다문화가정 부부의 가정폭력 인식수준은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있어서는 매우 높았으나 경제적 폭력에 대해서는 아내의 인식도가 다소 낮았고(47~68%), 부부간의 성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아내: 51~65%, 남편: 62~69%)도 다소 낮았음.

□ 가정폭력 관련법 인식 및 폭력에 대한 태도

- 다문화가정 부부는 '가정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뿐 아니라 소송, 치료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아내 43.5%, 남편 46.0%), '전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가정폭력으로 고소가능'(아내 45.3%, 남편 43.0%) 항목들에 대한 인지율이 비교적 높았음.
 -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내의 인지율은 상당히 낮았음(9~16%).
- 다문화가정 부부의 본인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가 52.9%, 남편이 27.8%로 아내가 약 2배 높았음.
 -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아내와 남편이 모두 '대화로 해결희망'을 응답하였고(아내 41.8%, 남편 44.3%), 다음은 가족이므로(아내 27.9%, 남편 44.4%), '가족내부 문제'(아내 15.7%, 남편 11.3%)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음.
- 이웃가정에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신고 의향은 아내(61.9%)가 남편(33.5%)보다 현저히 많았음.
 - 이웃가정의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아내는 '남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아내 92.2%, 남편 41.6%), 남편은 '대화로 해결희망'(남편 52.4%, 아내 7.8%)을 응답하였음.

제3절 최근(1년 내) 가정폭력 및 부부폭력 발생실태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발생률

- 2007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문화가정에서 발생된 가정폭력발생률은 43.2%로 본 연구의 한국 전체 가정폭력발생률 50.4%보다는 7.2%pt 낮았음.
 -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의 폭력발생률은 다문화가정이 한국 전체보다 낮았고, 경제적 폭력은 한국 전체보다 2배 이상 높아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됨.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실태

-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47.7%로 한 국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4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내폭력발생률은 38.8%로 남편폭력발생률 17.8%보다 21.0%pt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폭력유형별로도 동일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부부 상호폭력발생률은 8.9%로 나타났다.
- 다문화가정 부부의 신체적 폭력은 아내의 10.4%, 남편의 9.7%이었고, 모두 중한 폭력이 대부분이었음(아내폭력: 10.4%, 남편폭력: 9.7%).
 - 신체적 폭력유형에서 일방적으로 아내가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7.2%이었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중한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6.5%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음.
- 다문화가정 부부의 성학대는 남편으로부터 성학대를 받는 아내가 14.4%이었고, 아내로부터 성학대를 받는 남편은 4.5%이었음.
 - 일방적으로 아내가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1.2%이었고, 반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3%에 불과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별 발생률

- 최근 1년 이내에 다문화 가정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남편의 폭력행위는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가 31.9%로 가장 많았음.
 - 다음은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그리고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 비교적 많았음.
 - 이외에도 ‘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와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가 발생하여서 강력한 대처가 필요함.

제4절 부부폭력의 발생원인과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다문화가정 부부폭력의 발생원인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의 발생원인은 아내와 남편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음.
 - 아내폭력의 발생원인은 '상호 이해부족'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소한 말다툼·잘못'이었으나, 남편폭력의 발생원인은 '남편의 이성문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의 오해', '성격차이', '상호이해부족' 등이었음.

□ 부부폭력 발생시 음주여부 및 직후의 변화

- 아내에게 폭력행사를 한 남편의 가해 당시 음주여부 및 음주상태를 보면, 전체의 82.2%가 음주를 하지 않았고, 17.8%가 취할 정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의 가해아내는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
- 아내폭력후의 가해남편이나 남편폭력후의 가해아내 모두 '평소보다 더 잘해줌'이 각각 52.1%, 51.8%로 많았고, 다음은 '행동 전·후가 동일'이 가해아내의 47.9%, 가해남편의 48.2%에 해당되었음.

제5절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피해증상과 대처방식

□ 피해증상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33.3%이었는데, '두통으로 머리가 멍함'과 '가벼운 상처 또는 멍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나타난 반면,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신체적 증상은 없었음.
 -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피해아내의 의료처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66.7%이었는데, '매사에 불안, 우울'이 50.0%로 높았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

상실' 16.7%이었음.

-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남편의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25.4%이었는데,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등이었음.

□ 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

- 다문화가정은 폭력 후에 모든 피해 아내와 피해남편이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별거중, 이혼, 보호시설 입소 등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대처방식

-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발생시 대처방식으로 피해아내는 함께 폭력행사를 하는 비율이 52.6%로 높았던 반면, 피해남편은 대응하지 않은 비율이 74.6%로 높았음.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 피해아내는 특별한 대상이 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험도 없었음.

제6절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 대응서비스 욕구

□ 가정폭력예방정책에 대한 욕구

- 다문화가정은 부부폭력의 예방정책으로 주로 외국인 출신인 아내들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 강화'와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 보급'을 각각 27.2%, 27.0%가 희망하였음.
- 주로 한국인 출신인 남편들은 '가족관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계몽 강화'를 각각 29.5%, 21.3%가 응답하였음.
-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예방프로그램의 참여의향은 아내가 48.0%, 남편이 36.2%로 아내가 11.8%pt 높았음.

□ 가정폭력발생 후 정책에 대한 욕구

- 다문화가정은 가정폭력발생 후 사후정책으로 아내들은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신체적 및 정신적 치료’,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희망하였음.
- 남편들은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 ‘사회적 인식개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보호시설 확충’ 등을 희망하였음.
- 다문화가정에서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호시설에의 입소를 희망하는 비율은 여성이 54.9%, 남성이 31.9%로 여성이 남성보다 23.0%pt 높았음.

제13장 가정폭력 피해자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 표본추출 방법

- 본 조사의 표본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였고, 가정폭력 관련기관을 전국 단위로 안배하였음.
- 가정폭력 관련 기관을 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구분한 다음 비비례층화표집방법에 의해 상담소 표본 대 보호시설 표본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설계하였음.
- 실제로 수집된 표본의 총수는 612부로서 가정폭력상담소로부터 332부, 가정폭력 보호시설로부터 수집된 280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방법

- 본 조사를 위해 개발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자와 피조사자간에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음.

제2절 가정폭력피해 실태

□ 사회인구학적 특성

- 가정폭력피해자는 여자가 조사대상자의 99.3%에 해당되며, 연령층은 30~40대가 응답자의 75.1%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 75% 정도로 다수에 해당함.
 - 표본 중 이주여성이 22명이 포함되었으며, 원국적은 중국이 72.7%로 연변 조선족이 대부분이었음.
 - 장애가 있다는 응답자는 5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8.7%에 해당되었음
 - 피해자의 절반이상(57.2%)이 비취업상태(전업주부 포함)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월 200만원미만이 62.7%로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저소득층에 속하였음.
 - 피해자들의 혼인상태는 기혼이 96.0%이었고, 미혼으로 4.0%로 나타났으며, 결혼생활기간은 10년~20년 미만이 35.1%, 20년~30년 미만과 5년~10년 미만이 각각 22.8%와 20.7%에 해당됨.
 - 핵가족 형태가 63.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무자녀 부부가구가 16.2%이었음.
 - 기혼여성들의 88.6%가 자녀가 있으며, 자녀중 66.0%가 미성년자녀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성장기 환경

- 피해자들의 성장기 가정환경은 친부모 가정이 78.2%로 많았으며,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하였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음.
- 가족간의 폭력 목격경험에 대해 폭력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 49.7%를 제외한 나머지 절반정도는 가족간 폭력을 목격하면서 성장하였음.
 - 가정폭력을 직접 당한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가 가정폭력을 직접 당하면서 성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음.
 -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는 아버지가 58.9%이었고, 어머니 28.6%, 형제·자매는 22.7% 등이었음.

□ 가정폭력 피해실태

- 지난 1년간 주된 가해자에 의한 네 가지 유형의 폭력은 정서적 폭력이 97.9%, 신체적 폭력 92.7%, 경제적 폭력 76.0%, 성학대 76.8%의 순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들의 가정폭력 경험의 정도는 지난 1년간 최소한 1회 이상의 폭력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최고 97.5%(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언어적 폭력 행사)에서 최저 67.6%(죽이겠다고 흥기를 들이대거나 목을 조름)로 나타났음.
 - 모든 항목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1년간 1회 이상 폭력 경험률이 67.6% 이상이었음.
 - 1주일에 2-3회 이상의 빈도(거의매일+일주일에 2~3회)로 비교적 잦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언어적 폭력(56.6%),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32.0%), 나를 때리려고 위협했다(28.2%), 원치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요했다(24.6%) 등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폭력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았음.

□ 가정폭력 지속기간 및 변화양상

- 가정폭력 지속기간의 평균은 134.57개월로서 약 11년 2개월 정도 지속되었음.
 - 10년~20년 미만이 응답자의 27.7%이었고, 5년에서 10년 미만과 20년 이상이 각각 21.1%와 20.4%이었음.
- 가정폭력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이게 되는 변화양상은 특별한 변화가 없이 지속되고 있다가 17.7%이었고, 폭력의 횟수, 폭력의 정도, 폭력의 종류가 감소한다는 비율은 13.6%로 나타났음.
 - 반면, 폭력의 횟수가 점차 늘어감, 폭력의 정도가 심해져감,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확대되어간다는 비율은 63.3%로 가정폭력은 장기화되면서 빈도, 질적인 면에서 점차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 피해자의 맞대응 실태

- 지난 1년간 피해자의 맞대응폭력발생률은 정서적 폭력은 91.1%, 신체적 폭력 49.1%, 경제적 폭력 36.0%, 성학대 6.6%의 순으로 정서적 폭력을 제외한다면 피해자의 맞대응 폭력률은 비교적 낮은 편이었음.
- 피해자가 지난 1년간 최소한 1회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맞대응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개별 항목에 따라 최고 88.6%(가해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행사함)에서 최저 6.0%(원치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함)에 불과하였음.
 - 피해자의 맞대응은 주로 언어적인 폭력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도도 1년에 1회, 반년에 1~2회에 불과함.
-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맞대응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63.3%로, 맞대응을 한 기간은 평균 72.55개월(약 6년)로, 가해자의 평균적인 가정폭력 지속기간이 134.57개월(약 11년)이었던 것과 비교됨.
- 피해자의 맞대응 이유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가 절반정도에 이르며, 그 외 맞대응하지 않으면 죽일 것 같아서,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다른 가족(자녀)을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의 순이었음.
- 피해자의 맞대응 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의 피해정도는 가해자의 절반이상이 신체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으며, 신체적 피해도 경한수준으로 나타났음.
- 맞대응이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심화시킨다는 응답이 61.8%이었으며, 나머지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약하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38.2%이었음.

□ 가정폭력의 피해의 영향

- 신체적 폭력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증상은 가벼운 상처, 멍이 드는 정도의 타박상이 66.3%로 다수이나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팔이나 다리가 부러짐, 유산 등 수술이 필요 등 극심한 형태의 폭력도 절반에 가까운 수준임.

- 응답자의 68.0%가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나머지 32.0%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정폭력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겁이 나거나 창피해서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10% 정도는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폭력의 피해는 중복응답 결과로 최고 73.2%(집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최저 31.8%(피해자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의 분포를 보였음.
-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만나기 싫거나 기피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응답자의 절반이상이며, 심하게는 혼자서는 아무데도 못가는 등의 행동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13.9%에 해당됨.

□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실태

- 폭력상황에서의 피해자의 대응유형은 무조건 피한다가 29.4%로 가장 많았고, 끝날 때까지 맞으면서 참는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다 등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는 응답자의 66.4%이었음.
- 폭력의 대응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맞대응하여 폭력을 행사한다를 합하여 29.2%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대응을 세부적으로 보면 무조건 피하는 경우 피하는 장소로는 이웃이나 친구에게가 가장 많았고(22.2%) 그 외 피하는 장소들은 다양하였으며, 갈 곳이 없어 배회한다는 응답도 15.3%에 해당됨.
-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서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 이웃이나 친구 등의 순이었음.
 - 맞으면서 참는 이유로는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무서워서도 30.7%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70% 가까운 정도가 대응할 경우의 보복행위와 폭력자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참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잘못했다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비는 경우는 대항하면 폭력이 심해지기 때문

과 다른 가족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가 다수를 차지하였음.

- 가해자에게 맞대응 이유로는 가해자의 폭력을 방어하기 위해서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죽을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등으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이유로 맞대응폭력을 행사하였음.
- 폭력을 당한 후에 상담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7.7%이었고, 상담을 한 대상은 상담소와 친구 또는 지인(50.6%), 가족 및 친척(44.0%) 순으로 나타났음.
 - 상담하였을 때 (다소+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36.5%인데 비해,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경우는 54.8%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음.
 -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서 해야 할지를 몰라서가 31.7%로 나타나서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한 홍보가 요구됨.

□ 가해자 관련 사항

- 가해자의 절대다수가(94.7%) 배우자에 해당되었고, 가해자의 취업상태는 72.0%가 취업하였으나, 나머지 28.0%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었음.
- 가해자가 성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남성우월주의가 매우 강함+남성우월주의가 비교적 강함)가 응답자의 90.8%로 나타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전통적인 성차별적인 가치관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폭력이 맨 처음 발생한 시기는 결혼 후 1년 이내가 40.0%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생활이 어느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경우는 45.8%이었음.
- 가해자가 배우자 이외에 다른 가족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63.1%로 주된 폭력의 피해자는 배우자와 자녀라고 볼 수 있음.
- 향후 가해자인 배우자와 함께 살 의사가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22.8%에 불과하였고 64.1%는 함께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해자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가 58.9%이었고, 자녀들 때문에도 22.5%인 반면, 가해자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와 폭력 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은 각각 3.9%와 8.5%에 불과하였음.
 -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경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로는 가정폭력재발방지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가해자의 음주습관을 교정해야 한다도 23.0%의 희망을 보였음.

- 가해자와 함께 살 의사가 없는 경우 주된 이유로는 더 이상 관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이 28.9%로 가장 많으며, 폭력행위의 개선가능성이 없기 때문도 24.5%가 응답하였음.
- 피해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는 취업지원(35.2%), 경제적 지원(22.4%), 주거지원(15.6%) 등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발생원인

-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성격적 결함(폭발적 성격 등), 가해자의 음주문제가 과반수이상에 해당되었음.
 - 가해자의 의처증 등 오해, 성격차이, 생활방식이나 사고의 차이,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 가해자의 열등감, 경제적 문제, 가해자의 정신적 문제 등도 발생원인으로 지적되었음.
 - 평소에 가해자와 피해자는 매우 갈등이 많다고 다소 갈등이 있는 편을 합친 비율은 85.2%로 높은 반면, 매우 화목하다고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를 합친 비율은 낮은 14.8%에 불과함.
- 가해자들의 음주빈도는 일주일에 1~2일 이상의 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응답자의 74.2%에 이르며,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4일 정도 마시는 상습의 정도가 심한 경우도 응답자의 57.5%이었음.
 - 가해당시 음주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23.0%가 항상 그렇다고 하였고, 대부분이 그렇다는 응답도 47.0%나 되어 취한상태에서의 폭력행위는 70%에 달함.
- 가해자는 성장기에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되어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할 경향이 있음.

□ 가해자에 대한 법적 개입

- 피해자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간 많았음.
 -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혼생계 등의 자녀문제 때문이 가장 많았으며, 또한 창피해서, 경찰이나 법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집안일이니까 등으로 다양하게 지적됨.
 - 신고한 후 그 후로도 폭력을 행사하며 변화가 없었다, 더 폭력적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경우는 39.7%이었고,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정서적 폭력이 늘었다, 폭력을 자제하려고 노력하였다, 폭력이 중단되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43.1%에 달함.
- 가해자의 79.3%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집에서 나가있거나, 치료시설 등에서의 수용, 그리고 사법기관에의 수용 등은 소수에 불과한 수준이었음.
 -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폭력의 재발 문제, 위험상황으로부터의 피해자의 보호문제가 시급함.

□ 가정폭력의 내용별 발생률

- 가해자에 의한 폭력의 발생빈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는 폭력의 지속기간, 피해자의 대응방식,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요인으로 성역할태도, 음주습관,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으로 파악됨.
 - 피해자의 대응방식과 가해자의 음주습관 및 음주상태에서의 폭력은 거의 대부분의 폭력항목에서 폭력의 발생빈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가해자의 사과여부, 성역할태도, 경찰의 신고는 항목에 따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피해자의 맞대응여부, 가해자의 성장기 폭력경험 여부에 따른 폭력의 발생빈도는 대부분의 폭력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음.

□ 장애인 가정폭력

- 장애인 가정폭력은 지난 1년간 최소한 1회 이상의 피해경험에 대해 항목에 따라 많게는 45.2%(아프거나 병을 앓아도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장애를 거론하며 비난하거나 내 탓으로 돌린다, 잠을 못 자게 한다)에서 적게는 10.0%(불임수술을 강요받았거나 당했다)로 나타났다.
- 지난 1년간 11회 이상으로 볼 때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와 아프거나 병을 앓아도 치료해 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는 항목이 각각 18.7%와 12.9%로 비교적 발생률이 높았음.
- 장애인 가정폭력의 주된 가해자는 배우자가 78.1%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아버지(12.5%), 형제자매(12.5%), 친인척(9.4%)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 피해자 서비스 욕구

-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 대상 가정폭력예방교육(90.3%)과 장애인 전용 상담소나 쉼터의 설치하는 것(90.0%)에 특히 높은 응답을 보였음.
-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사회적으로 장애인 폭력예방 홍보와 인식개선, 가족대상 가정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3절 가정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욕구

□ 지원제도에 관한 욕구

-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상담소에 대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76.8%), 보호시설 이용경험이 69.3%로 높았음.
- 법률관련 상담 및 무료변론과 같은 법률서비스 이용경험(60.7%), 여성긴급전화 1366(55.2%),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52.6%)에 대한 이용 경

힘은 과반수에 해당되었음.

- 나머지 항목들(의료적 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알선, 원스톱지원센터)의 이용 경험은 저조한 실정임.

□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 욕구

- 가정폭력피해자는 지원제도에 관한 향후이용의사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법률 관련 서비스(94.8%), 의료적 지원(94.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93.0%), 취업관련 서비스(90.1%)는 욕구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들에 해당됨.
- 나머지 항목들도 거의 9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의 욕구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선적인 지원서비스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빈곤가정 생활비지원, 가족단위 주거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활지원으로서 세 프로그램 모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자립을 위한 대부서비스를 우선적인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응답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음 있다.

□ 주거지원 관련 사항

- 가족단위의 주거지원은 정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음.
- 응답자의 69.7%가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 나올 의향이 있으나 스스로 집을 마련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경우는 14.9%에 불과하였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그룹 홈 등의 주거를 지원한 경우 이용하고 싶다는 응답이 89.4%로 높은 욕구를 보였음.

□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욕구

- 정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는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자녀관련 지원, 법률 서비스, 법적 조치, 가정폭력 관련 기관, 피해자 상담 및 치료, 가해자 처벌, 가해자 치료 및 교육과 관리, 일반인 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자립지원은 취업지원과 주거지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지적되었으며, 경제적 지원은 생활비 지원과 자립과 관련한 자금지원(대출포함)을 희망하였음.
 - 주거지원은 독립적인 항목으로도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자녀지원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심리·정서적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음.
 - 법률관련 서비스는 이혼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및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높은 욕구를 보였음.
 -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일선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음.

□ 상담기관 관련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상담소를 이용한 비율은 응답자의 86.1%에 이룸.
 - 상담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에 대한 이용률은 1366은 41.5%, 보호시설 30.5%, 원스톱 지원센터는 11.9%로 낮은 수준이었음.
- 상담소 이용자의 경우 (대체로+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93.4%이었고 보호시설은 85.9%, 1366 긴급전화는 65.4%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상담소 이용자 만족도

- 가정폭력 상담소의 이용자 만족도는 상담원의 태도(친절성, 이해심, 인격 존중 등)가 94.3%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인 서비스(92.8%), 상담원의 문제해결력(91.4%)은 90%를 초과하였음.
 - 전화상담 연결과정(88.6%), 면접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85.3%), 서비스의 연

계(82.2%)는 만족도가 80%대이었음.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인터넷상담 답변기간(73.6%), 교통편(69.8%)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11개에 대한 이용률을 보면, 개별상담(서비스) 85.5%와 법률관련 서비스(상담, 지원, 연계) 68.9%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이용경험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상담소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상담 등 개별서비스와 법률상담과 지원이 각각 94.6%로 가장 높고, 가정폭력대처교육(91.4%), 가족 및 부부상담(90.0%)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프로그램들은 피해자 자조모임, 취업지원, 자녀지원 등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심이 요구됨.

□ 보호시설 관련환경 만족도

- 보호시설 관련 환경의 만족도는 상담원들의 상담태도(84.3%), 전체적인 서비스(84.0%), 직원이 시설이용자의 문제에 대한 해결력(80.5%)에 대한 항목은 80% 이상을 보여 만족도가 높았음.
 - 나머지 항목들은 70%대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보호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의 이용률은 최고 84.4%(개별상담)에서 최저 21.4%(자녀학업지원)로 나타나서 개별상담을 제외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의 제공률은 낮다고 할 수 있음.
 - 집단상담(76.5%)이 다음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으며, 미술 음악 등 문화관련 프로그램과 법률상담지원, 의료지원은 60% 내외의 수준으로 비교적 이용률이 높았음.

- 보호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별 프로그램들인 법률상담(88.9%), 의료지원(88.0%), 개별서비스(87.4%), 집단상담(85.5%), 자녀양육지원(85.5%), 사회복지서비스제공 및 연계(83.1%), 가정폭력대처에 관한 교육(82.3%), 가족 상담(82.1%), 자조모임(80.0%)은 긍정적인 응답이 80%대로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음.
-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문화프로그램과 자녀학업지원, 취업지원, 그리고 퇴소 후 지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개별 시설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기 때문임.

제14장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

조사대상 및 완료 시설

- 조사방법
- 조사내용

제2절 가정폭력상담소 실태

일반특성

- 설립년도 및 운영주체
- 건물소유형태
- 노유자시설 지정 여부 및 소방기준
- 예산현황 및 채무상태
- 서비스 대상
- 일시보호 및 공간

□ 운영 및 관리

- 운영항목별 어려운 정도
- 협의체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교육실시

□ 지원제도

-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
- 장애인 및 아동서비스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프로그램 평가

□ 종사자 실태

- 직원현황 및 근무년수
- 종사자의 임금, 근무시간 및 휴가
- 종사자 자격
-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종사자의 어려움 및 개선사항

제3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실태

□ 일반사항

- 지역별 분포 및 설립유형
- 시설현황
- 운영주체의 동시운영 시설 및 시설대표 동일인 여부

- 운영주체와 시설간 회계장부 분리여부
- 수익사업

□ 운영 및 관리

- 법인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 피해자 치료비 지원
- 채무유무 및 재정지원 방법
-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 인력 충분성
- 거주지 및 퇴소자 의견수렴
- 시설 홍보방법 및 효과성
- 협의체 구성 및 기관간 연계
- 시설운영상 어려움 및 발전상 필요사항

□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 단위프로그램 평가 실시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거주자 사항

- 정원 및 연 거주자
- 입소율 및 수용률
- 입소기간
- 보호사례

□ 종사자 관련 사항

- 종사자 현황
- 종사자 급여수준
- 근무시간
- 외부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실시
- 휴가규정
-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4절 여성긴급전화 1366 실태

□ 일반사항

- 지역별 분포 및 설립년도
- 시설현황

□ 운영 및 관리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직원채용 방법 및 교육·훈련 실시
- 휴가실시 및 근로시간
- 재정지원
- 인력 충분성
- 이용자 의견수렴
- 홍보방법
- 연계기관 및 협의체 구성
-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및 우선 개선사항

□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실시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 단위프로그램 평가 실시
- 사후관리

긴급피난처 관련 사항

- 긴급피난처 현황
- 긴급피난처 이용자
- 입소기간

종사자 사항

- 종사자 현황
- 근무경력 및 월 급여수준

제5절 통합상담소 실태

일반특성

- 설립년도 및 운영주체
- 건물소유형태
- 노유자시설 지정 여부 및 소방기준
- 예산현황 및 채무상태
- 서비스 대상
- 일시보호, 공간 및 설비

운영 및 관리

- 운영항목별 어려운 정도
- 협의체 및 타 기관과의 연계

— 교육실시

지원제도

- 서비스 및 프로그램
-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담당인력
- 장애인 및 아동서비스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프로그램 평가

종사자 실태

- 직원현황 및 근무년수
- 임금, 근무시간 및 휴가
- 종사자 자격
-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6절 모자일시보호시설 실태

일반특성

- 시설위치
- 설립년도 및 운영주체
- 법인특성
- 건물소유형태 및 공간
- 예산현황 및 채무상태

운영 및 관리

- 운영조직 및 인력

- 피해자 치료비
- 지도·점검 및 거주자 의견반영
- 협의체 및 연계
- 홍보
- 시설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점

□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 서비스
- 프로그램 실시 현황
- 외부 전문가 활용 현황
- 단위 프로그램 평가 실시
-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거주자 사항

- 정원 및 연 거주자
- 입소율 및 수용률
- 보호사례
- 입소기간

□ 종사자의 일반사항 및 교육

- 종사자 현황
- 종사자 급여수준
- 근무시간
- 외부 보수교육 및 교육·훈련 실시
- 휴가규정
- 종사자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15장 정책적 제언

제1절 가정폭력예방 강화방안

사회문화적 규범개선

- 가정폭력은 ‘가정내 개인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는 선행적으로 폭력허용적 가치와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의식 등이 전환되어야 함.

가정폭력정책 홍보 강화

-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몽을 강화함.
 - 홍보물(안내책자), 대중매체, 전광판, 캠페인 등을 활용하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가정폭력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함.

사회적 유대망 형성

- 친·인척 및 친구·이웃, 지역사회 관계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유대망을 형성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함.

가정폭력 후유증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강화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통찰하는 인식전환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 발생신고를 제고함.

일반국민 대상의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방안 교육 강화

-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폭력발생시 대처방안의 교육은 아동·청소년, 여성, 남성, 노인 등에 따라 차별화되어 실시되어야 함.
- 가해자(행위자)의 특성과 폭력상황에 따라, 폭력의 유형과 개별 폭력행위에 따라 차별화된 대처하는 방식이 제공되어야 함.

□ 가정폭력 예방프로그램의 강화

-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볼 때에는 가정폭력대처교육, 가족 또는 부부단위의 상담이나 교육 등도 가정폭력 예방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프로그램임.
- 가해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태도를 교정하는 것과 의사소통 기술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제2절 가정폭력관련 제도개선 방안

□ 가정폭력에 대한 통합적 시각 접근

- 가정 내에서 다양한 학대가 중복 발생하는 경향이 발견되므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문제로 바라보는 전체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정책적인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임.

□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강화

- 가정폭력의 조기개입강화측면에서 경찰의 폭력대응서비스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초기대응능력을 제고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을 제고하여 초기 대응에 임하는 경찰관의 태도를 개선함.
- 경찰관의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단위별로 경찰서조직 내에 가

정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폭력전담반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함.

□ 가정폭력피해자의 법적·제도적 보호강화

- 현행 법적·제도적 부분들은 평등한 가족관계 및 양성평등적 가족제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분리 및 주거 사항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필요함.
 -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법적인 별거제도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관계자의 피해자 측면에서 접근 강화

- 신고를 받은 경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이 피해자의 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상담소의 예산지원방식 개선

- 현행의 획일적인 운영비 지원방식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별로 프로그램별 차등 예산지원방식으로 개선함.
- 선행적으로 프로그램의 기획단계부터 집행단계 종결단계,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평가도구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정책의 효과성 제고

- 가정폭력관련 전반적인 법·제도 운영시스템과 가정폭력발생률의 지속적인 파악을 통하여 효과성을 측정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함으로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함.

제3절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방안

□ 적정수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 지역별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지역 균형적으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임.
 - 지역별로 적정한 개소수를 추정하여 여성폭력시설의 지역 균형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함.
 - 지역별 공급계획 및 여성시설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설의 기능을 진단하여 통·폐합 및 기능전환 등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최근 폭력피해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므로 폭력피해자의 접근성 제고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측면에서 통합상담소 형태를 확대함.

□ 가정폭력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

-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시설의 증설이 요구되며, 지원 내용도 가정폭력 대상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임.

□ 통합적 서비스 연계체계 강화

- 지역협의체의 확대와 기능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폭력시설간의 연대성과 연계기능을 강화시킴.
 - 가정폭력신고에 대처하는 법적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가정폭력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체계를 구축함.

□ 피해자 특성별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

- 가정폭력피해자는 국적에 따라, 장애여부, 자녀동반 여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 서비스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함.
 - 피해자 특성 및 자녀연령, 성에 따라 다양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의 확충과 전문상담원 제도를 마련하고, 거주 기간별로 시설을 유형화함.

□ 가정폭력 지원시설의 운영시간 개편

-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긴급전화 1366, 원스톱 지원센터와 같은 현행 기관 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별 수요자에게 신속한 연계장치 체계로의 보완과 병행하여 서비스 제공시간도 토요일, 공휴일, 야간 시간 등의 제공도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자원의 적극적 활용

- 지역사회 환경과 가정폭력관련 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정보 제공 및 연계, 가정폭력피해자 자조모임, 문화관련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야 함.
 - 가정폭력 관련 기관들은 물론이고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과 같은 유관 서비스 기관들과의 통합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1366의 기능제고로 긴급구조체계 강화

- 여성1366의 역할을 제고하여 긴급구조체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여성1366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Hot line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함.
 - 여성전화1366은 경찰, 검찰, 상담소, 의료기관,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여성1366에 대한 기능 및 역할 등이 홍보되어야 할 것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기능강화

- 피해자보호시설이 이용자의 보호 업무에 한정하는 것을 극복하고 가정폭력 문제 해결 및 피해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강화하며, 이용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종사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

-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훈련은 종사자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
 - 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과목 및 교육시간 등을 표준화하며, 자격검정시험제도를 도입함.
 - 상담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원의 경력, 전공, 시설특성에 따라 다양한 보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함.

제4절 피해자 보호 강화방안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지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접근성을 증대하되, 가정폭력관련 서비스 기관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 인구 및 참여기회의 확대를 비롯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지도를 제고함.
 - 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지리적 편리성, 서비스 이용시간에 있어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 확대,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적 편안함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피해자의 정신적 치료 강화

-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전문기관 또는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자활 지원 강화

- 피해자 자립을 위한 경제적 서비스 또는 가해자와의 폭력을 피하거나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기초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함.
 -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혹은 장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부처간 협조를 통해 현재 일부 피해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제공을 확대함.

□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의 적절한 대처방안 강화

- 가해자의 폭력에 대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행동이 필요하며, 가정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력행동을 재제 또는 치료하는 접근 방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지만, 재발 방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처방법에 대한 지도 및 교육도 필요함.

□ 부부폭력피해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에 관한 지원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자녀의 보육과 양육, 학업과 관련된 서비스 및 정서적 서비스 등 자녀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및 확대되어야 할 것임.

제5절 가해자 처벌 및 치료에 관한 정책제언

□ 가해자의 지속적 관리체계 정비

-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공조체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가정폭력 재발 예방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제고함.

□ 가해자에 대한 인식교정프로그램 강화

- 가정폭력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 교정이 필요하며, 가해자들에게 보여지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전환하도록 하는 것도 부부 갈등의 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같은 장기적 접근은 물론이고 예비부부 또는 결혼초기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 그리고 직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가해자의 폭력행위 교정프로그램 강화

- 가해자의 폭력행위 교정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의 개입 즉, 음주습관을 교정하는 것과 가해자들의 건강하지 못한 인격 교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확립, 새로운 프로그램 시도·평가할 수 있는 연구체계를 활성화함.

□ 가해자 처벌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에 앞서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분류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인식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선 법집행기관에서 보다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임.

제6절 폭력대상별 정책제언

아동학대 관련 정책제언

-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아동학대 및 학대유형에 대한 개념 정립
-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피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관련네트워크 구축
-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아동학대 가해자의 치료 프로그램 보급

노인폭력 관련 정책제언

-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체계 강화 및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체계 확립
-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서비스 개발
-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 경찰관의 노인학대 인식제고 및 적극적 개입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신고의식 강화

장애인 폭력 관련 정책제언

- 장애인 가정폭력 예방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개선
- 전문화된 장애인 보호시설(쉼터) 설치 및 지원확대 필요
- 장애인전문 통합상담소(성폭력·가정폭력) 설치확대 필요
-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연구와 접근 필요

이주여성폭력 관련 정책제언

- 이주여성 지원 강화

- 이주여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전문상담제도 정비
- 이주여성의 자조집단 활성화를 통한 대응능력 제고
- 이주여성폭력예방교육

제16장 결 론

□ 연구배경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폭력과 구별됨.
 - 폭력의 심각성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과 반복될수록 폭력의 수준이 강해진다는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연구자에 따라 가정폭력발생률은 상이하지만 매년 엄청난 수의 폭력이 발생되고 있고, 폭력의 수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더 나아가 법원에 계류되는 경우는 매우 미흡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개인문제 또는 가족의 내부 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폭력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가정폭력발생률을 산출하였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연구방향

- 향후에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될 것이 요구됨.
- 광범위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가족원간의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이 지켜질 수 있는 조사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